기본연구 2019-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A Study to Strengthen Practi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Overseas Fisheries

2019. 12.

정명화 | 윤미경 | 안지은 | 홍혜수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윤미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안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홍혜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정명화 연구총괄, 제1장 제1절~3절, 제4절 일부, 제3장, 제6장, 제7장

연구진

윤미경 제2장 제1절, 제3절, 제4장, 제5장
안지은 제1장 제4절 일부
홍혜수 제2장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조보람 동원산업 과장
박두현 세계야생동물기금 차장
김하균 부경대학교 교수
손소연 해양수산부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최대의 가치였다. 최근 들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기꺼이 높은 가치를 지불하고자 한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실제』라는 저서에서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목표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8대 목표로 시장점유율, 혁신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주요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 중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될 분야는 원양어업과 원양산업이다. 연근해 어업과 비교할 때 산업적 규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에서 공해 및 해외 수산자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국제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감시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규명하고, 원양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양산업은 '원양산업협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연대와 결속력을 가

지고 있다. 원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양산업발전법'은 향후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 편중된 중견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국내 원양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 원양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실천적 의지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원양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안)을 제안하고,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원양산업을 구성하는 개별 선사가 '지역사회 개발', '노동자 인권 보호',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거나, 기존에 진행되었던 기업 활동을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연계·확대하여 더 높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수산연구본부의 정명화 부연구위원과 연구진, 그리고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한 노르웨이 Nofima의 Bjørg Helen Nøstvold 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부경대학교 김하균 교수, 동원산업 조보람 과장,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 박두현 차장,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손소연 사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신 본원의 홍현표 선임연구위원과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 영 태**

목 차

❖ 요 약 • i

❖ summery • vi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추진 방법 ····· 8
제3절 이론적 배경 ····· 10
1. 도구적 이론 ····· 10
2. 통합적 이론 ····· 11
3. 윤리적 이론 ····· 12
제4절 선행연구 분석 ····· 13
1. 주요 선행연구 ····· 13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1

제 2 장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 25

제1절 국제 논의 동향 ····· 25
1. 국제표준화기구의 사회적 책임 표준 ····· 25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글로벌 콤팩트 ····· 33
제2절 원양산업의 CSR 실천 관련 국내 법·제도 ····· 39

1. 원양산업발전법 ····· 39
2. 선원법 ····· 52
3.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 57
제3절 시사점 ····· 59

제 3 장 우리나라 원양 다랑어의 공급가치사슬분석과 단계별 사회적 책임 • 63

제1절 다랑어의 공급가치사슬 ····· 63
제2절 다랑어어업과 관련 사회적 책임 ····· 74
1.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보존조치 ····· 74
2. 지속가능 수산인증제 확산 ····· 82
3. 선상 근로 환경 ····· 87
제3절 시사점 ····· 96

제 4 장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 • 99

제1절 국내 타 산업 사례 ····· 99
1. 지역사회 공헌 ····· 99
2. 환경경영 ····· 102
3. 이해관계자 참여 ····· 103
4. 인권 및 노동 ····· 104
제2절 수산 기업 사례 ····· 105
1. 노르웨이 ····· 105
2. 태국 타이유니온 ····· 112
3. 스페인 OPAGAC ····· 115
4. 국내 원양기업 ····· 117
제3절 시사점 ····· 123

제 5 장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 인식도 조사 • 125

제1절 설문 개요 ····· 125
제2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해외 소비자 설문 ····· 126
1. 분석 모형 ····· 126
2. 설문 설계 ····· 131
3. 설문 결과 ····· 134
제3절 원양업계 인식도 조사 ····· 153
1. 업계 설문조사 결과 ····· 153
2.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저해 요인 ····· 157
제4절 시사점 ····· 161

제 6 장 국내 원양산업 CSR 실천 강화 추진 방향 • 165

제1절 국내 원양산업 CSR 실천을 위한 SWOT 분석 ····· 165
1. 강점 ····· 166
2. 약점 ····· 167
3. 기회 ····· 170
4. 위협 ····· 172
제2절 SWOT 분석을 활용한 전략 과제 ····· 174
1. SO 전략과 우선 추진과제 ····· 174
2. ST 전략과 RISK 해결과제 ····· 175
3. WO 전략과 우선 보완과제 ····· 177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83

제1절 요약 및 결론 ····· 183
제2절 정책제언 ····· 187
1. 원양업체의 자발적·주도적 CSR 활동 실천 ····· 187
2. 법·제도 정비 방안 ····· 190

❖ 참고문헌 · 197

❖ 부록 · 207

부록 1.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설문지 ·· 208
부록 2.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도 조사 설문지 ····· 220
부록 3. 소비자 CSR 인식도 분석모형 설계 관련 선행연구 ····· 229
부록 4. KMI-노르웨이 NOFIMA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결과 ····· 237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비교 ····· 22
〈표 2-1〉 ISO 26000 SR의 핵심 주제 및 상세 내용 ····· 30
〈표 2-2〉 UN 글로벌 콤팩트 핵심가치 및 10대 원칙 ····· 36
〈표 2-3〉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사에 대한 정책이행 평가 기준 ····· 38
〈표 2-4〉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현행법 및 개정·수정안 주요 내용 ····· 41
〈표 2-5〉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 현행법 및 개정·수정안 주요 내용 ····· 43
〈표 2-6〉 원양산업발전법 제31조의2 신설 내용 ····· 44
〈표 2-7〉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 제36조 현행법 및 개정·수정안 주요 내용 ····· 47
〈표 2-8〉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현행 및 개정·수정안 주요 내용 ····· 49
〈표 2-9〉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주요 내용 ·· 50
〈표 2-10〉 어선원 근로요건 조항 비교 ····· 55
〈표 2-11〉 어선원 노동환경 조항 비교 ····· 56
〈표 2-12〉 어선원 정주여건 조항 비교 ····· 57
〈표 3-1〉 주요 다랑어의 세계 생산량 추이(2013~2017) ····· 65
〈표 3-2〉 다랑어 생산 해역과 주요 조업국 ····· 65
〈표 3-3〉 WCPFC 해역 주요국 선망어업 생산량(2017년) ····· 69
〈표 3-4〉 WCPFC 주요국 연승어업의 눈다랑어 생산량(2013~2017) ····· 73
〈표 3-5〉 WCPFC 주요국 연승어업의 황다랑어 생산량(2013~2017) ····· 73
〈표 3-6〉 다랑어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리어종 및 관리제도 ····· 77
〈표 3-7〉 ISSF의 다랑어 자원 평가 ····· 78
〈표 3-8〉 IATTC 눈다랑어 자원량과 지속가능성 ····· 80
〈표 3-9〉 IATTC의 눈다랑어 평가 ····· 81
〈표 3-10〉 MSC 인증 다랑어 어업 ····· 84
〈표 3-11〉 주요국 소매업체의 다랑어공급정책 ····· 86

〈표 3-12〉 ILO 어선원노동협약 법률 체계 및 내용 ····· 88
〈표 3-13〉 케이프타운 협정문 체계 및 내용 ····· 92
〈표 4-1〉 노르웨이 NMA의 어선 검사 추이(2013~2017) ····· 107
〈표 4-2〉 노르웨이 어선원의 인권 관련 규정 ····· 108
〈표 4-3〉 노르웨이 어선원의 안전 및 근로조건 관련 규정 ····· 110
〈표 4-4〉 A사 폐기물 처분 절차 ····· 120
〈표 5-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모형 ····· 126
〈표 5-2〉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분석 연구 가설 ····· 129
〈표 5-3〉 원양산업의 CSR에 대한 소비자 설문문항 구성 ····· 132
〈표 5-4〉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요약 ····· 135
〈표 5-5〉 소비자 특성별 CSR 인식도 및 CSR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가치 ····· 140
〈표 5-6〉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우선순위 ····· 142
〈표 5-7〉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우선순위 ····· 142
〈표 5-8〉 집중타당도 평가 결과 요약 ····· 143
〈표 5-9〉 내적 일관성 신뢰도 평가 결과 요약 ····· 144
〈표 5-10〉 Fornell-Larcker 기준에 의한 판별타당도 평가 결과 요약 ····· 146
〈표 5-11〉 잠재변수 간 다중공선성 평가 결과 요약 ····· 147
〈표 5-12〉 결정계수(R^2) 평가 결과 요약 ····· 147
〈표 5-13〉 효과크기(f^2) 평가 결과 요약 ····· 148
〈표 5-14〉 예측적합성(Q^2) 평가 결과 요약 ····· 149
〈표 5-15〉 경로계수의 유의성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요약 ····· 149
〈표 5-16〉 기업이미지 및 신뢰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요약 150
〈표 5-17〉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우선순위 ····· 155
〈표 5-18〉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양 업계 평가결과 ····· 156
〈표 5-19〉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및 원양 업계 평가결과 비교 157
〈표 6-1〉 원양어업 선령별 어선수(2017년 기준) ····· 169
〈표 6-2〉 원양선사 조직규모별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 ····· 169
〈표 7-1〉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신설(안) ····· 191
〈표 7-2〉 타법의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 책임 지원 근거 ····· 193

그림 목차

〈그림 2-1〉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 ····· 28
〈그림 2-2〉 한국표준협회의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 ····· 32
〈그림 2-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34
〈그림 2-4〉 UN 글로벌 콤팩트 참여 방법 및 과정 ····· 37
〈그림 2-5〉 원양산업의 CSR 실천 부문 ····· 60
〈그림 3-1〉 세계 다랑어 생산 추이(1950~2017) ····· 64
〈그림 3-2〉 세계 다랑어 공급 사슬 ····· 67
〈그림 3-3〉 다랑어 소비의 주요 형태 ····· 68
〈그림 3-4〉 세계 주요 다랑어 통조림 공장 ····· 70
〈그림 3-5〉 다랑어 통조림 생산의 공급 사슬 ····· 71
〈그림 3-6〉 횟감용 다랑어의 공급사슬 ····· 72
〈그림 3-7〉 다랑어 관리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해역도 ····· 76
〈그림 3-8〉 동부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량 및 어획사망률 ····· 80
〈그림 3-9〉 원양 어업 관련 주요 라벨링 ····· 84
〈그림 4-1〉 SeaChange 4대 전략 ····· 113
〈그림 4-2〉 UN SDGs와 OPAGAC ····· 115
〈그림 4-3〉 (좌) 장완흉상어 방류 사례 및 (우) 고래탈출 장치 사용 사례 ····· 118
〈그림 4-4〉 SeaBOS 멤버 ····· 119
〈그림 4-5〉 원양어선 안전 관련 매뉴얼 ····· 123
〈그림 5-1〉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행동 분석 모형 ····· 128
〈그림 5-2〉 CSR 개념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 136
〈그림 5-3〉 수산식품 구매 시 CSR의 중요도 ····· 137
〈그림 5-4〉 CSR 실천 기업 제품 구매 의사 ····· 137
〈그림 5-5〉 CSR 불성실 이행 기업 불매 여부 ····· 138

〈그림 5-6〉 CSR 성실 이행 기업의 제품에 대한 추가비용지불의사 ····· 138
〈그림 5-7〉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 ····· 139
〈그림 5-8〉 PLS-SEM 분석 결과 요약 ····· 152
〈그림 6-1〉 우리나라 원양기업체수(2013~2018년) ····· 168
〈그림 6-2〉 국내 원양산업 CSR 실천을 위한 SWOT 분석 ····· 173
〈그림 6-3〉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SWOT 분석에 따른 추진과제 ····· 181

요약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사회 논의 동향에 기초하여 원양산업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회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세부 전략 및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SWOT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노르웨이 Nofima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설문조사는 해외 소비자 조사와 국내 원양선사 심층 면담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여 소비자와 원양선사가 인식하는 사회적 책임의 우선순위를 조사·비교함으로써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원양산업 측면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CSR 인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양기업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함

- 주요 원양수산물 소비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원양수산물 CSR 활동 내용에 대한 기대 및 인식 수준을 계량화함

- 주요 수산물 생산국이자 CSR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노르웨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산기업의 CSR 지원정책과 기업의 CSR 적용사례를 분석, 국내 원양선사의 CSR 활동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양산업의 CSR 활동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인권', '환경', '노동',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됨

- ISO 26000, UN 글로벌 콤팩트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에는 인권과

노동, 환경,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인권과 노동' 부문의 핵심 논의사항으로는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 차별 근절로 나타났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원양 주요 품목인 참치 통조림의 중간 공급망 단계에 위치해 있어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인권'에 관한 CSR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참치 통조림의 경우, 국내 원양선사가 원료를 공급하고 태국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영국 등 최종 소비지로 이동하는 공급구조를 나타냄

- 즉, 우리나라는 수산물 공급망의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어 원료를 공급하는 원양선사에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 시장국의 CSR 요구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어선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여건과 관련된 국제규범인 ILO '어선원노동협약'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규범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국내외 주요 기업의 CSR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공헌, 환경,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수산기업) '환경'과 관련하여 자발적 CSR 활동보다는 IUU 예비어업국 지정 등의 외부적 충격에 의해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추가한 특징 보임

- (노르웨이) ILO의 어선원 협약과 IMO의 케이프타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국내법으로 내재화시킴

- (스페인) 생산자단체인 OPAGAC은 참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

- (태국) 타이유니온은 태국의 IUU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지속가능성 전략 'SeaChange'를 발표하고, 2019년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ILO 어선원노동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어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원양수산물 주요 소비국인 영국과 미국 소비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해외 소비자는 수산기업이 실천해야할 CSR 우선분야로 '환경', '노동관행', '공정', '지역개발' 순으로 높게 평가함

- CSR를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는 구매 의도 및 추천 의도에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원양선사 인시도 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선순위로 '공정운영', '지배구조', '노동관행'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또한, 각 원양기업은 자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소비자 체감 수준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SR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ⅰ) 사회적 책임 수산제품에 대해 차별성 부족, ⅱ) 정보와 자금 부족, ⅲ) 소비자의 낮은 인식 수준 등을 지적함

▸ 우리나라 원양기업의 CSR 실전 전략 마련을 위한 SWOT 분석에 따른 추진과제를 도출함

- 우선 추진과제(SO) : ⅰ) 자발적 CSR 활동 실천 강화, 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고, ⅲ) '원양 자조금' 조성, ⅳ) 원양산업발전법상 지원근거 마련
- Risk 해결과제(ST) : ⅰ) 우선 CSR 실천 해역 선정(WCPFC, CCAMLR, 포클랜드), ⅱ) 선진국 및 CPTPP 시장 수산물 수출 규범 및 CSR 관련성 파악-대응전략 마련
- 우선 보완과제(WO) : ⅰ) CSR 인식 개선 교육 확대, ⅱ) 중건-중소기업 간 CSR 지식공유 확대, ⅲ) CSR 관련 정부 지원사업 전략적 홍보 확대, ⅳ) CSR 실효성 증진을 위한 선사 간 전략적 공동 대응, ⅴ) CSR 활동 촉진을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 장기 보완과제(WT) : ⅰ) 대국민 소통을 통한 관심 유도, ⅱ) 중소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CSR 역량 증대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필요함

- 원양업계의 자발적·주도적 CSR 활동 장려를 위해 ⅰ) '원양산업 CSR 사례 보고서' 작성 및 ⅱ) 원양산업협회의 'UN 글로벌 콤팩트' 등록 등의 방안을 마련함
- '원양산업발전법' 상 원양산업자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1조(목적)를 개정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 및 경영에 대한

정의와 이행 의무, 지원 근거에 관한 조항 신설을 제안함

- 원양기업이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우수 CSR 실천선사를 시상하고 각종 정책사업 우선권 등의 혜택을 부여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국내 원양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전략상 'CSR 활동'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에 기여

- 국제사회 CSR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

▸ 원양기업의 CSR 활동을 법제화함으로써 구체적인 활동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실천 활성화에 기여

- 수산물 글로벌공급사슬 내 사회적 책임 요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우리 원양기업의 선제적 CSR 이행을 통해 기업 가치 상승 및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함

summery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Practi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s Overseas Fisheries Industry

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ly state specific social responsibilities required for the overseas fisheries industry in Korea amidst an increasing call for the industry to practi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review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areas for policy improvements, while suggesting specific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directions.

2. Methodology and Feature

1) Methodology

▸ Major methodologies utilized in this study include a literature

review, consultations with experts, surveys and SWOT analysis. A joint study with Nofima in Norway has extracte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case analysis examining a number of case studies from advanced countries, ultimately attempting to produce more practical results.

- The research conducts not only a survey targeted at the U.S.' and the UK's consumers who have consumed fish and seafood products, also an in-depth interview with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companies. This method enabled u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priority of social responsibilities recognized by consumers and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and allowed u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2) Feature

▸ This stud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as it h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awarenes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f companies and consum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seas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is analysis, specific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to strengthen the practice of CSR within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 Having conducted a survey on major consumers of overseas fishery products, this study quantifies the expectation on CSR activities for overseas fishery products as well as its awareness levels.

- A joint study with Norway, a major producer of fishery products where CSR activities are actively implemented, has allowed the

study to provide the following results; CSR support policies of fishery companies, an analysis of CSR application cases and a specific direction for policy supports to allow domestic overseas fisheries industry to practice CSR activities.

3. Results

1) Summary

▸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n international discussion on social responsibility, the areas for which CSR activities are highly likely to be called upon in the overseas fisheries industry include 'human rights', 'environment', 'labor' and 'sustainability'.

- According to the ISO 26000 and the UN Global Compact, human rights, labor, environment and governance are considered important areas of 'social responsibility'.
- Key discussion items in the fields of human rights and labor include forced lab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while important items in regards to the environment include the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and minimizing neg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 Being positioned in the middle of the supply chain of canned tuna, which is a major product of overseas fisheries, South Korea is expected to receive an increasing call for CSR in regards to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 In the case of canned tuna, a major export product for Korea

in the overseas fisheries industry, domestic overseas fisheries enterprises provide raw materials that are utilized for canned tuna products in Thailand, etc. and then exported to consumer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etc.

- Since South Korea is positioned in the middle of the supply chain of fisheries products, domestic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are expected to adopt a kind of a 'certification system' which ensures the sustainability of tuna resources.

- Moreo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calls for CSR in the field of fare treatment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fishermen on board.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re will be a requirement for the adoption of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of the ILO, an international regulation relevant to labor conditions, to ensure periods of rest and safety and health, 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measures equivalent to such regulations.

▸ CSR activities carried out by domestic and foreign major companies include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by stakeholders while being mainly concentrated on the area of human rights.

- (Korean fisheries companies) Rather than conducting voluntary CSR activities, companies tend to add corporate activities to abide by the regulations required by import nations from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such as the designation of a preliminary IUU fishing country, etc.

- (Norway) With the adoption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of the ILO and the 2012 Cape Town Agreement adopted by the

IMO, Norway has internalized international regulations into domestic laws.

- (Spain) The OPAGAC, which is a Spanish producers association of frozen tuna, has developed and distributed standards on the sustainability of tuna by themselves in order to take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 (Thailand) As part of an effort to be lifted from designation as a preliminary IUU fishing country, the Thai Union Group has announced the SeaChange initiative to improve sustainability in fisheries. In addition, Thailand was the first country to adopt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of the ILO in Asia, making an effort to enhance the welfare of seafarers.

▸ The results of a survey targeting consumers in the UK and the US, major consumers of Korea's overseas fishery products, show that the CSR activities of a business by itself do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 behavior but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establishing a positive corporate image.

- Foreign consumers prioritized CSR areas practiced by fisheries companies in the order of the 'environment', 'labor practices', 'fair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 The corporate image and trust positively constructed through CSR has provid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to purchasing intention and recommendations for others.

▸ The results of an awareness survey targeting domestic overseas fisheries corporations show a difference from the results of a survey on consumers in the U.S. and the UK as domestic

companies prioritized CSR activities in the order of 'fair operation', 'governance structure' and 'labor practice'.

- Moreover,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evaluated the level of CSR implementation to be higher than consumers actually feel. Companies pointed out determinant factors of CSR activities including ⅰ) the lack of differentiation for CSR fisheries products, ⅱ) shortage of information and budget and ⅲ) low levels of consumer awareness.

▸ Based on a SWOT analysis, this study extracted implementation tasks to present strategies for CSR practice.

- Prioritized implementation tasks (SO): ⅰ) boosting the voluntary practice of CSR activities, ⅱ) reporting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ⅲ) creating a self-help fund for overseas fisheries, and ⅳ) providing legal basis for the support by revising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 Tasks for risk solution (ST): ⅰ) selecting preferential ocean areas for CSR practice (WCPFC, CCAMLR, Falkland), ⅱ) identifying the relevance between export regulations and CSR in advanced markets and CPTPP markets – preparing strategies.

- Prioritized supplementation tasks (WO): ⅰ) expanding education for raising the awareness of CSR, ⅱ) enhancing knowledge-sharing of CSR between middle and small sized companies, ⅲ) expanding the strategic promotion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relevant to CSR, ⅳ) joint response between overseas fisheries enterpris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SR, and ⅴ) creating a private-public-institutional cooperation system to facilitate CSR

activities.

- Long-term supplementation tasks (WT): ⅰ) inducing interest through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and ⅱ) increasing CSR capacity by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distant water fisheries enterprises.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Strengthening CSR practice in Korea's overseas fisheries industry requires the industry's voluntary effort and legal, systematical and policy improvements to support this effort.

- Voluntary and leading CSR activities within the overseas fisheries industry can be encouraged by ⅰ) presenting the 'CSR Report in the Overseas Fisheries Industry', and ⅱ) registering the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to the UN Global Compact.
- This study proposes revision of Article 1 (purpose)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in order to stipulate the necessity of social responsibilities on those engaging in oversea fisheries. In addition, articles should be added in regards to the definition, obligation of implementing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and management as well as support legal basis.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direct and indirect incentive systems to allow distant water fisheries enterprises to continue implementing CSR activities, while awarding companies with excellent CSR practice records and giving them preferential rights to policy projects.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This study contributes to motivation to allow domestic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to voluntarily internalize 'CSR activities' into corporate strategies.
  - It also serves to inform that domestic companies are participating to CSR activitie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rm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variety of stakeholders.
-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vitalization of actual practice of CSR activities by establishing the specific scope of activities as well as support grounds through the legalization of CSR activities carried out by overseas fisheries enterprises.
  - With the need for social responsibility amidst participat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of fishery product, pre-emptive implementation of CSR activities will allow Korean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to boost corporate values and sec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advantages.

제 1 장

서 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영국의 데이비드 애튼버러(David Attenborough)는 어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설에서 전 세계 어장의 90%가 한계치에 도달하였거나 이미 남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 전 세계 저명인사, 글로벌 기업,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 어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수산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선별적 구매 행위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ety Responsibility, CSR)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수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있는 셈이다.

1) World Economic Forum(검색일: 2019. 6. 13.)

사회적 책임은 국제기구마다 다양하게 규정하는 있지만,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가 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ISO 26000)은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SO 26000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등 모든 조직에 요구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심진예(2007)는 이들 기업들이 CSR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로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견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견제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감시 및 고발의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감시와 고발은 기업 활동의 간과할 수 없는 실질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CSR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CSR을 수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CSR 활동을 "미래 지속적인 비즈니스 창조 가능성"[3]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CSR 실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원양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원양산업이 CSR을 실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선진국 소비시장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CSR은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 '어선원의 무차별', 'IUU 어업 근절' 등을 핵심 주제로 하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 ISO(2010a), p. 3-4; 이수동·류선호(2013), p. 305
3) 심진예(2007), p. 293

이하 IM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에서 CSR에 대한 최초의 명문화된 규범이 나타났다[4]. CPTPP 협정문에서 CSR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 관련 CSR의 원칙과 정책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즉, CPTPP 회원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CSR 활동 여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수산물 소비 행태와 시장의 변화는 국내 원양산업자가 CSR을 실천해야 하고, 이러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지원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첫째, 소비자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과 품질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치소비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지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5] 제품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의 '책임성(Responsi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구매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들

4) CPTPP 협정문 제20조
원문은 다음과 같음.
Article 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ach Party should encourage enterprises operating within its territory or jurisdiction, to adopt voluntarily, into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princip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are related to the environmen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s and guidelines that have been endorsed or are supported by that Party.(밑줄은 저자가 강조한 부분임)
5) The Guardian(검색일: 2019. 7. 3.)

의 요구에 발맞추어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중요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일부 수산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다랑어 기업들의 자발적 협의체인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 이하 ISSF)이다. 전 세계 최대 다랑어 업체들이 ISSF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다랑어 통조림 생산량의 75%를 ISSF 회원사가 생산·유통하고 있다. ISSF는 다랑어 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회원 기업들이 구매하고 있는 다랑어 원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회원자격을 요구하고 있다[6]. 그 외에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 예방하기 위해 선박 정보 목록 구축 및 운영, 혼획 저감을 위한 선장교육 실시, 해상전재(Transshipment) 기준 마련 등의 자발적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ISSF 회원 기업들이 다랑어 원물 구매를 중단함으로써,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셋째, 수산물을 유통하는 소매·유통업체의 변화이다.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구매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대외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CSR 실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일부 원양 중견기

6) ISSF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5.)

업에서 CSR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다수의 원양 중소기업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활동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되는지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SWOT 분석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는 크게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의 서론은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CSR 이론을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Garriga & Mele 분류에 기초한 결과, CSR 이론은 기업과 사회적 관계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도구적 이론, 통합적, 이론, 윤리적 이론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도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상호 작용의 과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통합적 이론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양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원양산업을 둘러싼 연안국, 수출 대상국 소비자, 국제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 전략으로 CSR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Packer et al.(2019)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수산물 공급망 중간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도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CSR 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장은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주요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의 사회적 책임 표준(ISO 26000)의 핵심 주제로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이슈',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을 확인하고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가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ISO 26000이 이행 강제력이 없지만, 다수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경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7]하는 UN 글로벌 콤팩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ISO 26000과 비교 분석해 국제사회가 원양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권', '환경', '노동', '지속가능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 원양 주요 품목의 공급가치사슬을 확인하고 공급가치사슬단계별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주요한 생산 어종이자 수출품목이고, CSR의 여러 주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랑어를 중심으

7)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 6. 22.)

로 공급가치사슬을 분석하였다. 다랑어는 다랑어 통조림과 횟감용 다랑어에 따라 공급가치사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다랑어 통조림은 주로 수산물 공급망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 과정에서 다랑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어선원의 근로 조건과 어선의 안전, 연안국의 지역 개발에 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유추되었다.

제4장은 국내외 기업의 CSR 활용 사례를 통해 국내 원양선사의 향후 CSR 활동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공헌, 환경,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사회 공헌은 향후 기업의 시장 진출 또는 이미 진출한 시장에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교육사업, 민관협력 사업, 재해 복구,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CSR 활동보다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맞춤화하고, 이를 기업의 CSR 활동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국내 원양산업에 적용해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다랑어 등 수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에 향후 수출국의 정책 및 소비자 요구에 따른 CSR 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유추되었다. 한편 해외 사례로는 우리나라 다랑어의 중간 공급단계인 태국의 타이유니온, 다랑어의 주요 소비시장인 유럽의 스페인, 그리고 노르웨이를 검토하였다. 노르웨이는 ILO의 어선원 협약과 IMO의 케이프타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국내법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다. 타이유니온은 유럽과 미국에 다랑어 통조림의 주요 수출국으로써 선진 소비시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랑어 자원의 지속가능성, 어선원의 복지, IUU 어업 근

절 등 공정 관행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은 우리나라 원양수산물의 주요 소비지인 미국과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원양선사의 CSR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CSR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원양산업 CSR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하고, 4대 전략과 4대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에 따른 '우선 추진과제', 'Risk 해결 과제', '우선 보완 과제', '장기 보완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7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2. 연구 추진 방법

앞서 서술된 연구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CSR 관련 국제사회 논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UN 글로벌, IMO 케이프타운 협정, ILO의 어선원 노동협약,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다랑어 보존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다랑어의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을 확인하기 위해 FAO 통계 분석 및 ISSF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둘째, 원양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업계 및 관계자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양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낮은 편으로 평가되어 향후 전반적

으로 업계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CSR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내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 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선원 간 임금 격차에 대한 현실성 있는 해결책 마련도 도전과제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양산업협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해외 소비자 시장 조사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양수산물 수출이 많은 미국과 영국으로 확정하였다.

셋째, 국내 기업의 CSR 활동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UN SDGs 및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로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 또는 협회 중심의 활동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업계의 CSR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SDGs 등 국제규범에 따라 CSR 활동을 세분화하고 세부항목별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은 CSR을 위험 회피 수단이 아닌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설문 조사와 업계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조사는 우리나라 원양수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영국의 수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로 한정하였다. 설문 질의는 CSR 인식 정도,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지역사회개발, 노동자 인권, 환경보호, 반부패, 소비자 이슈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업계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업계의 CSR의 우선순위 및 추진 과정의 애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실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노르웨이 노피마(Nofima)와 공동연구 및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3절 이론적 배경[8)]

CSR 이론의 분류를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Garriga & Mele(2004)의 분류에 기초하여 CSR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CSR 이론은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①도구적(instrumental) 이론, ②통합적(integrative) 이론, ③윤리적(ethical) 이론으로 분류된다.

1. 도구적 이론

도구적 이론(instrumental)에 따르면, 기업을 부의 창출을 위한 사회적 도구로 인식하고, 부의 창출을 기업의 사회적 목적으로 본다.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 때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구적 이론에는 극대화하고자하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서 '주주 가치의 극대화',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공익 연계 마케팅' 등의 세 가지 이론이 포함된다. '주주 가치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어떠한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투자도 주주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목적과 부합될 때만 해야 한다는 접근방법이다.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경쟁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 '공익 연계 마케팅'은 기업이 제품 구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미리 정해진 가치 있는 운동에 기부하는 마케팅을 의미한다. 기업은 공익 연계 마케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8) 남영숙(2011), pp. 15~24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축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고 정직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품질이 높다고 믿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화와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고 동시에 공익 부분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 전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합적 이론

통합적(integrative) 이론들은 기업이 자체 존립과 지속성,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에 의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요구를 통합시키는가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요구란 사회가 기업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기업에 일정한 정당성과 평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사회적 가치에 합당하게 기업 운영을 하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이를 통합해야 한다. 통합적 이론은 기존 전통적인 주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주주와 투자자, 소비자, 공급업자, 근로자,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를 강조한다. 또한 ISO 26000, GRI와 같은 CSR의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통합적 이론 중에서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stakeholder theory)이 대표적이다. 이론에 따르면 기업 활동이란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 일련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업의 성공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핵심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기업의 활동에 있어 근본적인 집단과 기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2차 집단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근본 집단에는 소비자, 공급자, 금융기관, 근로자 및 지역사회가 포함되고, 2차 집단에는 정부, 언론, 이익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관리는 기업의 정책이나 운영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 주목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들을 통합시키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최근 들어 기업이 NGO, 지역사회, 정부, 언론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통합해 나가는 시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3. 윤리적 이론

윤리적(ethical) 이론들은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윤리적 가치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며 올바른 일 또는 좋은 사회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이론을 전개한다. 따라서 윤리적 이론은 CSR을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윤리적 의무로서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이론에는 규범적 이해관계자 이론, 보편적 권리,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선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다.

여러 이론 중에서 보편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편적 권리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CSR 영역에서 인권 문제를 가장 기본적·보편적 권리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권, 노동, 환경 등 9개의 원칙이 담긴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와 다국적 기업이 자국 수준의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한 설리번 원칙(Global Sullivan Principle)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인증하는 기준인 SA 8000도 인권과 노동권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규범들은

접근 방식은 달라도 모두 UN이 1948년에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 노동,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브룬트란드(Bruntland)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적인 측면만 포함했으나 발전과 떼어낼 수 없는 사회적 측면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차와 전략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매우 실천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트리플바텀라인(TBL)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다.

제4절 선행연구 분석

1. 주요 선행연구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2006)

고동수(2006)는 CSR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CSR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정의를 정리·분석하고. CSR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EU, 아시아 등 주요국가와 다국적 기업의 CSR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CSR은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기업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SR'이라는 용어는 국제기구

별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OECD는 'CR(Corporate Responsibility)', ISO에서는 'SR(Social Responsi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 세계 CSR 국제 표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UN, OECD 등 국제기구와 코 원탁회의(Caux Roundtable), 국제투명성기구(TI), 기타 NGO 단체 등에서는 CSR의 포괄적, 종합적 규범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ISO의 국제표준화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국에서는 정부, 민간기구 또는 기업차원에서 법제도적 조치 마련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도 기업경영 내 CSR 이행 및 전파를 위한 움직임이 파악되었다.

한편, CSR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ⅰ) 국제규범과 관행에 Global Standard 도입, ⅱ) 최소 기준 규범화, ⅲ) 민간 부문 자발적 참여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ⅳ) CSR 국제규범화·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 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CSR 포럼'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기업 측면에서는 ⅰ) 윤리경영의 경쟁력 제고 기능 강조, ⅱ)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도입 지원, ⅲ)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윤리경영 요구 등이 제시되었다.

2)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태 및 성공사례(2010)

KOTRA(2010)는 CSR에 관한 국제기준인 ISO 26000이 발표되는 등 CSR이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CSR 전개 및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전 세계 210개의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지역 전문가 심층 면담 조사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SR 이행과 준비에 있어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SR은 이윤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CSR을 새로운 시장기회나 마케팅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SR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원복지 및 빈민층에 대한 기부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CSR 경영을 통하여 우호적인 노사관계와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사업에 유리한 여건 조성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CSR 경영 확대를 위해서는 CSR 개념과 현지에 적합한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비용 경감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CSR은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CSR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우리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2011)

오삼교 외(2011)는 CSR 활동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해외진출 기업 중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CSR 활동 실태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지 우리나라 기업의 이미지와 국격 제고, 시장 진출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 중에서도 우리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멕시코와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 파나마의 총 34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비교적 활발한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30%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기업이면서 소비재 생산 또는 자원개발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 소지가 많은 업종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성장 전략과는 무관하게 자선활동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장기적 계획 하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일회성, 단발성 성격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발전 전략과 지역사회의 발전 계획이 결합된 "전략적 CSR" 수립·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략적 CSR' 이행 방안으로는 기업의 핵심 역량과 연결된 프로그램 개발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수행, 성과평가 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단체나 NGO 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4) Biodiversity and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genda(2013)

Overbeek, Harms, and Van den Burg(2013)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조사 분석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CSR 정책의 경우, 대부분 환경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 및 생물 다양성 관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 활동과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관계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CSR 활동에서 생물 다양성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네덜란드 12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조사가 병행되었다. 12개 참여 기업은 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에너지, 소매업, 교통, 식품산업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이 대응적 접근방식의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생태계 관리를 이행하기보다는 기업 자체의 정책과 지표, 행동강령 등을 개발하여 생물 다양성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후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CSR 활동의 목적도 부족한 원료 공급이나 지역사회와의 갈등 완화, 부정적 이미지 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품 인증이나 공급업체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활동과 생물 다양성 간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관련 CSR 활동이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관리 기업의 CSR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따라 기업의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활동을 보고·평가하여 보다 투명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비전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제 NGO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CSR 이행 사항을 감시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생태계서비스 및 환경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Global Seafood Industry - Background and Resources(2016)

FishWise(2016)는 환경보존 NGO, 인권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수산물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인권, 노동권 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개선·실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립·이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최근 전 세계 수산물 공급망에서 인권, 노동력 남용과 노예제도에 관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 이슈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수산물 공급망의 복잡한 관계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어업, 선박 및 가공 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한, 기존 규정의 집행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향후 도전과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인권 및 노동권 개선 위한 주요 선진국과 수산기업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산물 공급사슬에서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매핑·분석과 공급 업체와의 목표 공유 및 추적, 진행 상황에 대한 공개보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관련 국제 표준과 지침 개발, 공급망의 기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NGO, 인증 및 컨설턴트 등이 수산물 공급망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NGO와 다수의 노동권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산물 공급망 구축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 Framework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eafood Sector(2018)

Certification & Ratings Collaboration(2018)은 5개의 글로벌 수산

물 인증 및 평가 프로그램[9]이 협업하여 2015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어업과 양식업을 포함한 전 수산업 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과를 평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식품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인권과 근로 조건,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그리고 사회·경제적 책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산식품 공급망의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 노력과 도구를 검토하고 NGO, 수산물 구매자 및 정부기관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문제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수산업 부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칙으로는 2017년 사이언스 지에 발표된 "Committing to socially responsible seafood"[10]에서 제시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동 논문은 UN 해양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를 앞두고 20여 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원칙에 부합하는 성과 측정을 위한 실질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개 채택된 것이다. 연구진은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0(최저)에서 5(최상)까지 다섯 가지 수준의 이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로 각 지표와 관련된 기존의 도구나 표준, 관련 국제협약 및 가이드라인 등을 목록으로 나열하여 서로 매핑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9) 5개 참여기관은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Fair Trade USA, Monterey Bay Aquarium Seafood Watch, 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등임

10) Kittinger et al.(2017)

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actices of the Largest Seafood Suppliers in the Wild Capture Fisheries Sector: From Vision to Action(2019)

Packer et al.(2019)은 최근 수산업 부문에서의 CSR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공급사슬의 중간 단계에 있는 공급기업 또는 수직계열화 기업의 CSR 활동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중간 수산물 공급 기업이 지속가능성 노력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이 사회·경제적 개발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동원산업을 포함한 세계 최대 수산물 공급 기업 25곳(매출액 기준)의 사례를 검토·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문헌 연구결과와 CSR 프레임워크, 관련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대상 기업의 관행을 확인하고 범주화하기 위한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개발·적용하였다.

25개 수산물 공급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관행, 파트너십, 공공정책, 자선활동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CSR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CSR 이행은 명확한 목표나 이행체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관한 메커니즘이나 지속적인 활동 및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수산물 공급망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기업의 CSR을 보장하고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네트워크에서 해당기업 위치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CSR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기업의 CSR 활동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보상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또한 CSR을 통해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 수산식품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더 나은 기업 활동 사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내부 CSR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CSR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단, 이러한 CSR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점차 발전할수록 민간기업의 단기적 시장 인센티브를 넘어서 기업의 이익과 공공이익이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기업 활동 사례 창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통상 '기업활동', '사회적 책임(CSR)', '공급사슬 구축'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 전략으로 CSR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 산업분야에 대한 일반적 CSR 논의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후 해외진출한 우리기업의 CSR 이행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산부문에 있어서 CSR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으로, FishWise(2016)에서 전 세계 수산업의 노동착취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수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의 CSR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대부분 CSR을 이행해야 할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사례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생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CSR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CPTPP 등 최신의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CSR 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주요 원양수산물 소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양수산물 CSR 활동 내용의 기대 수준과 인식 수준을 계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세계 주요 수산물 생산국인 노르웨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수산기업의 CSR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기업의 CSR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선사의 CSR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비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 연구자(연도): 고동수(2006) • 연구목적: CSR 관련 국제논의 동향 및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 정부·기업의 대응방안 모색	• 문헌연구	• CSR 국제 논의 동향 분석 • 주요 국가별 CSR 대응 동향 및 사례 분석 • 우리 정부 및 기업의 CSR 대응 방안
	2	• 과제명: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태 및 성공사례 • 연구자(연도): KOTRA(2010) • 연구목적: 개도국 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태 조사를 통한 기업·정부 대응방안 모색	• 문헌연구 • 현지 설문조사 • 지역 전문가 심층 면담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의 현지 CSR 성공사례 분석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경영 확대 필요성 및 방안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3	• 과제명: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오삼교 외 (2011) • 연구목적: 중남미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 실태 조사·분석 및 선진국형 사회적 공헌 모델 제시	• 문헌연구 • 현지조사 • 종합비교분석 및 보고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발표)	• CSR의 이론적 검토 •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천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외국기업의 CSR 활동 전략 •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개선방향
	4	• 과제명: Biodiversity and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genda • 연구자(연도): Overbeek, Harms, and Van den Burg(2013) • 연구목적: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네덜란드 기업의 CSR 개선 방향 제시	• 문헌연구 • 전문가 심층 면담 • 설문조사	• 네덜란드 기업의 CSR 실태 조사 •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네덜란드 기업의 CSR 실태 조사 •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CSR 개선방향
	5	• 과제명: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Global Seafood Industry • 연구자(연도): FishWise(2016) • 연구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공급사슬(Supply Chain) 구축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현지조사	• 글로벌 수산물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노동착취 실태 조사 및 분석 • 국제 인권 거버넌스 분석 • 지속가능 공급 사슬 구축을 위한 개선 및 실천방향
	6	• 과제명: Framework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eafood Sector • 연구자(연도): Certification & Ratings Collaboration (2018) • 연구목적: 수산업 부문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문헌연구 • 전문가 심층 면담	• 수산업 부문 사회적 책임 평가 프레임워크 개요 • 수산업 부문 사회적 책임 평가 방법 및 요소 • 수산업 이해관계자 자문 및 향후 계획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7	• 과제명: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actices of the Largest Seafood Suppliers in the Wild Capture Fisheries Sector: From Vision to Action • 연구자(연도): Packer et al.(2019) • 연구목적: 글로벌 수산물 공급기업의 CSR 이행 평가 체계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	• 문헌연구 • 기업 사례 분석	• 글로벌 수산물 공급기업의 CSR 이행 평가 체계 • 글로벌 수산물 공급기업의 CSR 실태 조사 • 글로벌 수산물 공급기업의 CSR 개선방향
본 연구		• 본 연구는 CPTPP 등 최신의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CSR 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주요 원양수산물 소비국의 원양수산물에 대한 기대 수준과 원양산업의 인식 수준을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현실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짐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현지조사 • 전문가 심층면담	• 기업의 CSR 이론적 배경 • 수산분야 CSR 규범화 논의 동향 • 국내외 수산기업의 CSR 적용 사례 분석 • 국내 원양산업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인지도 조사 • 국내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지원

자료: 저자 작성

제 2 장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제1절 국제 논의 동향

1. 국제표준화기구의 사회적 책임 표준

1) 사회적 책임(ISO 26000)의 개요

ISO는 국제민간표준을 다루는 기구로,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9000)과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0)을 공표한 바 있다. ISO에서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 혹은 단체 표준화했다. ISO는 선진국이 국가 표준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1월 ISO 26000을 제정했다.[11)]

ISO 26000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11) 고동수(2011), pp. 30~3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기업(Corporate)을 생략한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는 기업만이 아닌 정부, 노조,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SO 26000은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이다.[12]

2010년 11월 1일, 세계 77개국의 93%가 찬성함에 따라 '경제주체별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발적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쟁점과 이행 방법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13]

ISO 자체가 이행 강제력을 가진 강제성 있는 기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ISO 26000 역시 제3자가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검증하거나 감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단,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발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자발적 규범이다. 그러나 ISO 26000이 기업 혹은 조직의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 가령 두 기업 간 거래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ISO 26000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ISO 26000은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ISO 26000을 선제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기업과 조직이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14]

ISO 26000이 공표된 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덴마크, 남아공, 일본 등 세계 40여 개국은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수준이 점

12) 위의 책, pp. 30~32.
13) 위의 책, pp. 30~32.
14) 위의 책, pp. 30~32.

차 높아지고 있어, 선진국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표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사에게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하는 등 공급사슬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 수출기업, 국제 공급사슬관리에 포함된 기업,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본원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사회책임투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치열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기업 등은 ISO 26000의 준수가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5]

2) 사회적 책임(ISO 26000)의 주요 내용

ISO 26000는 7대 원칙을 기반으로 7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다. 7대 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 행동 규범존중, 인권 존중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한 기본 체계이다.[16]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이다. 핵심 주제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상호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ISO 26000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경우 7대 핵심 주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
16) ISO(2010b), pp. 9-13.

〈그림 2-1〉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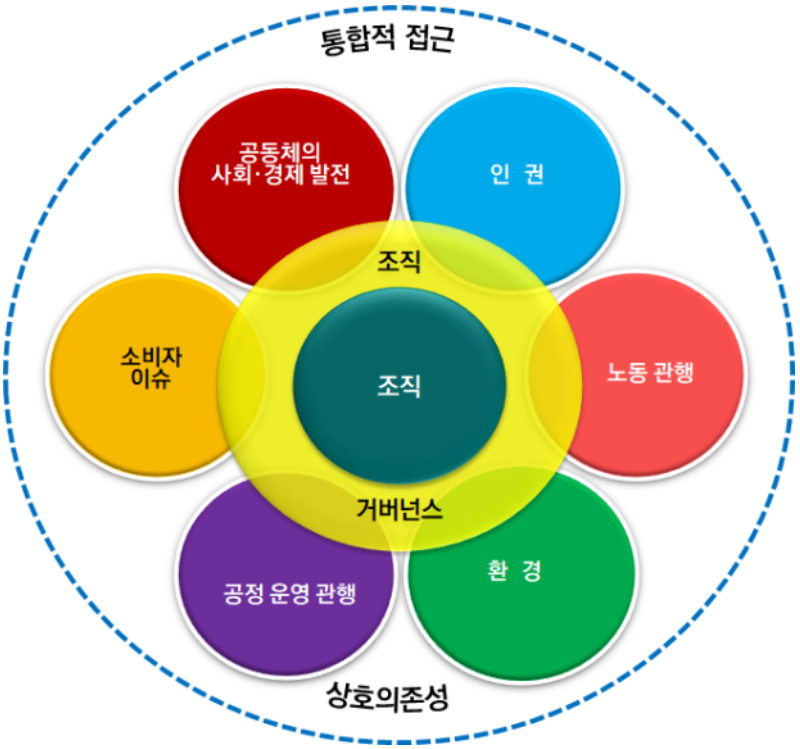

자료: ISO, *Social responsibility – Schematic overview of ISO 26000*, 2017, p. 2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7대 핵심 주제 중 '조직 거버넌스'는 나머지 6개 핵심 주제와 관련된 행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차별을 금지하고 취약한 집단을 식별하고 이를 고려한 운영을 권고한다. 학대와 같은 인권 유린에 참여하거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조직 내에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노동 관행’의 핵심내용은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노예 제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선택하여 생계비를 벌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은 오염 방지와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이 주요 내용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환경 보호와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과 재활용, 자원 절약 등이 있다.

‘공정 운영 관행’은 조직과 그 구성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는 등 정직하고 청렴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산권을 존중하고,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가치 사슬 및 공급 사슬 참여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 이슈’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하고 테스트해야 하며, 마케팅과 계약 체결에 있어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은 해당 조직이 위치한 지역 공동체의 사회·경제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자원의 현지 조달, 보건·복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책임 있는 투자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2-1〉 ISO 26000 SR의 핵심 주제 및 상세 내용

핵심 주제	절	상세 내용
조직 거버넌스 6.2	6.2.3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인권 6.3	6.3.3	상세 검토(Due diligence)
	6.3.4	인권 위험 상황(Human rights risk situations)
	6.3.5	연루 회피(Avoidance of complicity)
	6.3.6	불만 해결(Resolving grievances)
	6.3.7	차별과 취약 그룹(Discrimination and vulnerable groups)
	6.3.8	시민 및 정치권(Civil and political rights)
	6.3.9	경제, 사회, 문화권(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6.3.10	작업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노동 관행 6.4	6.4.3	고용과 고용관계(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6.4.4	근로조건 및 사회보호(Condition of work and social protector)
	6.4.5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6.4.6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at work)
	6.4.7	근무지에서의 인간계발과 훈련(Human development and training in the workplace)
환경 6.5	6.5.3	오염 예방(Prevention of pollution)
	6.5.4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Sustainable resource use)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6.5.6	환경보호, 생물 다양성, 자연서식지 복구(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restoration of natural habitats)
공정 운영 관행 6.6	6.6.3	반부패(Anti-corruption)
	6.6.4	책임 있는 정치 참여(Responsible political involvement)
	6.6.5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6.6.6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책임 촉진(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value chain)
	6.6.7	재산권 존중(Respect for property rights)
소비자 이슈 6.7	6.7.3	공정 마케팅, 공정계약 관행(Fair marketing, factual and unbiased information and fair contractual practices)
	6.7.4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Protecting consumers' health and safety)

핵심 주제	절	상세 내용
	6.7.5	지속가능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6.7.6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불만과 분쟁 해결(Consumer service, support, and complaint and dispute resolution)
	6.7.7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Consum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6.7.8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services)
	6.7.9	교육과 인식(Education and awareness)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 6.8	6.8.3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6.8.4	교육과 문화(Education and culture)
	6.8.5	고용창출과 기능개발(Employment creation and skills development)
	6.8.6	기술개발과 접근성(Technology development and access)
	6.8.7	부와 소득 창출(Wealth and income creator)
	6.8.8	보건(Health)
	6.8.9	사회 투자(Social investment)

자료: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ISO 26000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1, pp. 53~54.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8월에 지식경제부 표준기술원에서 ISO 26000을 한국 표준으로 재정해 고시했으며[17], 한국표준협회(KSA)가 한국표준정보망[18]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국내 ISO 26000 간사기관으로서 새로운 쟁점에 대해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대응 교육, 이행수준 진단, 대응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ISO 26000 이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각 조직이 ISO 26000의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19]

17) 산업통상자원부(2013), p. 2
18) 한국표준정보망(검색일: 2019. 7. 18.)
19)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

〈그림 2-2〉 한국표준협회의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

자료: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글로벌 콤팩트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9월 채택되어 2016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 경제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 구축, 대내외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최대의 공동 목표다. 아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 지향을 최우선시 한다.[20]

특히 원양산업은 17개 주요 목표 중 목표 14의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 노력'과 가장 연관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노동, 소비, 인권, 환경 등과 관련된 목표들과 다소 관계가 있다. 목표 14는 해양 쓰레기 및 해양 오염 저감, 생태계 보호, IUU 어업 근절 및 어업관리, 지속 가능한 어업과 자원 이용 등을 세부목표로 두고 있다.

20)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와 UN지원SDGs협회(검색일: 2019. 10. 2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2-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료: UN SDGs 홈페이지(검색일: 2019. 10. 29.)

2) UN 글로벌 콤팩트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다. 기업이 SDGs와 UN 글로벌 콤팩트의 핵심 가치를 기업 운영과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기업 활동의 감시 수단이 아닌, 기업 및 투자자 간의 네트워크로써 경험과 지식을 상호 공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2000년 7월 뉴욕 UN 본부에서 UN 글로벌 콤팩트 창립 회의가 개최했으며,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 기업, UN, 노동계,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UN 글로벌 콤팩트는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2019년 기준 전 세계 161개국 13,816개 회원(10,448개 기업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태국 타이유니온(ThaiUnion), 노르웨이 모위(Mowi, 전 마린 하베스트), 서마크(Cermaq) 등 대형 수산물 생산 및 유통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45개 기관 및 기업, 대학 등이 가입해 있으며, 이 중 식품기업 및 농어업 관련 기관은 4개이다.[21)22)]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이 투자, 기술 및 정책 개발, 기업 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권장하고, SDGs를 기업 전략 및 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SDGs의 성공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UN 글로벌 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핵심가치와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대 원칙은 국제 협의와 세계인권선언(1948), ILO선언(1998), 리우선언(1992), UN 부패방지협약(2003) 등을 바탕으로 발굴되었다. 4대 핵심가치와 10대 원칙은 〈표 2-2〉의 내용과 같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UN 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이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07. 7. 31. 가입), 한국농어촌공사(2007. 8. 2. 가입), CJ제일제당(2014. 5. 13. 가입), 롯데제과(2016. 7. 5.)
22) UN Global Compact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8.)

〈표 2-2〉 UN 글로벌 콤팩트 핵심가치 및 10대 원칙

핵심가치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자료: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은 기업 전략 실천 시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들을 이행해야 하며, 유엔의 폭넓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강연회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UN 글로벌 콤팩트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또한 연간보고서 등 기업이 발간하는 출판물에 UN 글로벌 콤팩트와 10대 원칙 지지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보편적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은 매년 사무국에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나 참여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UN 글로벌 콤팩트에서 제명된다. 연례보고를 통하여 해당 회원은 기업 시민의식 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UN 글로벌 콤팩트 참여의 정당성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림 2-4〉 UN 글로벌 콤팩트 참여 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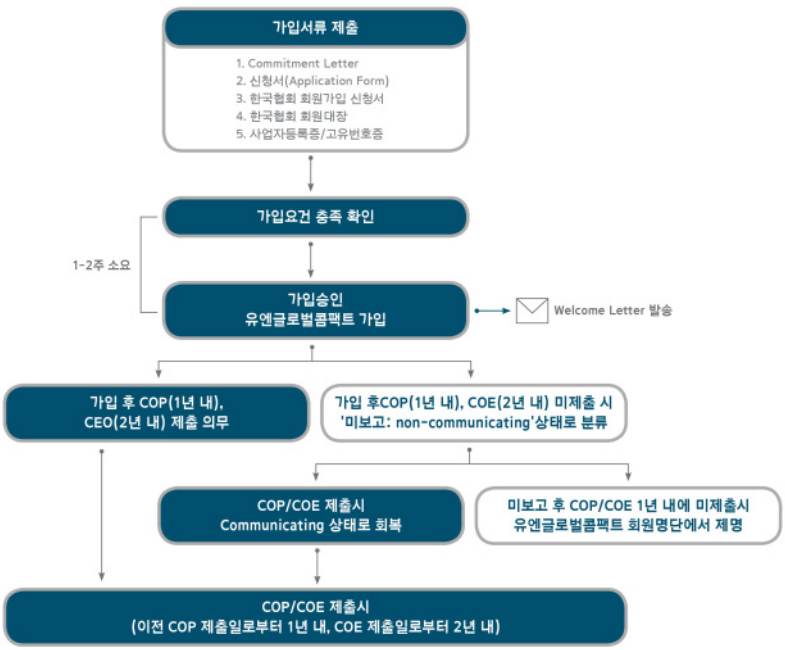

자료: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

UN 글로벌 콤팩트는 회원사가 제출한 이행보고서와 참여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회원사의 실천 정도를 분석한다. 주요 항목은 UN SDGs와 UN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의 실천 정도와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미친 영향, 10대 원칙의 내재화 수준 등이다. 특히 4대 핵심가치별 정책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표 2-3〉과 같은 평가 지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10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하고 평가·관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의 유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산 전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실천도 포함되어 있어 회원사를 비롯한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의 단발

성 사회적 책임 실천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책임 이행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사에 대한 정책이행 평가 기준

구분	내용
인권	전반적인 기업 규정에 인권과 관련된 항목이 있다.
	인권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 있다.
	작업 환경에서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한다.
	종업원을 성별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삶과 자유, 안전을 지킨다.
	종업원의 건강을 보장한다.
	생산과정에서 아동 노동이 없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한다.
노동	종업원을 성별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업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생산과정에서 아동 노동이 없다.
	생산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없다.
환경	자원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용한다.
	환경 보호에 대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자발적 헌장 및 규칙이 있다.
	트리플바텀라인(Triple-Bottom Line) 실천 및 평가 기준이 있다.
반부패	전반적인 기업 규정에 반부패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
	규정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반부패와 관련된 특별 규정이 있다.
	타 기업 및 기관에 선물을 제공함에 있어 금액의 제한이 있다.
	독립적인 윤리감독 부서를 운영한다.
	기업이익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선물이나 금전 제공과 관련된 지출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표준 및 규정이 있다.
	정치 기부금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진다.

자료: UN Global Compact, *Annual Review of Business Policies & Actions to Advance Sustainablility*, 2012, p. 11.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제2절 원양산업의 CSR 실천 관련 국내 법·제도

1.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을 관리·규제하는 기본법으로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어업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과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원양산업 발전, 원양어업의 허가·육성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다룬다.

1) 불법어업 규제

ISO 26000와 UN 글로벌 콤팩트에서 기업의 CSR 활동 분야로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가 선정되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도모를 위한 선결과제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불법어업) 근절이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EU, 미국 등은 불법어업 조업국에 대한 수출금지, 항만 입항 거부 등 다양한 규제 조치를 법제화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동법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국 선박의 국제수산기구[23] 및 연안국의 보존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 불법어업 선박으로 등재되거나 국제

23)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를 지칭함(자료: 「원양산업발전법」 제1장 2조)

수산기구의 보존관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원양어업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수역 내 불법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항만국 검색을 통해 불법어업에 연루된 선박의 입항 금지 및 항만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명시한다.

다만, 현행법은 불법어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24] 이에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 및 불법어업 제재수준 고취를 위한 동법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2019년 10월 31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동법 개정안[25]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어업자 준수 사항을 강화하였다. 원양어업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현행 제2항 제12호에서 제18호까지 세분화하였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금지 행위를 재분류하여 처벌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26]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호는 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을 위해 허위로 어업허가를 득하는 경우도 동법에 의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제5호는 금어구, 금어기 등의 불허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제12호는 어선위치추정장치 사용 시 고의성을 구체화하여 조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신설된 제15호는 불법어업 혐의에 대한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또한 금지 행위로 추가하여 불법어업 관련 규제조치를 보다 강화하였다.

---

24)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 제재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IUU 어업 식별국에 등재함(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pp.11-12.)

25) 현재 동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31일 국회 본회의 가결 후 정부 이송 전, 이에 본 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및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p. 5.

또한 무국적 선박과의 전재 또는 공동조업 행위를 추가하고 금지 대상을 국제수산기구와 연안국의 불법어업 등재까지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현행법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7호, 제16호로 분리하였으며, 제재수준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8호에 대해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14호와 제18호로 구분하였다.[27)]

〈표 2-4〉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현행법 및 개정·수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수정안
제13조(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28)]
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	1. 유독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2.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을 거짓 보고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거 나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면허,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 중의 조업 및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에 또는 연안국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27) 위의 책, pp. 7~12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행법	개정·수정안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내용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감금하는 행위
9. 국제수산기구의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9.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10. 옵서버의 이동, 승선 · 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훼손하는 행위
11.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 · 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거나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현행법	개정·수정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자료: 「원양산업발전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 발췌 정리

원양어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9조 2항을 신설하여 조업감시시스템 운영을 명시하였다. 동 개정은 FAO의 '글로벌 어선 등록제(Global Record)'[29] 운영 등 국제사회에서 어선어업의 투명성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됨에 따라 기국 원양어선의 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업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다.[30]

〈표 2-5〉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 현행법 및 개정·수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수정안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생략〉
〈신설〉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원양산업발전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 발췌 정리

28) 이하 개정·수정 없이 현행과 동일한 조항은 생략함
29) FAO는 항만국조치협정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어선 등록제를 도입함
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의 책, pp. 13~14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법 개정안은 불법어업 근절 및 투명성 강화 조치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도입 및 벌칙조항이 포함되었다. 신설된 제31조의2는 불법어업, 부당하게 득한 어업허가 등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앞서 개정한 제13조 제2항 각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명시하였다. 동 신설조항에 따라 과징금은 수산물 가액(3년 평균 도매가격 기준)의 최고 5배로 규정되며,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허위 보고의 경우 수산물 가액의 최고 3배, 어획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산물 가액의 최고 1.5배를 부과할 수 있다.

〈표 2-6〉 원양산업발전법 제31조의2 신설 내용

현행법	개정·수정안
〈신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 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은 2억 원을 부과하며,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	개정·수정안
	1.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은 1억 원을 부과하며,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양륙량·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2항에 다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현행법	개정·수정안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산물 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은 2천만 원을 부과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 pp. 37~40

벌칙 조항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상을 재분류한 것으로 규제의 현실성을 감안한 조치라 볼 수 있다. 현행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위반행위의 경중 및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동법 개정안은 어업허가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불법어업

에 협조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정하여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고, 그 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만을 규정한다.

〈표 2-7〉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 제36조 현행법 및 개정·수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수정안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5배 이하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 · 양륙량 · 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삭제〉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삭제〉
〈제2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현행법	개정·수정안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신설〉	3.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은 자
〈신설〉	4. 제29조의3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호 생략〉	
〈신설〉	6.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신설〉	7.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자료: 「원양산업발전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 발췌 정리

2) 어선원 안전 확보

동법 개정안은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원양어선 운항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현행법 하에서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수립·시행을 요구할 근거가 미비하였고, 안전 관리 규정 위반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 제7조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 제한 또는 원양어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받거나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직원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할 경우 등은 선반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표 2-8〉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현행 및 개정·수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수정안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 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생략〉
〈제1~12항 생략〉	
〈신설〉	13. 제28조의2에 따른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
〈신설〉	14. 「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경우

자료: 「원양산업발전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 발췌 정리

제28조의2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어선 안전 저해 행위에 관한 억지력을 제고하였다.[31] 특히, 동 조항은 연중 해외 조업이 잦은 원양어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시행중인 「해사안전법」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제'[32]와 「해운법」 '운항관리

31) 벌칙조항 개정안 제33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안전관리지침 미제출 등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2) 「해사안전법」 제46조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제'는 해양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규정 제도'[33]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으로 향후 원양어선 안전성 강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4]

신설된 제29조2와 3 또한 「해사안전법」 제46조와 「해운법」 제21조의5를 준용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책임자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하였다.[35]

〈표 2-9〉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수정안
〈신설〉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함

33) 「해운법」 제21조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심사를 거칠 경우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함

3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pp. 18~19를 바탕으로 작성

35) 위의 책, pp. 20~24를 바탕으로 작성

현행법	개정·수정안
	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9조의2(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 · 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 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9조의3(해사안전감독관) ①「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항의 정지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현행법	개정·수정안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검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에 출입할 수 있고 해당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 pp. 35~40

2. 선원법

우리나라 「선원법」[36]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선원 기본법이다. 동법은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 도모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선원의 근로 기준이나 재해보상 등 선원의 기본권과 자격요건을 규정하며 해양 노동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특징을 가지며, 세계화 및 선원 교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국제 규범 및 국제협약을 반영하고 있다.

선원관련 주요 국제협약 중 ILO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과 IMO의 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조약(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이하 STCW) 등을 수용하였으나, 해운업과 다른 어선원 노동 환경을 고려한 어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조약(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이하 STCW-F)과 어선원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No.188)은 아직 국내

36) 동법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원양어업 허가기준은 최소 60톤 이상으로 규정하여 원양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함

법에 수용되지 못하였다[37].

ILO의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업 노동 환경을 고려하고 기존 어선원 관련 협약[38]을 통합한 것으로 2007년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상업적 어로 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 및 어선원을 대상[39]으로 정주여건, 휴식 시간, 사회보장 등 어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근무 여건을 규정하며, 협약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항만국 통제[40] 및 항만국 통제의 비차별대우[41]를 명시하였다. 특히, 비차별대우의 일례로 2018년 7월 ILO 미 비준국인 대만 어선이 남아프리카 연안에서 협약 위반 혐의로 억류·조사받았다.[42] 동 협약은 어로작업 현장에 대한 세부 규정 제시 및 비차별대우 조항을 통한 높은 실효성을 특징으로 2017년 11월에 이르러 발효되었으며, 어선원 노동 관련 가장 구체적이고 넓은 범위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37) 해양수산부(2018), p. 7를 저자 수정

38) ILO는 아래와 같은 기존 어선원 노동 관련 협약을 통합하여 「어선원노동협약」을 채택함
「어선원 최저연령 협약(No. 112)」, 「어선원 건강검진 협약(No. 113)」, 「어선원 근로계약 협약(No. 114)」, 「어선원 정주여건 협약(No. 126)」, 「어선원 직업훈련 권고(No. 126)」 등

39) 일부 조항은 회원국 비준 후에도 점진적 이행 대상이나 아래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어선은 점진적 이행이 허용되지 않음
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②7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어선, ③ 기국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한 영역 또는 기국의 대륙붕 외곽 경계 밖의 영역 중 해안선으로부터 보다 먼 영역에서 항해하는 어선, ④ 항만국 통제 대상 어선(자료: 「ILO어선원노동협약(No. 188)」 제1장 2~4조)

40) 「ILO어선원노동협약(No. 188)」 제7장 43조 발췌
2. If a Member, in whose port a fishing vessel calls in the normal course of its business or for operational reasons, receives a complaint or obtains evidence that such vessel does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t may prepare a report addressed to the government of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with a copy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ctify any conditions on board which are clearly hazardous to safety or health.

41) 「ILO어선원노동협약(No. 188)」 제7장 44조 발췌
Each Member shall apply this Convention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at the fishing vessels flying the flag of any State that has not ratified this Convention do not receive more favourable treatment than fishing vessels that fly the flag of any Member that has ratified it.

42) 대한민국 국회(2019), p. 2.

어선원노동협약에 관해서는 제3장 제2절 3 선상 근로 환경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본 단락에서는 근로요건, 노동환경, 정주여건, 사회보장과 선원 권리 보장을 다룬 「선원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비교·검토하였다.

1) 근로요건

선원법은 제3조(적용 범위)에서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 기준은 최소 60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양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선원 근무 최저 연령에 관해 「선원법」은 16세 미만의 선원 고용을 제한하며, 가족만 승선하는 선박을 예외로 규정한다. 어선원노동협약 또한 제9조 제1항에서 어선에 승선·작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6세로 규정하며, 의무교육이 종료되고 어업분야 직업 훈련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 연령은 15세로 예외 적용한다.

또한, 고강도로 이뤄지는 어선 노동으로부터 어선원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동법 제87조 제1항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승선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만 선원으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며, 동 협약도 어선 근로에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건강진단서 소지를 의무화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어선원 보호를 위한 최소 근로요건 중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어선원 근무 최저 연령과 건강 진단 조항에서 협약의 기준을 다소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0〉 어선원 근로요건 조항 비교

구분	어선원노동협약	선원법
근무 최저 연령	(제9조 1항) 최소 16세	(제91조 1항) 16세 이상
어선원 건강 진단	(제10조 1항) 적합성을 증명하고 유효한 건강진단서	(제87조 1항) 병원급 이상의 건강진단서

자료: 「어선원노동협약」, 「선원법」에서 발췌 정리

2) 노동환경

「선원법」 제60조는 선원들의 근로 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제65조에서 승무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제68조(적용범위)에서 어선(운반선 외)을 제외하고 있다. 원양 어선은 동법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예외 대상으로 원양 어선원 승무 정원은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다. 동 시행령 제22조는 원양 어선원 승무정원을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으로 하며, 최저 승무기준은 별표3을 통해 규정한다. 다만, 조업에 필요한 최소 어선원 수나 명확한 휴식시간은 「선원법」 등 관련 법·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나, 2019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협정 및 그 부속서는 어로 기간 중 1회 이상 입항하고 체항 기간을 3일 이상으로 규정하였다.[43]

이에 관해 어선원노동협약은 적정 승무정원 설정과 휴식시간 제공을 규정하였다. 특히, 동 협약 제14조는 안전 항해를 위한 충분하고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를 명시하며, 최소 휴식시간으로 10시간 이상(24시간 기준) 또는 77시간(7일 기준)을 제시하였다.

43) 한국원양산업협회(2019b) 발췌

〈표 2-11〉 어선원 노동환경 조항 비교

구분	어선원노동협약	선원법
승무정원	(제14조 1항 a) 안전 항해를 위한 최소 어선원 수 설정 요구	(제22조) 선장 · 1등 항해사 · 기관장 · 1등 기관사 · 운항장 ·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주1]
휴식시간	(제13조 b) 어선원 안전·건강 보장을 위한 충분하고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제60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규정
		(제68조 1항의 2) 어선(어획물 운반선 외)은 적용 예외

주: 승무정원은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 이를 발췌
자료: 「어선원노동협약」, 「선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발췌 정리

3) 정주여건 및 사회보장

어선원들의 선내 정주여건은 「어선법」하 「어선설비기준」과 「선원법」을 통해 규정된다. 「어선설비기준」은 어선원들의 거주제실, 냉난방 장치 설치 등 거주구역 규격을 규정하고, 「선원법」은 어선원들에게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이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어선원노동협약 또한 선상 체류기간에 적합한 어선 설비를 위해 침실, 냉난방, 조명, 소음·진동의 경감 등 세부 규격을 부속서3에 명시하였으며, 선내 급식(식수 포함)은 충분한 영양 및 품질을 갖추고 어선소유자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정주여건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가 동 협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명, 소음·진동 경감 등 세부 항목에 관한 설비 기준 보완 및 선내 급식 무료 제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쟁점사항으로 동 협약 제36조 평등대우원칙을 꼽을 수 있다. 평등대우원칙은 어선원들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등한 사회보장 제도의 점진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외국인 어선원간 임금 격차 문제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어선원 임금은 「선

원 최저임금 고시」로 정해지는 데 반해 외국인 선원들은 동 고시 특례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위임되며,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 대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76% 수준으로 나타났다.[44]

〈표 2-12〉 어선원 정주여건 조항 비교

구분	어선원노동협약	선원법
거주구역	(제26조) 선상 체류기간에 적합하게 설비[주1]	제4편 거주·위생 및 탈출설비에서 규정[주2]
선내 급식	(제27조 a, b) 식량 및 식수는 충분한 영양, 품질을 갖춤	(제76조) 선내 급식은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공급함
	(제27조 c)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주1: 상세 설비 규정은 동 협약 부속서3에 명시
주2: 어선 설비 규격은 「어선법」 하 「어선설비기준」에서 이를 규정
자료: 「어선원노동협약」, 「선원법」, 「어선설비기준」에서 발췌 정리

3.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45]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하였다. 2018년 기준 국내 원양기업체 총 42개사 중 34개사가 중소기업인 원양산업의 현실을 감안하고, 타 산업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참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3대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대 추진 전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신규도입 촉진, 중소기업의 역량 제

44) 대한민국 국회(2019), p. 61.
45) 중소기업청(2016), pp. 4~24 참고 재작성

고, 중소기업 친화적 사회적 책임 인프라 조성이다.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단계별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되었고 사회적 책임 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산하고자 한다.

전략 달성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첫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신규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이해도 제고를 도모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한정된 인력·예산 및 파트너십 미흡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에 관한 단계별 역량 강화 사업을 개별기업에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장려한다. 셋째, 앞선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시책 운영 시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친화적 사회적 책임 인프라 조성을 지향한다.

특히, 직접적 인센티브 제도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 자금·인력·판로·수출·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지원한다. 또한, 간접적 인센티브제도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성과 확산을 넘어 중소형주 대상 사회책임투자 주가지수 개발을 검토하고, 국내 연기금 위탁 운용 중 일부를 모태펀드에 출자,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 운영 도모를 포함한다.

제3절 시사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발적인 기준과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 강제성이 없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이행해야 할 행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ISO 26000이나 UN 글로벌 콤팩트는 참여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기업과 조직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참여하지 않는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어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각 산업 부문의 선두 주자들은 CSR에 대한 국제 규범을 내부 규정으로써 준용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 NGO가 환경과 노동부문에 있어서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국제 사회는 기업의 이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천한 모든 활동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인권', '노동', '환경', '조직 거버넌스'이다. '인권과 노동' 부문의 핵심 내용은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가 핵심이다. '조직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공정한 운영과 청렴과 같은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원양산업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선상에서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침해 근절,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 오염 최소화, IUU 어업 행위 근절을 통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생산과 교역이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CSR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이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과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개발' 주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그림 2-5〉 원양산업의 CSR 실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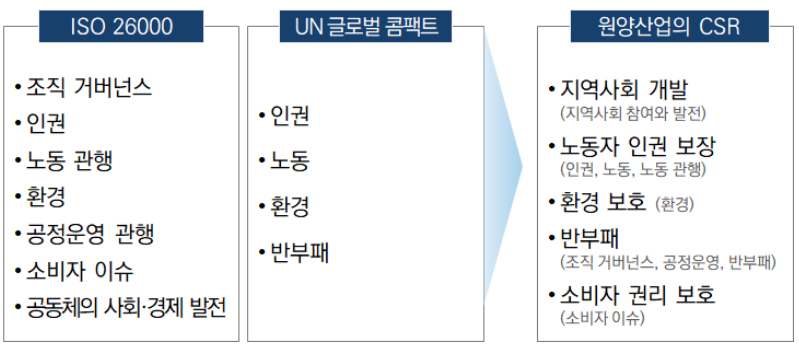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CSR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원양산업의 CSR 실천 부문을 도출하고, 국내 원양산업의 CSR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 및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선원의 안전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어선원 노동관행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는 「선원법」, 「어선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휴식시간 제공, 국적 불문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비하여 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단계별 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은 국내 원양 중소선사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우리나라 원양 다랑어의 공급가치사슬분석과 단계별 사회적 책임

제1절 다랑어의 공급가치사슬

세계 주요 다랑어류의 생산량[46]은 195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50년 50만 톤 수준에 머물렀던 세계 다랑어 생산량은 2017년 500만 톤 가까이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수산물이 되었다. 다랑어의 세계 소비량은 1인당 0.45kg으로 세계 수산물 소비량의 2.2%를 차지한다. 2014년 세계 다랑어 시장 규모는 330억 달러로 세계 수산업 규모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글로벌화된 공급망을 갖추게 되었다. 2013년 기준, 다랑어 어획량의 46%가 공급 사슬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어 새우, 연어, 흰 살 생선에 이어 네 번째로 거래가 많이 되는 품목이다.[47]

46) 주요 다랑어류는 가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참다랑어임
47) FAO fishstat J(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3-1〉 세계 다랑어 생산 추이(1950~2017)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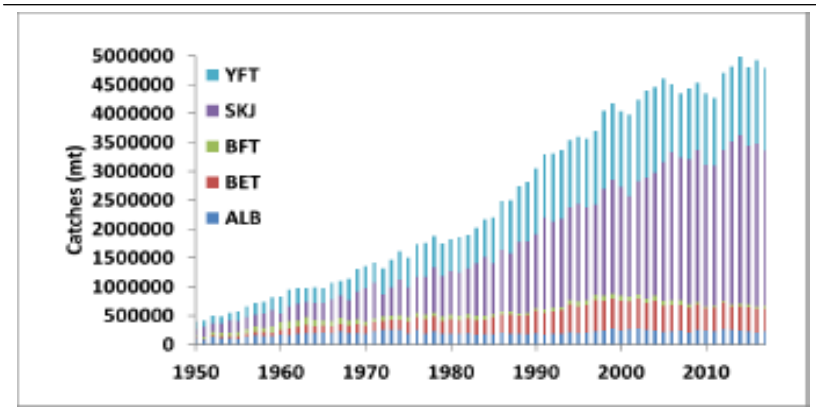

자료: FAO fishstat J, FAO Glob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 (1950~2017)(검색일: 2019.5.30.)

FAO에 따른 주요 다랑어의 최근 5년(2013~2017년) 평균 생산량은 약 500만 톤으로 추정된다.[48] 2017년 생산량 기준, 전체 생산량의 57%는 가다랑어이며, 황다랑어 28%, 눈다랑어가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태평양 수역에서 약 70%가 어획되는데 태평양수역 중에서도 주어장인 중서부태평양수역에서 56%가 생산된다, 그 외 인도양과 대서양에서 각각 20%, 10%가 생산되고 있다. 전체 어획량의 65%가 선망 어업으로 생산되며, 연승어업 11%, 외줄낚시 어업 8%, 자망 어업 4%, 기타 어획 방법이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산국은 해역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중서부태평양의 경우 연승어업에는 중국, 일본, PNG, 한국, 대만이 주요 조업국이며, 주로 날개다랑어, 남방참다랑어, 태평양가다랑어를 생산한다. 동일 해역의

48) FAO fishstat J, FAO Glob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 (2013~2017) (검색일: 2019.5.30.)

선망어업에는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이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주요 다랑어의 세계 생산량 추이(2013~2017)

단위: 톤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821,243	5,132,621	5,004,711	5,090,356	5,249,168
가다랑어	2,871,081	3,079,465	2,937,805	2,963,284	2,971,555
날개다랑어	243,960	235,052	223,776	208,533	232,390
눈다랑어	401,087	404,308	422,265	390,707	472,934
황다랑어	1,239,907	1,337,400	1,341,982	1,443,598	1,476,741
참다랑어	65,208	76,396	78,883	84,234	95,548

자료: FAO fishstat J, FAO Glob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 (2013~2017)(검색일: 2019.5.30.)

〈표 3-2〉 다랑어 생산 해역과 주요 조업국

지역	어구	주요 기국	목표 어종
북동태평양	연승	일본, 대만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
	Troll	캐나다, 미국	날개다랑어
남동태평양	연승	칠레, 스페인	황새치
동부태평양	선망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스페인,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미국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연승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중서부태평양	연승	중국, 일본, PNG, 필리핀, 한국, 대만, 바누아투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남방참다랑어, 태평양가다랑어, 황새치
	외줄낚시	일본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지역	어구	주요 기국	목표 어종
	선망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PNG, 필리핀, 한국, 대만, 미국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동부 인도양	연승	벨리즈, 중국,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일본, 파나마, 한국, 대만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남방참다랑어, 황새치, 황다랑어
	선망	인도네시아, 일본, 라이베리아	가다랑어, 황다랑어
중서부 인도양	자망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몰디브, 스리랑카	가다랑어, 황다랑어
	연승	중국, 벨리즈,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파나마, 한국, 세이셸, 대만, 태국	눈다랑어, 황다랑어
	외줄낚시	몰디브, 스리랑카	가다랑어, 황다랑어
	선망	벨리즈,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세이셸, 스페인	가다랑어, 황다랑어
동부 대서양	연승	벨리즈, 중국,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대만 등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등
	외줄낚시	프랑스, 가나, 나미비아, 한국, 스페인, 포르투갈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등
	선망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스페인, 세네갈 등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troll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날개다랑어
서부 대서양	연승	브라질, 일본, 스페인, 대만, 미국, 우루과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등
	외줄낚시	브라질, 일본, 대만	가다랑어
	선망	브라질, 베네수엘라	가다랑어, 황다랑어

자료: FAO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2.)

다랑어의 소비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다랑어 통조림이다. 둘째, 횟감용 다랑어로 일본 시장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 미국, 유럽 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 신선 다랑어로 주로 스테이크용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소비된다. 그 외 건조·염장·훈제된 다랑어, 가츠오부시 등의 형태로 소비된다.

〈그림 3-2〉 세계 다랑어 공급 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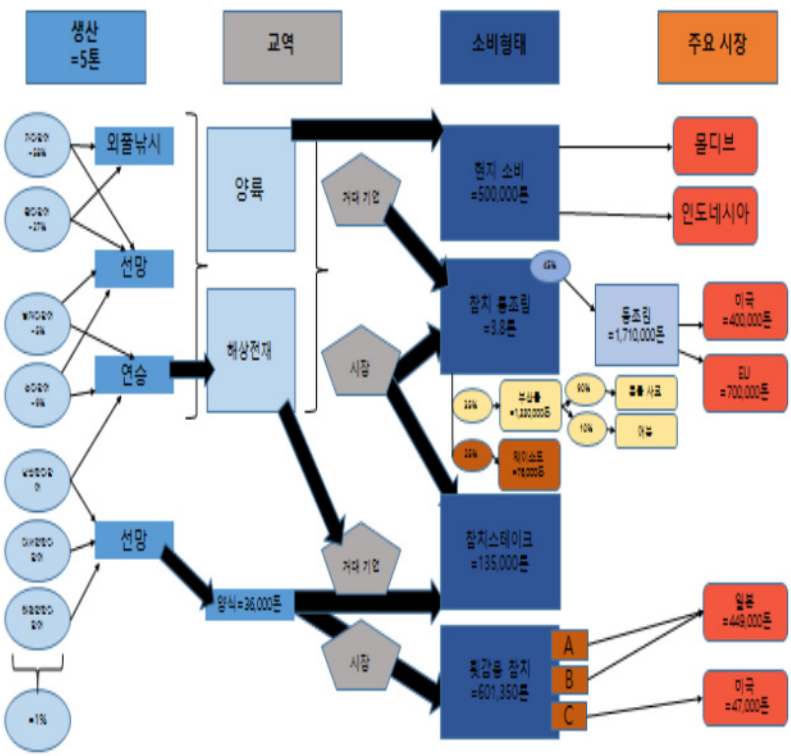

자료: Maire Lecomte et al., Sustainable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a synthesis report, 2017, p. 11

이러한 소비 형태는 다랑어를 생산하는 어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선망 어업(purse seine)으로 생산되는 거의 모든 가다랑어는 통조림용으로 이용된다. 연승어업(line and longline)으로 생산된 다랑어는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고 그 외 자망어업으로 생산된 다랑어는 통조림 또는 건조·훈제 제품의 원료로 이용된다. 외줄낚시어업(pole and line)은 부수어획이 적고, 가장 친환경적인 어법으로 간주되어져 주로 에코 라벨을 부착한 다랑어 통조림 또는 일본의 가츠오부시, 신선제품으로 소비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랑어의 가치사슬을 크게 통조림과 횟감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3〉 다랑어 소비의 주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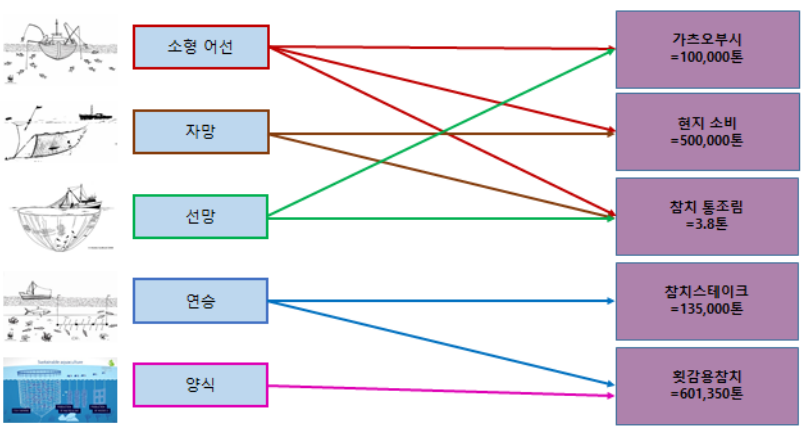

자료: Maire Lecomte et al., Sustainable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a synthesis report, 2017, p. 14

1) 다랑어 통조림의 공급 사슬

다랑어는 태평양 수역에서 약 70%인 334만 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태평양수역 중에서도 중서부태평양수역이 주 어장이다. 그 외 인도양 20%, 대서양해역에서 10%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다랑어 어획량이 가장 많은 중서부태평양수역의 경우, 다랑어 통조림의 원료가 되는 다랑어 선망 어업[49]의 2017년 총 생산량은 128만 톤이며 주요 어획국은 파푸아뉴기니,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다.[50]

〈표 3-3〉 WCPFC 해역 주요국 선망어업 생산량(2017년)

단위: 톤, %

	한국	일본	파푸아 뉴기니	미국	인도네시아	기타*
생산량	182,549	128,328	189,286	129,858	117,832	535,184
비중	14.2%	10.0%	14.8%	10.1%	9.2%	41.7%

주: 기타에는 WCPFC 회원국가인 캐나다, 쿡 제도, 중국, 에콰도르, 스페인, 피지, 키리바시, 필리핀, 러시아, 세네갈 등이 포함됨
자료: WCPFC, *WCPFC Tuna Fisheries Yearbook 2017*, 2018. 활용, 저자 가공

다랑어 통조림 산업은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하여 현재 약 40개 국가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3대 통조림 생산국은 태국, 필리핀, 에콰도르이며 주요 양륙항 및 가공시설은 태국의 방콕, 사모아의 파고 파고(Pago Pago), 에콰도르의 만타(Manta)이다. 대부분의 통조림 공장은 수직 계열화된 다국적 기업의 소유이며 소비 시장에서 다랑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조림 가공업체는 주로 두 가지 형태의 원료, 즉 "라운드 다랑어(round tuna)"라고 불리는

49) 다랑어 통조림의 원료가 되는 가다랑어, 황다랑어가 주로 이용되고, 일부 날개다랑어(albacore)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어종은 대부분 선망으로 생산되며, 일부 외줄낚시어업으로도 생산됨
50) WCPFC(2018), p. 78-101.

냉동 다랑어(whole frozen) 또는 로인(loin)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그림 3-4〉 세계 주요 다랑어 통조림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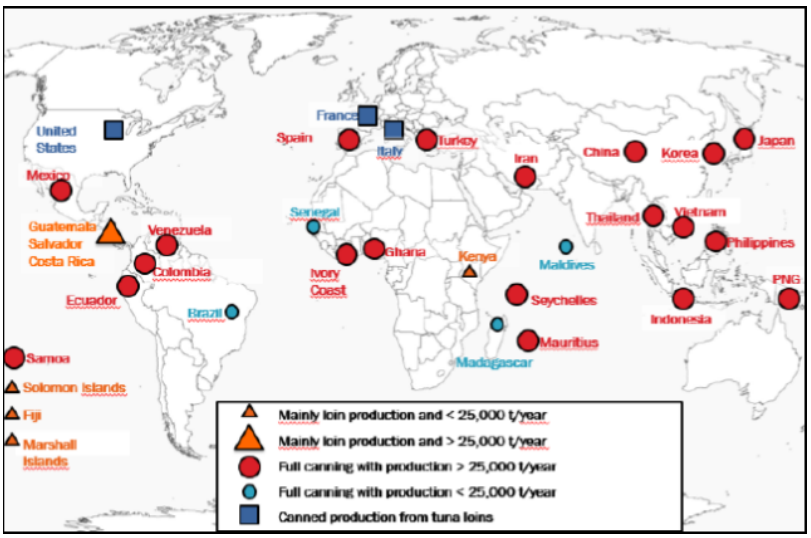

자료: Maire Lecomte et al., 『Sustainable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 a systhesis report』, 2017, p. 16

연간 25,000톤 이상의 통조림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은 〈그림 3-4〉와 같이 한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및 스페인, 세네갈, 가나, 에콰도르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장에서 냉동 다랑어를 이용하여 통조림으로 전처리 가공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로인으로 통조림을 생산하는 공장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어획국인 우리나라는 일부 자국 소비량을 제외하고 통조림 또는 로인 다랑어로 가공생산하기 위해 공급 중간단계에서 태국, 필

51) Lecomte et al.(2017), p. 16

리핀, 태평양 도서국에 원료를 수출한다. 그리고 태국 등 주요 가공 공장에서 완제품의 다랑어 통조림이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림 3-5〉 다랑어 통조림 생산의 공급 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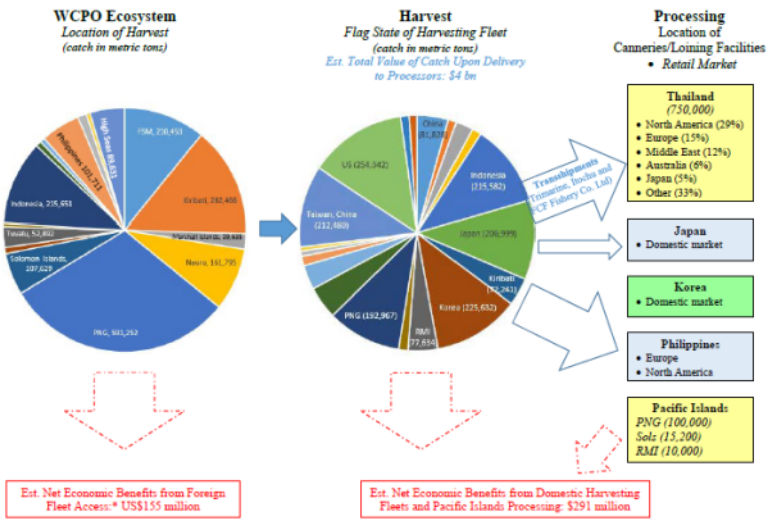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Tuna Fisheries*, 2016, p. 38.

2) 횟감용 다랑어의 공급사슬

주로 '사시미(sashimi)'라고도 불리는 횟감용 다랑어는 참다랑어가 주요 원료이다. 참다랑어는 서식 해역에 따라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등이 있다. 그 외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날개다랑어도 일부 횟감용으로 소비된다.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이들 다랑어는 주로 연승 어업으로 어획된다. 최근 양식 기술의 발달로 일본 시장에서는 참다랑어를 축양으로 생산하여 횟감용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다랑어 횟감용 소비 시장의 규모는 연간 6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이 전체 횟감용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약 47,000톤 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비가 많다.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횟감용 다랑어의 공급사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6〉 횟감용 다랑어의 공급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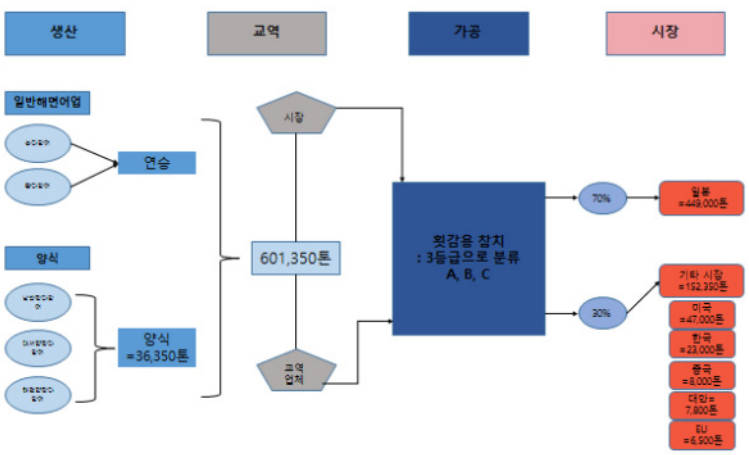

자료: Maire Lecomte et al., Sustainable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 a systhesis report, 2017, p. 20.

축양에서 생산되는 가다랑어를 제외하고, 일반해면어업으로 생산되는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는 주로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생산된다. WCPFC 해역에서 생산되는 눈다랑어의 지난 5년(2013~2017년) 평균 생산량 기준, 주요 생산국으로 일본(20.1%), 한국(17.3%), 대만(14.8%), 미국(8.2%), 바누아투(5.4%)로 나타났다. 또한 황다랑어의 주요 생산국으로는 인도네시아(18.5%), 대만(17.8%), 바누아투(16%), 일본(9.6%), 한국(8.5%)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도양 IOTC 또는

대서양 IATTC 해역에서도 생산이 이뤄진다.[52)]

이렇게 생산된 횟감용 다랑어의 70%는 일본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30%는 미국, 한국, 중국, 대만 등지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4〉 WCPFC 주요국 연승어업의 눈다랑어 생산량(2013~2017)

단위: 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5,637	74,235	70,798	62,714	58,241
일 본	12,991	15,564	14,316	12,169	11,669
한 국	12,818	12,779	10,689	11,018	10,220
대 만	10,600	10,018	9,434	9,488	9,638
미 국	4,493	5,141	5,815	6,228	5,359
바누아투	1,989	3,419	5,603	2,845	3,940
기 타	22,746	27,314	24,941	20,966	17,415

자료: WCPFC, *WCPFC Tuna Fisheries Yearbook 2017*, 2018, pp. 5-113 활용, 저자 가공

〈표 3-5〉 WCPFC 주요국 연승어업의 황다랑어 생산량(2013~2017)

단위: 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77,204	99,707	103,025	89,248	84,789
인도네시아	19,207	28,423	19,409	14,659	2,126
대만	14,999	12,257	14,118	17,816	21,622
베트남	13,917	11,603	15,097	16,423	15,677
일본	8,268	6,494	8,683	10,149	10,073
한국	5,716	8,371	9,352	8,054	7,008
기타	15,097	32,559	36,366	22,147	28,283

자료: WCPFC, *WCPFC Tuna Fisheries Yearbook 2017*, 2018, pp. 5-113 활용, 저자 가공

52) World Bank(2016), pp. 42-43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다랑어 선망의 생산량은 286,109톤이고, 다랑어 연승의 생산량은 약 33,338톤이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중서부태평양(WCPFC)에서 다랑어선망 27척, 다랑어연승 100척이 입어하여 생산하고 있고, 대서양의 ICCAT 해역과 인도양의 IOTC, CCSBT 해역에서 다랑어연승 11척이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인도양(IOTC) 해역에서 다랑어선망 2척이 생산에 참여한다.

우리나라 다랑어의 세계 공급망 참여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랑어 통조림은 중서부태평양, 인도양 해역에서 선망어업으로 생산한 원물 다랑어를 공급망 중간 단계인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수출한다. 2017년 기준, 태국의 경우 가다랑어 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85%를 차지하고 베트남으로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수출이 각각 52%, 45%를 차지하였다. 둘째, 횟감용 다랑어는 중서부태평양, 인도양에서 주로 연승어업으로 생산한 눈다랑어를 최종 소비시장인 일본으로 수출한다. 최근에는 횟감용 다랑어의 미국 및 EU 시장으로의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제2절 다랑어어업과 관련 사회적 책임

1.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보존조치

다랑어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기 위해 다랑어 자원 평가와 관련된 주요 거버넌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랑어는 고도회유성 어족으로 많은 국가의 EEZ와 공해를 회유하며 서식한다. 이러한 다랑어 어족을 관리하기 위해 다랑어 어족을 공유하는 연안국은 지

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를 창립하였다. 다랑어를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53],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54]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55], 인도양다랑어보존위원회(IOTC)[56],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57]이다. 이들 지역수산관리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다랑어 어획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관할 해역을 대상으로 자원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다랑어 자원의 전체적인 자원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5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1993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

54)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는 동부 태평양 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 이용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

55)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는 대서양 수역 다랑어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우리나라 등 5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

56) 인도양다랑어보존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는 인도양 수역의 다랑어류 자원보존과 적정한 이용을 위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31개국이 참여 중임

57)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는 중서부 태평양수역의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25개국이 참여 중임

〈그림 3-7〉 다랑어 관리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해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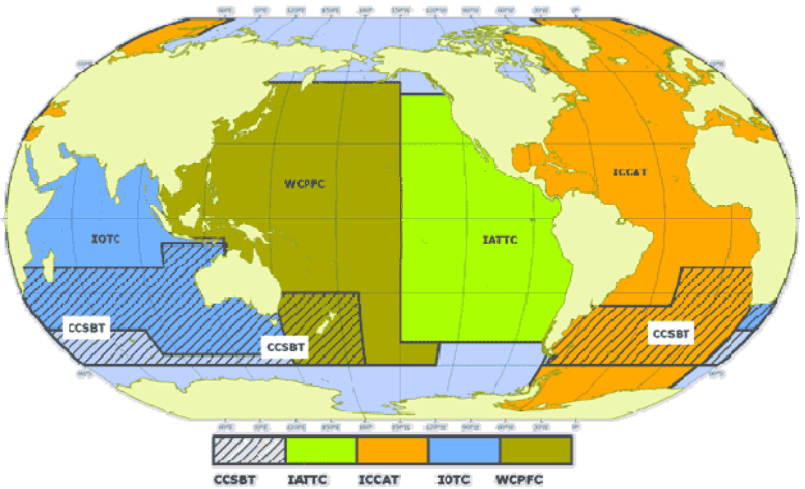

자료: FAO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2.)

이들 5개 다랑어지역수산관리기구는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관리 어종을 지정하고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WCPFC의 경우 관리 어종은 눈다랑어이며 관리제도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원 평가를 기초로 TAC가 설정되는데 2019년 우리나라 WCPFC 눈다랑어의 TAC는 약 14,000톤이다.

〈표 3-6〉 다랑어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리어종 및 관리제도

	관리어종	관리제도	우리나라 TAC
CCSBT	남방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국가별 TAC	1,240.5
IATTC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 주요 다랑어류	눈다랑어 국가별 TAC	13,947
ICCAT	눈다랑어, 참다랑어, 남방황새치,북방황새치, 남방날개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녹새치, 백새치	다랑어류 국가별 TAC	2,360
IOTC	황다랑어	황다랑어 국가별 TAC	7,520
WCPFC	**눈다랑어**	눈다랑어 국가별 TAC	13,942

자료: 해양수산부, '해수부, 원양 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로 배정' 보도자료 (2019년 4월 29일자)

한편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 ISSF)은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세계 다랑어 지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특히 ISSF는 다랑어 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다랑어 공급에 참여하는 수산기업, 가공업체, 소매업체, 식품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과학자, NGO, 정부가 참여하여 다랑어 자원의 실질적인 보존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현재, 다랑어 공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9대 기업[58]이 ISSF에 참여하고 있다.

ISSF는 〈표 3-7〉과 같이 매년 세계 23개 다랑어 자원의 자원량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어족 자원의 자연산란(B)이 지속가능수준

58) 태국의 Thai Union, SeaValu, 미국 Bumble Bee, Chicken of the Sea(태국 소유), Starkist(한국 소유), Tri-Marine(이탈리아 소유), 영국 Princes(일본 소유), 프랑스 MW Brands(태국 소유), 이탈리아 Bolton Alimentari임

(B_{MSY})보다 높은 경우 '자원량(stock abundance)이 풍부하다'라고 하고, 자연 산란이 지속가능수준보다 낮은 경우 '과잉어획(overfished)'되었다고 평가한다[59]. 과잉어획의 위험성은 어업 강도를 측정하는 어업 사망률(F)과 최대지속가능수준(F_{MSY})을 비교하여 평가하는데, $F > F_{MSY}$ 인 경우 해당 어족은 미래에 과잉어획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과잉어획(overfishing)되었다고 한다. ISSF의 평가 결과를 보면, 대서양 눈다랑어, 북태평양 참다랑어, 인도양 황다랑어가 과잉어획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동부태평양의 눈다랑어, 대서양 눈다랑어, 북태평양 참다랑어 등의 과잉어획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7〉 ISSF의 다랑어 자원 평가

단위: 톤

어종	목표 어족	어획량	자원량 (Biomass)	어획 사망량 (Mortality)
날개다랑어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55	$B > B_{MSY}$	$F < F_{MSY}$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92	$B > B_{MSY}$	$F < F_{MSY}$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28	$B > B_{MSY}$	$F < F_{MSY}$
	남대서양 날개다랑어	14	$B > B_{MSY}$	$F < F_{MSY}$
	중대서양 날개다랑어	3	자원 미평가	$F < F_{MSY}$
	인도양 날개다랑어	39	$B > B_{MSY}$	$F < F_{MSY}$

59) ISSF에 따르면, 과잉어획으로 평가되었다고 해서, 당장 멸종 또는 자원 붕괴에 이르는 것이 아니나 현행 어업이 가장 생산적인 수준에서 재생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특정 어종이 과잉되었다면, 이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특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어종	목표 어족	어획량	자원량 (Biomass)	어획 사망량 (Mortality)
눈다랑어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102	B 〉 B_{MSY}	F 〉 F_{MSY}
	서부태평양 눈다랑어	118	B 〉 B_{MSY}	F 〈 F_{MSY}
	대서양 눈다랑어	78	B 〈 B_{MSY}	F 〉 F_{MSY}
	인도양 눈다랑어	90	B 〉 B_{MSY}	F 〈 F_{MSY}
참다랑어	북태평양 참다랑어	15	B 〈 B_{MSY}	F 〉 F_{MSY}
	동부대서양 참다랑어	24	자원 미평가	F 〈 F_{MSY}
	서부대서양 참다랑어	2	자원 미평가	F 〈 F_{MSY}
	남방참다랑어	14	자원 미평가	F 〈 F_{MSY}
가다랑어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327	B 〉 B_{MSY}	F 〈 F_{MSY}
	서부태평양 가다랑어	1,575	B 〉 B_{MSY}	F 〈 F_{MSY}
	동부 대서양 가다랑어	242	B 〉 B_{MSY}	F 〈 F_{MSY}
	서부 대서양 가다랑어	23	B 〉 B_{MSY}	F 〈 F_{MSY}
	인도양 가다랑어	524	B 〉 B_{MSY}	F 〈 F_{MSY}
황다랑어	동부 태평양 황다랑어	223	B 〉 B_{MSY}	F 〉 F_{MSY}
	서부 태평양 황다랑어	660	B 〉 B_{MSY}	F 〈 F_{MSY}
	대서양 황다랑어	139	자원 미평가	F 〈 F_{MSY}
	인도양 황다랑어	409	B 〈 B_{MSY}	F 〉 F_{MSY}

자료: ISSF, *Status of the World Fisheries for Tuna*, 2019, p. 7 저자 재작성

한편, 세계 다랑어 생산량의 13%가 생산되는 동부 태평양의 관할 지역수산관리기구인 IATTC는 2018년 눈다랑어 자원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눈다랑어의 산란 생물량(spawning biomass)의 비율이

1.02로 해당 어족의 자원량이 과잉어획 되지 않았으나 MSY 대비 어획 사망률은 1.15(범위 0.95~1.46)로 2015~2017년간 과잉어획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림 3-8〉 동부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량 및 어획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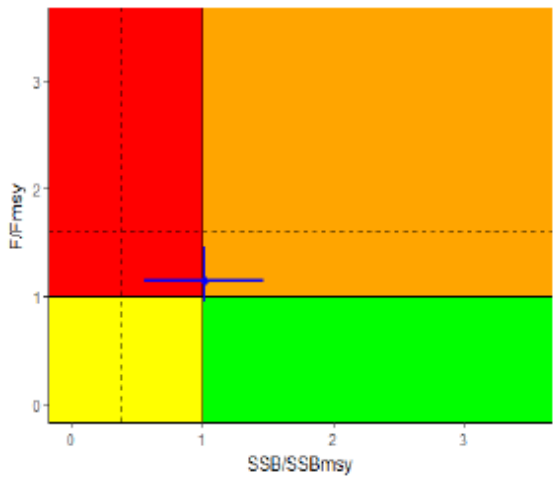

주: 검은 줄선은 잠정 목표 기준점을 나타내고, 점선은 잠정 한계기준점을 의미함.
자료: ISSF, *Status of the World Fisheries for Tuna*, 2019, p. 23.

〈표 3-8〉 IATTC 눈다랑어 자원량과 지속가능성

	추정값	구분
어획량(2017)	102	
5년 어획량(2013~2017)	96	
MSY	95	
F/F_{MSY}(2013~2017)	1.15	불확실성 높음
SSB/SSB_{MSY}	1.02	불확실성 높음
TAC	-	

자료: ISSF, *Status of the World Fisheries for Tuna*, 2019, p. 24, 저자 재작성

이에 IATTC는 2016년 열대성 다랑어(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에 대한 HCR를 채택하였다. HCR의 주요 목적은 열대성 다랑어의 어획사망률이 MSY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획능력 182톤을 초과하는 선망어선에 대해 2020년까지 72일간의 금어기를 설정하고, 작은 눈다랑어 어획 비율이 높은 갈라파고스 섬 서부의 'El Corralito' 지역에 대해서는 선망 어업 금어 구역을 설정하였다. 그 외 모든 선망 어선에 대한 retention 조건 의무화, 연승어선에 대한 눈다랑어 어획량 제한, 각 선망어선이 보유할 수 있는 FAD의 수를 70~450개로 제한하는 보존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표 3-9〉 IATTC의 눈다랑어 평가

자원량 (stock abundance)		산란 생물량이 거의 MSY 수준에 이름
어획 사망률		현행 어획이 MSY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현행 보조관리조치가 과잉어획을 금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환 경		어획량의 60%가 집어장치(FAD) 등 선망 어선에 의해 어획됨. 현행 부수어획 저감조치(거북, 상어, 비목표 어종)가 마련되어 있고, 대형선망어선에 옵서버 커버리지가 100%임
		어획의 38%가 연승어선에 의해 이뤄짐. 일부 저감조치(거북, 상어, 비목표 어종)가 마련되어 있음. 대형 연승어선에 대한 옵서버 커버리지가 5%임

자료: ISSF, *Status of the World Fisheries for Tuna*, 2019, p. 24, 저자 재작성

이처럼 다랑어가 주로 생산되는 공해에서 다랑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다랑어 생산 기업 협의체가 자원 평가를 실시하여 자원이 감소한 어종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보존조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2. 지속가능 수산인증제 확산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다랑어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연안국과 다랑어 지역수산관리기구, 자발적 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랑어 자원 보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NGO 등 시민사회의 활동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국내 원양어업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주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의 절반 이상을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EU에서는 소비자 단계에서 세계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 환경 황폐화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 시, '어떻게 생산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일례로 EU가 재원을 지원하고 NGO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환경정의재단(EJF)이 참여하는 'The Fish Forward Project(2018~2020년)'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수산물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수산물 소비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유럽 나아가 개발도상국에서 수산물 소비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20년 유럽 지역 소비자와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선택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UN SDGs 목표 달성의 적극적인 기여자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요구에 대응하여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라벨과 제3자 인증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2015년 인증 수산물은 약 1,860만 톤으로 세계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의 20%를 차지하였다. 특히 다랑어는 제3자 어획 인증을 부착한 다랑어의 비중이

약 10%를 차지한다.[60] 다랑어의 지속가능성을 인증하는 라벨로는 'Friends of the Sea(FOS)'와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가 대표적이다. 그 외 돌고래의 부수 어획 방지를 인증하는 'Dolphin Safe', 다랑어의 공정 무역을 인증하는 'Fair Trade label'도 있다.

라벨별 특징을 살펴보면, FOS와 MSC는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라벨 인증제이다. MSC는 미래의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어업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에코라벨 도입을 장려하는 국제 비영리단체[61]이다. 지속가능한 어류 자원, 환경 영향 최소화, 효과적인 관리라는 3대 원칙하에 사전 평가와 본 심사를 거쳐 최종 MSC 인증 합격에 이를 수 있다. 2019년 기준, MSC 인증을 받은 다랑어 어업으로 남태평양 피지, 폴리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의 선망, 연승, 외줄낚시 어업이 있다.

'Dolphin Safe'는 다랑어 품목에 한정해서 부착되는 라벨로 세계 다랑어 통조림 제품의 90%가 해당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또한 'Fair Trade label'는 다랑어를 비롯한 일반해면어업에서 공정 노동관행을 따른 어업에 부착된다.

60) Lecomte et al.(2017)
61) MSC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2.)

〈그림 3-9〉 원양 어업 관련 주요 라벨링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Friends of the Sea(FOS)〉

〈Dolphin Safe〉

〈Fair Trade 〉

자료: MSC 홈페이지, Friends of the Sea 페이스북 페이지, Friends of the Sea 홈페이지, Fair Trade Certified 홈페이지(모든 자료 검색일: 2019. 7. 22.)

〈표 3-10〉 MSC 인증 다랑어 어업

어업(Fishery)	어족(Stocks)	어구(Gears)
AAFA 및 WFOA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북태평양 눈다랑어	외줄낚시/채낚기(jig)
AAFA 및 WFOA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남태평양 눈다랑어	외줄낚시/채낚기(jig)
미국 사모아 EEZ 날개다랑어 및 황다랑어연승어업	남태평양 눈다랑어, WCPO 황다랑어	연승 어업

어업(Fishery)	어족(Stocks)	어구(Gears)
캐나다 고도회유성 어종기금(CHMSF) 브리티쉬콜롬비아 날개다랑어	북태평양 눈다랑어	Troll/채낚기 어업
Echebastar 인도양 선망 가다랑어	인도양 가다랑어	선망 어업
피지 날개다랑어 및 황다랑어 연승어업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연승 어업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날개다랑어 및 황다랑어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WCPO 가다랑어,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연승 어업
Ishihara Marine Products 날개다랑어 및 가다랑어 외줄낚시어업	WCPO 가다랑어,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외줄낚시 어업
일본 외줄낚기 가다랑어 및 날개다랑어 어업	WCPO 가다랑어,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외줄낚시 어업
뉴질랜드 날개다랑어 Troll 어업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Troll 어업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어업(artisanal)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외줄낚시 및 Troll 어업
북동 태평양 황다랑어 및 가다랑어 선망어업	EPO 황다랑어, EPO 가다랑어	선망 어업
PNA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업(NO FAD)	WCPO 황다랑어, WCPO 가다랑어	선망 어업
몰디브 가다랑어 외줄낚시 어업	인도양 가다랑어	외줄낚시 어업
뉴질랜드 가다랑어 선망어업	WCPO 가다랑어	선망 어업
TriMarine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 및 황다랑어	WCPO 가다랑어, 황다랑어	선망 어업
미국 북대서양 황새치어업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대서양 황다랑어	연승 및 낚시 어업

자료: ISSF, *Status of the World Fisheries for Tuna*, 2019, p. 97

한편 소매·유통 단계에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다랑어만 취급하겠다고 밝히는 업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Carrefour, 영국의 Marks & Spencer 등 거대 유통업체들이 MSC 인증을 받은 다랑어 제품만 판매하거나 또는 연승 및 외

줄낚시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다랑어만 취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글로벌 대형 업체인 Hilton 호텔은 2015년 세계 공급체인의 경제·사회·환경분야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수산물이 고위험군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힐튼 호텔은 '책임 있는' 수산물 원료 공급을 위해 '책임 있는 원료 확보 전략(responsible sourcing strategy)'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취급 수산물의 최소 25%를 MSC 인증 수산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11〉 주요국 소매업체의 다랑어공급정책

국 가	유통업체	다랑어 공급정책
프랑스	Carrefour	MSC 인증 다랑어 제품만 판매
	Systeme U	2016년 연말까지 FAD로 어획된 다랑어 판매중단 선언
영 국	Marks & Spencer	자사 다랑어 통조림은 연승 및 외줄낚시(pole and line)로 어획된 다랑어만 취급
	Sainsbury's	- 자사 다랑어 통조림은 연승 및 외줄낚시(pole and line)로 어획된 다랑어만 취급 - 2025년까지 전체 수산물 100%를 MSC 인증 제품으로 대체 계획
독 일	EDEKA	MSC 인증 다랑어 제품만 판매
미 국	Walmart	MSC 인증 다랑어 제품만 판매

자료: Maire Lecomte et al., Sustainable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 a systhesis report, 2017,p. 33,

3. 선상 근로 환경

어선 안전과 선원복지를 규정한 어업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IMO 케이프타운 협정과, ILO의 어선원 노동협약이 있으며, 지역수산관리기구 WCPFC의 어선원노동기준 결의가 있다.

1) 국제노동기구 어선근로협약

ILO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87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62]. 국제 노동 기준을 마련하는 ILO는 설립 이후 2007년 제95차 총회까지 187개 협약, 198개 권고를 채택하였다.

ILO 총회는 2007년 5월 30일 제96차 회의에서 「1998년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기본권에 관한 ILO선언」을 바탕으로 어업이 타 직업 대비 위험직업으로 고려되는 것을 인식, 제188호 어선원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해당 협약은 2017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2019년 2월 기준 14개 국가[63]가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완료하였다. 이 중 태국과 영국은 2020년 1월과 11월에 각각 발효될 계획이다. ILO 어선원 노동협약은 총7편 4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체계 및 주요 내용은 〈표 3-12〉와 같다.

62)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가입함」(정책위키(검색일: 2019. 7. 21.)
63) 앙골라,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콩고, 에스토니아, 프랑스, 리투아니아, 모로코, 나미비아, 노르웨이,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영국임(ILO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1.)

〈표 3-12〉 ILO 어선원노동협약 법률 체계 및 내용

편	조	주요 내용	편	조	주요 내용
제1편	제1조	정의	제5편	제25조~28조	거주구역 및 식량
	제2조~ 4조	적용범위			
	제5조	이행 및 법집행 책임			
제2편		일반원칙	제6편		의료관리, 보건 및 사회보장
	제6조	이행			
	제7조	책임당국 및 조정			
	제8조	어선소유자, 선장, 어선원의 책임		제29조~30조	의료관리
제3편		어선의 선내 근로에 관한 최저요건		제31조~33조	산업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제9조	최저연령			
	제10조~제12조	건강진단		제34조~제37조	사회보장
제4편		근로조건			
	제13조~제14조	승무정원과 휴식시간		제38조~제39조	업무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 시 보호
	제15조	선원명부			
	제16조~제20조	어선원의 근로계약			
	제21조	송환	제7편	제40조~제44조	준수 및 집행
	제22조	직업소개			
	제23조~제24조	어선원의 임금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ILO 주요 협약」, 2012, p. 1188-1231.

상업적 어로, 책임당국, 협의, 어선소유자, 어선원, 어선원 근로계약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과 어선에 적용된다. 단,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협약의 "점진적 이행접근방식[64]"을 도입하였다.

64) 협약의 폭넓은 비준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기반시설 부족(예, 건강검진을 위한 의

제3편 어선의 선내 근로에 관한 최저요건을 통해 어선원 근로 최저연령은 16세(의무 교육이수자로 어업분야 직업훈련자는 15세까지)이며 위험 및 야간 근로자는 최저 18세로 규정하였다. 또한, 어선원이 승선 작업에 적합한 건강 상태임을 담보하기 위해 제10조 제1항에서 어선 근로에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승선근로를 금지한다.

제4편 근로조건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승무정원과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항해 및 운항을 위해서는 충분한 승무 정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박의 크기와 관계없이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어선원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 휴식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최소 휴식시간은 24시간동안 10시간 또는 7일 동안 77시간으로 해난구조 또는 어획작업 시 선장 판단하에 휴식시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상황종료 후 가능한 빨리 보상휴식을 부여할 것을 규정한다. 제16조~제20조는 어선원 근로계약을 명시하고 있다. 자국 선박에 근로하는 어선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고, 동 근로 계약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한다. 제23조와 제24조는 어선원의 임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어선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매월 또는 정규직인 지급이 보장되도록 규정하는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각 회원국은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모든 어선원에게 전도금을 포함하여 수령한 자신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제5편 제25조~제28조는 어선원 선내 복지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료시설)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의 적용시점에 대해 경과 규정(5년 또는 10년)을 두고 협약을 이행하자는 접근방식임.

식량, 휴대용 식수와 관련된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제정을 명시하고 있다. 기국은 어선의 선내 거주 구역이 충분한 규격과 품질을 갖추고, 어선원이 업무 수행과 선내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적합하게 설비되도록 요구하는 법령 또는 기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거주 구역에 관한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를 위한 도면승인, 위생과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및 안락한 조건을 고려한 거주구역 및 주방 공간의 유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화장실 및 욕실을 포함한 위생설비와 충분한 온수 및 냉수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제6편 제29조와 제30조는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비치하고 선박에 정부 승인된 의료지침서 또는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서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박은 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31조~제33조는 업무상 안전 및 건강과 사고예방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원의 위험평가 및 관리 교육훈련, 직업상 사고, 질병 예방, 직무상 안전 및 건강에 관한 합동 위원회 또는 협의 후 적절한 단체를 구성토록 한다.

제34조~제37조는 사회보장이다. 제34조는 어선원과 그 부양가족이 육상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최소 동등한 사회보장을 제공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제35조는 자국의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어선원을 위해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36조에서 회원국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대우원칙을 고려하여 어선원의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할 것을 명시한다. 제38조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어선원은 적절한 의료관리를 받고, 국내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ILO 어선원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랑어 어획

국 및 주요 가공공장이 있는 태국, 아르헨티나, 세네갈이 있으며, 다랑어 주요 소비국인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발효인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시점에 해당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다랑어 공장에서는 공정 무역 라벨 등을 부착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IMO 케이프타운 협정[65]

1999년 ILO는 매년 24,000명에 달하는 수산업계 노동자들이 사망[66]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선 노동자의 10배가 넘는 수치이다. 안전성 인증이나 근로 여건 검사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제 해상 규정에 조업 선박과 선원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계의 착취 사례가 알려지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노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IMO가 채택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이하 CTA) 조업 선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선원과 옵서버의 안전 보호와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들이다. CTA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총 3,600척의 적합 선박을 보유한 22개국이 비준하거나 가입해야 하는데 2019년 2월 기준, CTA 가입국은 벨기에, 콩고,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등 11개국이며, 비준 조건의 50%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 상태이다. CTA 발효 시, UN 식량농업기구(FAO)의 항만국 조치협정과 ILO의 어선원노동협약과 함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조업을 보장할 수 있

65) PEW, 「케이프타운 협정 설명」, 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66) ILO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3.)

게 된다. 이는 UN 산하 기구들이 해당 협약들의 통합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CTA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선 건조, 안정성, 선원보호, 구명장비, 비상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3-13〉 케이프타운 협정문 체계 및 내용

장	내용	적용		비고
		신규	기존	이행까지의 기간
제2장	어선 건조	√		비준 시
제3장	안정성	√		비준 시
제4장	기계 장비	√		비준 시
제5장	소방 안전	√		비준 시
제6장	선원 보호	√		비준 시
제7장	구명 장비	√		비준 후 5년 이내
제8장	비상 조치	√	√	비준 후 5년 이내
제9장	무선 통신	√	√	비준 후 10년 이내
제10장	항해 장비	√	√	비준 후 5년 이내

자료: PEW, 「케이프타운 협정 설명」, 2018, p. 5.

CTA는 길이 24미터 이상 또는 총 톤수로 그에 상당하는 상업용 어선에 적용된다. 기술적 요건들의 많은 부분은 신규 건조 선박에만 적용되지만, 일부는 모든 선박, 즉 신규 건조된 선박과 기존 선박 모두에 적용된다. 공해나 영해 밖에서 상업적 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은 대부분 24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CTA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협약의 당사국은 10년 이내 무선 통신 장비(제9장)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 5년 이내 구명 장비(제7장), 비상 절차(제8장) 및 항해 장비(제10장) 관련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67]. 또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

67)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만 조업하는 경우 면제 조치

기 위해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장비를 반드시 검사하고 조사해야 한다. 선박 안전 검사는 기국의 정부 기관 또는 감독관 및 선급협회 같은 권한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다. CTA는 선박의 구명 장비, 무선 통신 설치, 구조물, 기계 및 장비는 작동 전은 물론 5년 이내 주기로 반드시 점검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CTA가 발효되면 항만국들은 수산과 노동 기구들에 부합하는 안전 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생김에 따라 조업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안전 보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가담하는 어선은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불법 조업 시 선원에게 열악한 근로 여건과 미흡한 안전장치 없이 조업을 강조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해당 CTA는 이러한 IUU 어업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WCPFC의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68]

중서부태평양 해역 남태평양 수산회의기구(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이하 FFA) 국가[69]들이 2023년까지 달성해야 할 수산업 로드맵(fisheries roadmap)을 발표하였는데, 수산업분야에서 3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 현행 남태평양 도서국의 수산업에서 약 2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데, 이 중 15,000개의 일자리는 다랑어 가공과 관련되어 있고, 주로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FA 국가들은 향후 5년간 선상 및 다랑어 가공 등에서 약 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을 마련하였다[70].

68) WCPFC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3.)
69) 호주,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피지, 키리바시, 마샬 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이러한 배경 하에서 FFA는 지난 2018년 12월 WCPFC 연례회의에서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어선원 근로 기준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Labor standards for crew on fishing vessels)를 다랑어 지역수산관리기구 가운데 최초로 채택하였다[71]. 이번 결의문은 FAO의 1995년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의 제6조와 8조를 주목하고, 선상의 열악한 노동 상태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등 선원의 부당 대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지는 관심에 주목하였다. 뿐만 아니라 WCPFC 보존관리조치 이행과 효과적인 조업 시 어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근에 선상 옵서버의 복지 개선, 선원 복지와 옵서버 간 복지의 동등성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FFA 회원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서 이뤄지는 제3국 다랑어 조업선에 어선원으로써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국 국민의 안전한 고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의문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WCPFC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기국 어선은 관할 해역 또는 항만 하역 시 참여하는 선원의 근로 조건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국의 국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처벌 내용까지 포함된다. 제2항은 국제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 근로 기준과 일관되도록 WCPFC 해역 내 조업하는 기국 어선의 모든 근로에 대해 공정

70) PNATUNA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23.)

71) 결의(Resolutions)는 WCPFC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없는 성명 또는 권고문임. 보존관리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CMM)는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세 구속력 있는 결정문으로써 채택 후 60일째가 구속력을 가짐. 결의와 CMM 모두 일반적으로 WCPFC 연례 회의에서 채택됨. 결의 내용이 후속 논의 및 발전되어 CMM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음

한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정한 근로 조건과 관련해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건강과 복지에 대한 최소 리스크와 함께 안전한 근로 환경 확보이다. 둘째, 고용의 공정성이다. 어선원이 합의하고, 고용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decent) 선상 근로 및 생계 조건의 보장이다. 충분히 신선한 식수와 식량 제공, 조업 중 안전 보장 및 의료 치료, 수용할 수 있는 위생 기준 마련 촉구이다. 넷째, 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험과 정기적 보수 지급, 다섯째, 어선원이 배에서 하선할 기회 제공 및 송환 자격을 부여토록 한다.

제3항은 결의 내용 이행을 위해 어선원 고용에 관련한 주체(entities)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제4항은 기국 어선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를 강화시키고 선상 근로 조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개선·이행하기 위해 기국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제5항은 위원회에 매년 해당 결의안 이행에 관한 진전 상황을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제6항은 결의 내용 이행을 위해 개발된 CMM은 조화된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국내법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국과 연안국이 혁신적 방법(innovative options)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최소 근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업계와의 협력이 포함되었다.

이상 WCPFC의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내용이 향후 구속력이 있는 WCPFC 보존관리조치(CMM)로 발전하거나 또는 기존 다른 보존관리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은 다른 다랑어 지역수산관리기구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해당 논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양 주요 품목인 다랑어의 공급가치사슬을 확인하고 공급가치사슬단계별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해역에서 선망어업과 연승어업으로 생산되는 다랑어의 최종 완제품은 통조림과 횟감용 다랑어이다. 다랑어 생산의 90%는 다랑어 통조림의 원료로 이용되며, 주로 태국,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미국, 영국 등의 소비 시장으로 수출된다. 나머지 10%가 횟감용으로 소비되는데, 대다수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일부 미국 등 북미,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다랑어 통조림의 경우 주로 수산물 공급망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등을 최종 소비 시장으로 하여 태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하는 원양 선사에 다랑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제 요구가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었다.

원양선사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는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근로 조건 개선이다. 어선원의 근로와 관련한 국제 규범은 ILO의 어선원노동협약이고, 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해당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태국에 다랑어를 수출하는 국내 원양선사에 대해 동등한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맥락에서 WCPFC가 채택한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에서도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최소 근로 기준과 일관되게 WCPFC 해역 내 조업하는 기국 어선의 모든 근로에 대해 공정한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양선사는 다랑어 원료를 생산하는 WCPFC 관할 수역과 다랑어 원료를 수출하는 태국으로부터 ILO 어선원노동협약의 근로 조건에 명시된 휴식시간, 산업안전보건 문제 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4 장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

제1절 국내 타 산업 사례[72)]

1. 지역사회 공헌

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수출 매출이 전체의 80% 이상이며, 해외 사업장과 판매 법인이 전 세계에 200여 개 진출해 있어 주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상 국가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북미에서는 'Samsung Hope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액의 일부를 미식축구, 야구, 농우, 골프 등 미국의 4대 인기 스포츠

72) 외교통상부(2011), pp. 26~6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종목의 선수들이 운영하는 자선재단에 기부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과학과 수학 교육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Solve for Tomorrow'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학과 과학을 활용한 지역 환경 발전과 개선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콘테스트이다.

유럽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셰 미술관, 로댕 미술관의 방문객 안내와 해설을 위해 LED TV, MP3 등을 지원했다. 헝가리에서는 지역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교육 및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과 한 마을이 결연을 맺는 '일심일촌(一心一村)' 프로그램과 '애니콜 희망 소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국의 농촌 지역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유네스코(UNESCO),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말라위와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15개국에서 현지민의 문맹퇴치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 웅진코웨이[73]

웅진코웨이는 생활환경 가전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력 생산제품은 정수기이다. 그렇게 때문에 식수환경개선 등 물과 관련

73) 웅진코웨이 홈페이지(검색일: 2019. 10. 2.)

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캄보디아 우물파기' 사업이다.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수질 여건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웅진코웨이는 2006년부터 펌프식 우물을 파기 시작했으며, 2015년 우물 1,000개를 완성했다. 이를 통하여 캄보디아의 14개 주, 주민 5만 여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후속관리를 통해 댕기열,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착한정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정수기를 기부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 지원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아동센터, 자원봉사시설, 무료병원, 장애 보호센터 등 139개 단체를 선정해 정수기를 제공하고 정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축산 분뇨와 퇴비, 생활하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에 환경부와 협력하여 정수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47개 시·군 지역에 597개의 정수기가 보급되었다.

3)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는 기계장비 전문 기업으로 회사 제품을 활용해 재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과 2010년 칭하이성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구조팀을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장비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에 동참했다. 또한 2017년 허리케인 하비(Harvey)와 어마(Irma)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복구지원 성금과 장비를 지원했다. 특히 현지법인을 통해 주력상품인 밥캣(Bobcat)을 제공해 피해를 복구함과 동시에 제품과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했다.

2. 환경경영

1) LG 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 음료업, 화장품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제품을 주로 다루는 만큼 경영활동과 제품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제품 생산·유통·사용 등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장재와 R&D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포장재의 환경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중량과 두께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포장재에 적절한 소재와 재질을 선택해 재활용하기 좋은 포장재를 제공하고자 한다. 리필용 화장품 용기 개발, 쇼핑백 없는 선물포장, 페트병 용기 캡 경량화가 포장재 개선을 통한 폐기물 절감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는 완성차 생산 및 판매 기업으로 2018년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 판매량을 기록한 자동차 회사이다. 최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어 각 수출 국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7년 시행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이하 REACH)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미등록 시 EU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는 화학제품을 생산하

는 기업뿐만 아니라 화학제품을 활용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74]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 물질 정보 관리 시스템인 'e-CMS'를 개발해 국내외 공장의 전 생산 공정과 차량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현재 규제된 물질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물질까지 감축하고 대체 재료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고효율 차량 개발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와 전기자동차 '블루온' 등 환경 친화적인 차량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롯데쇼핑은 직원, 협력회사,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원트 슬립(Want Slip)제도를 통해 전 점포 직원들이 고객의 작은 의견까지 접수해 경영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제안하는 MD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부 모니터링 제도를 진행해 매월 두 차례 상품과 직원서비스, 쇼핑 환경 등 주요 부문을 점검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초청 컨벤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협력회사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CEO 협력회사 방문의 날'을 지정해 매달 CEO가 협력회사를 방문해, 협력회사 임직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함은 물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4) 권혁철(2014), p. 2~3

4. 인권 및 노동

행남자기는 노사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창사 이후 한 차례도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IMF사태로 인한 구조 조정에도 300여 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협상에서 전 사원이 임금동결에 동의했으며, 150~200%의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위기를 분담했다. 외환위기 이후 행남자기 노조는 5.5운동(5s실천, 5% 수율향상, 5% 비용절감, 5분 일찍 시작, 5분 늦게 퇴근)을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제조경비를 연간 7억 6000만 원 절감했다.[75]

이러한 노력에도 외환위기의 여파를 이겨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001년에는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포 공장을 정리해 150여 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다. 이 중 희망자 40여 명은 여주에 위치한 행남자기 공장에 재취업했고, 50여 명은 인근에 위치한 다른 공장에 취업을 주선해 주었다. 하지만 60여 명이 고용되지 못하자 행남자기는 15억을 투자하여 맛김 제조 계열사인 '행남식품'을 설립하고, 그 60여 명을 재고용했다. 또한 노조에서는 행남자기의 인기제품을 모아 '한상 식기세트'를 만들어 직접 판매해 연간 15억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기업의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이는 노사 간 협력을 통해 구조조정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60년 넘게 이어져 온 노사 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76]

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5.)
76) 위의 자료

제2절 수산 기업 사례

1. 노르웨이[77)]

노르웨이는 2017년 11월 IL0의 어선원 협약 및 IMO의 케이프타운 협약에 가입하면서 어선원의 근로와 안전 그리고 어선 안전을 위한 자국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노르웨이 일반 포획어업의 어선 안전, 근로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노르웨이 수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활용 방향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1) 어선 안전

어선 안전 관리 기관은 노르웨이 항만국(Norwegian Maritime Authority, 이하 NMA)이며 관리 대상은 노르웨이 기국 어선과 노르웨이 관할 수역의 외국 어선이다. 노르웨이 베르겐에 NMA의 본사, 16개의 지사와 감독청, 선박 등록을 위한 자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선 검사에 대한 인증(certificates)과 불시 검사(unannounced supervision)가 주요 업무이다.

노르웨이는 ILO 188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 기준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500톤 이상 어선은 국제안전관리(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이하 ISM)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ISM 인증을 받은 어선은 1,916척이며 500톤 미만의 어선은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ISM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노르웨이 관련법은 어선 안전과 관련해 모든 어업인이 승인받은

77) Nøstvold et al. (2019)의 연구 결과를 저자가 요약번역함

교육 제공자 또는 외국의 동등한 자로부터 40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5~8년마다 20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응급처치(first aid), 리스크 평가, 해상 구조, 소화 활동(firefighting) 등이다. 어선의 무선안전인증(radio safety certificate)도 의무 사항이며 5년마다 갱신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검사관이 선상 검사 시 종사자의 고용 계약서 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NMA는 어선에 대해 '리스크 기반 검사 시스템(risk based inspection)'을 실시하고 있다. 리스크 기반 검사란 선박 회사 또는 어선의 검사 이력 정보 및 노동감사청(Labour Inspectorate)의 '소셜 덤핑 검사(social dumping inspection)'[78]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사 대상 어선을 신호등 체계에 따라 '녹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분류한다. 붉은색 어선은 고위험으로 간주되어 다른 어선보다 집중적인 검사를 받게 된다.

노르웨이에서 조업하는 15미터 이상의 모든 어선은 어선검사인증서(fishery vessel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인증서가 발급되는 해에 NMA가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어선검사 인증은 5년마다 갱신된다. 〈표 4-1〉에서 어선 검사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2017년 총 1,063건의 검사가 실시되었고, 한 해 평균 880건의 어선 검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78) 사회덤핑이란 외국인 노동자가 매우 낮은 급여 및 열악한 근로 환경(건강, 환경, 안전 규범 위반 포함)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함

〈표 4-1〉 노르웨이 NMA의 어선 검사 추이(2013~2017)

단위: 건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기검사	490	407	406	400	396
어선 변화 관련 검사	120	142	144	152	206
ISM과 ISPS*		2	9	192	180
불시 검사	71	77	54	47	53
최초 검사	43	58	45	31	78
선박 파손 관련 검사	19	13	10	12	11
기타 검사	100	60	54	204	139
합 계	843	759	722	1,038	1,063

주: *의 ISM의 국제안전관리코드(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의 약자, ISPS는 국제선박항만시설보안코드(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ies Securities Code)의 약자임
자료: Nøstvold et al., "Social Sustainability in Norwegian Fisheries," *Nofima*, 2019, p. 18.

검사 형태는 정기검사, 어선 변화 검사, ISM과 ISPS 검사, 불시 검사, 선박 파손 검사 등이 있다, NMA 검사의 50% 이상은 정기검사이고 어선 변화와 관련된 검사가 두 번째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어선 전체 검사의 5%는 불시 검사가 이뤄졌다. 리스크 기반 검사로 전환되면서 불시 검사의 비중이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어선원 근로

노르웨이는 ILO 어선원 협정 가입에 따른 대부분의 규정을 국내에 마련하고 있다. 어선원 협정 제9조 어선원의 최저 연령과 관련해서 노르웨이에서 선내 근로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6세이며, 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건강, 성장, 교육에 저해될 수 있는 작업은 금지된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선상에서 정기적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최저 연령도 15세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의 의무

교육 대상자는 학교 휴일 동안에 가벼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4-2〉 노르웨이 어선원의 인권 관련 규정

요 인	상세 기준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종사자는 자유 시간에 작업장을 떠날 수 있음.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강요하거나 신분증 서류, 급여 등을 가져가서는 안 됨
아동 노동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15세 미만 또는 학령기에 있는 아동에 근로에 참여시켜서는 안 됨. 승선하여 해외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16세가 되어야 함. 미성년자는 문화 체험 등 자발적 참여는 가능하지만 안전, 건강, 성장, 학업에 위해가 되어서는 안 됨
언론의 자유	모든 종사자(시즌 및 파트타임 근로 포함) 는 급여, 건강, 환경, 안전과 관련해 작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관한 고지할 권한이 있음. 5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관할 당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식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노조 구성의 자유	종사자는 고용주로부터 보복의 두려움 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담합 권리	회사 및 종사자의 노조 대표는 급여, 작업장 상태, 분쟁,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단체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음
고용계약	고용주와 종사자간 서면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함. 선사 고용 종사자가 선상에 근무하기 전에 고용 계약서에 날인이 되어야 함. 고용 계약의 최소 기준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정기 급여	급여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고용자는 계약한 급여보다 적게 지급해서는 안 됨. 고용 계약에서 합의된 급여, 법정 공제, 기타 공제에 관한 정보를 서면 급여(written pay check)에 받아야 함. 지급된 급여에 대한 검사는 관련 당국에 의해 이뤄짐
공정 급여	급여 수준은 단체 협약 및 법에 따름. 동일 업무에 대해서 성별, 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 장애 에 따라서 급여가 차별화되어서는 안 됨
여성 권리, 성차별 금지	성차별 금지. 이는 고용, 급여 수준, 근조 조건, 승진 모두에 적용됨

요 인	상세 기준
차별 금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은 금지됨. 그러나 객관적 기준 및 법에 근거하여 다른 처우(different treatment)는 허용됨

자료: Nøstvold et al., "Social Sustainability in Norwegian Fisheries," *Nofima*, 2019, Appendix 1, p. i. 저자 번역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 작성 전에 선상 근로 환경이 아동 노동의 부상 위험이 있는지 확인·평가해야 한다. 평가란 아동 노동의 신체적, 생물학적, 화학적 요인에 대한 노출, 장비, 근로 체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는 아동 노동의 경험 부족, 완전히 발현되지 않는 위험 또는 기존 위험 인지 부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특정 위험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수행 한도를 초과하는 일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야간근무, 야간 교대근무도 금지된다. 최소 36시간의 레저 시간을 가질 권리도 가진다.

이러한 ILO 188의 국제 규범을 노르웨이 국내법으로 내재화하면서 Nofima는 노르웨이 수산업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근로 여건과 관련해서 노르웨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선원의 휴식시간과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금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르웨이 Nofim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르웨이도 동유럽 국가의 외국인 어선원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차별 금지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고용주와 종사자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는 노르웨이의 정상적인 근로 조건이나 종업원 권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노조 가입률 및 연대가 낮기 때문에, 이들 국가 출신의 어선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을 불평등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이 노르웨이 어선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은 이를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상적 관행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로 인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인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어선 관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어떤 기관에 어려움을 전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 등이 향후 노르웨이 어선원과 외국인 어선원의 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전과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 노르웨이 어선원의 안전 및 근로조건 관련 규정

요 인	상세 기준
안전 교육	모든 어업인은 어선 승선 전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40시간의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의료 검진	길이 15미터 이상 어선 또는 항만에서 출발하여 3일 이상 해상에 머물려 작업하는 어업인은 공인 의사로부터 의료 검진 승인을 받아야 함
수동 어구 훈련	어선원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어구 사용에 관한 훈련은 이뤄져야 함. 또한 신규 장비나 기계를 사용할 때 추가 훈련이 이뤄져야 함. 모든 훈련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함
감독 및 책임	어선 소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시설이 선상에 갖추어졌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고용주는 근로 조건이 건강, 안전, 환경 관련 법과 규정에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또한 고용자는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짐. 고용주은 건강, 환경, 안전에 대해 고용주가 취한 조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사용할 책임이 있음
근로 및 휴가 규정	선상 또는 3일 이상 해상에 잇는 어선에서는 최소 휴식시간이 24시 중 10시간이고 7일의 77시간이 제공되어야 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에 의해 예외 있음 PI: 12개월 이상 근로자는 주당 평균 48시간 이상 근무가 금지됨. 24시간동안 최소 10시간의 휴식이 있어야 하며, 휴식 시간은 두 기간으로 나뉠 수 있음. 휴식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이뤄지는데, 1주일(168 시간)동안 최소 77시간의 휴식이 이뤄져야 함.

요 인	상세 기준
검사 및 사고 보고	내부 통제를 위해 사로는 시스템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함. 심각한 사고는 관계당국에 통보되어야 함
작업 관련 보호 장비	종사자는 회사의 건강, 안전, 환경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가 수행하는 일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종사자는 규정ㅇ에 따른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장비가 올바르지 않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안전 관련 인력	어선 운항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함. 어선 길이 15미터 이상 어선은 최소 인력을 있어야 함
선원 목록	15미터 이상의 모든 어선은 출항 시 업데이트된 전자 어선원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함. 리스트에는 해상 조업기간동안의 승선인, 승선 업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	15미터 이상 모든 어선은 선박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사고 관련 안전 장비	경보 장비 및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 및 위급 상황에 관해 관련 구조 및 응급 서비스를 종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어야 함. 안전과 관련해 기계 및 기술 장비는 반드시 경보 시스템 및 자동 정지시스템을 갖춰야 함. 작업장은 내화성(fireproof)이어야 함. 부두에는 구명부표(life buoy)가 비치되어야 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도 물 밖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함. 적절한 응급조치 장비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고, 표시를 잘 해야 함
작업 시설	작업장은 법과 규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함
통풍/온열 및 소음 방지	통풍 시설은 어선 크기 및 건조 연도의 법에 따라 마련되어야 함. 15미터 어선의 경우, 통풍 시설은 비가연성 물질이어야 함. 모든 방은 통풍이 잘 이뤄져야 하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개인 방 밖에 설치된 통풍기를 끌 수 있어야 함. 15미터 어선에서 거실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함. 외부 온도가 -15℃일 때 실내 온도가 최소 22℃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사인 및 표시	위험 상황에서 안전 표시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고용자는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짐

자료: Nøstvold et al., "Social Sustainability in Norwegian Fisheries," *Nofima*, 2019, Appendix 1, p. ii. 저자 번역

2. 태국 타이유니온

2018년 태국의 타이유니온은 다우존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 전 세계 100대 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되고 유럽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로로 '지속가능한 공급체인 지도자 상'을 수상하는 등, 수산물의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체이다.

타이유니온은 내부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전사적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 20개 파트너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업 운영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타이유니온의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으로는 'SeaChange' 가 있다. 'SeaChange'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노동, 책임 있는 운영, 책임 있는 자원이용, 사람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자사의 모든 지속가능성 노력을 'SeaChange'[79]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타이유니온이 이행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노력을 공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9) SeaChange Sustainability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

〈그림 4-1〉 SeaChange 4대 전략

자료: SeaChange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

타이유니온의 다랑어 자원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다랑어 목표(Tuna Commitment)이다. 타이유니온은 다랑어 취급 물량 100%에 대해 MSC 인증 획득을 장기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증 수산물로 취급하고, 중간 목표인 2020년까지 75%를 달성하기로 선언하였다. 또한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의 열대다랑어 4개종을 대상으로 6개 어장에서 MSC 인증을 목표로 하는 어업개선프로젝트(FIP)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의 FIP과 함께 추가적인 FIP을 실시하기 위해 미화 9천만 달러를 투자[80]계획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다랑어 원물을 구매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인권보장, 차별금지, 복지보장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준수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3자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플라스틱 목표 (Plastic Commitment)이다. 타이유니온은 어업 중 발생하는 플라스틱 저감 조치와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어구 유실 및 분

80) Thai Union's Fishery Improvement Project 2020 Roadmap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8.)

실, 폐기, 어구 회수를 포함한 어구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Global Ghost Gear Initiative(GGG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다랑어 어업에서 가장 큰 이슈인 어군집어장치(FAD)에 대하여 얽힘 없고(Non-entangled), 생분해성(Biodegradable) FAD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플라스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81]

셋째, 어업기술혁신(Technology & Innovation)이다. 타이유니온은 자사가 구매하는 수산물의 이력추적성과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an tracker"는 일반 소비자들이 자사 통조림 제품에 표시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을에서 선박정보, 어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유통단계별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공개하고 있다.[82]

마지막으로 수산물 구매기준(SeaChange Ignite)이다. 타이유니온과 미국의 비영리 아쿠아리움인 Monterey Bay Aquarium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가 구매하고 있는 모든 수산물은 Monterey Bay Aquarium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지속가능성 평가 신호등체계인 "Seafood Watch"에 따라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Seafood Watch"는 대중성 어종을 일부 선정하여 자원상태, 어업의 환경적 영향 등을 지표들을 적용하여 어종별 지속가능성을 신호등 색깔인 "빨강", "노랑", "녹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어종은 빨강, 높은 어종은 녹색 그리고 그 중간은 노랑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타이유니온은 Monterey Bay Aquarium의 Seafood Watch에 녹색(Best choice) 또는 노랑(Good Alternatives)에 해당하는 수산물만을 북미시장에 공급하고 있다.[83]

81) SeaChange Sustainability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7.)
82) SeaChange Sustainability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9.)

3. 스페인 OPAGAC[84)]

스페인의 대형냉동다랑어생산자협회(Organización de Productores Asociados de Grandes Atuneros Congeladores, OPAGAC)는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에서 고려되는 열 가지 기본 원칙을 통합 관리한다. OPAGAC는 UN 글로벌 콤팩트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개발하고,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시아 선단에 의한 선상노예 및 아동노동 착취 등 극심한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4-2〉 UN SDGs와 OPAGAC

자료: FIS 홈페이지(검색일: 2019. 2. 15.)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83) SeaChange Sustainability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6.)
84) OPAGAC 홈페이지(검색일: 2019. 7. 19.)

전 세계 다랑어 어획량의 8%를 차지하고 있는 OPAGAC는 ILO의 188협약 및 IMO의 해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책임 있는 다랑어 어업(Atún de Pesca Responsable, 이하 APR)' 표준을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표준 마련과 관련하여 OPAGAC를 비롯한 원양업계, 국제기구(ILO, IMO 등), 국제표준화기구(EFSA 등), 어업관리감독조직(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2015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APR는 2016년 스페인 표준화기구(Normalización Española; UNE)에 등록되었으며, 어업활동통제, 책임 있는 다랑어 어업을 위한 우수사례, 작업 환경 및 안전 조건, 해사 및 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UN SDGs 목표 14 달성을 위해 3개 대양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다랑어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WWF와 협력을 통한 어업개선프로젝트(Fishery Improvement Project, FIP)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업과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다랑어 어업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의 다랑어 선망어업의 MSC 인증을 취득하고자 한다. OPAGAC는 MSC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환경 영향 최소화, 효과적인 어업관리라는 3대 원칙 하에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모범 사례 행동 강령에는 어구 및 FAD를 사용하지 않고, 옵서버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며,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대해 선원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08년부터 다랑어 투명성 이니셔티브(Tuna Transparency Initiative; TTI)를 구상하여 2010년부터 본격화함으로써 목표 16을 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PAGAC는 투명성 보장을 위해 스페인 수산업연합(CEPESCA)과 수산총국(General Secretariat of

Fisheries of Spain)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 합의를 통해 선박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자국 선단에 VMS 의무화, 항해일지, 양륙 신고를 의무화했다.

4. 국내 원양기업

1) A사[85)]

A사는 1969년 창립되어 원양산업을 이끌어 온 선두주자 중 하나이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세네갈,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세이셸에 진출해 있다. 2008년 미국 스타키스트(Starkist), 2011년 세네갈 S.C.ASA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생산·유통망을 갖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 한국 최초로 MSC 인증을 획득했다. 중서부태평양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조업 과정에서 다른 어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며, 어업관리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86)] A사는 원양산업 선도기업으로서 전 세계 바다에서의 지속 가능한 조업을 위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천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조업 중인 A사 선박은 IOTC 결의안 15/08을 준수하여 얽힘 없는(Non-Entangling) FAD만을 사용해 조업하고 있다. 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선박 또한 2016년 9월 시행된 ISSF 보존조치 3.5에 따라 2018년부터 '얽힘 없는 FAD 지침(ISSF Guide for Non-Entangling FADs)'에 정의된 얽힘 위험이 높은 FAD를 선적하거나 사

85) A사 홈페이지(검색일: 2019. 10. 22.)를 참고하여 작성
86) MSC 홈페이지(검색일: 2019. 10. 25.)

용하지 않고 있다. A사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생분해성 FAD(Biodegradable FAD)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사무소에서 생분해성 FAD를 개발하고 실험했다. 이러한 활동은 2018년 WCPFC 기술이행위원회에서 업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

A사는 조업 중 부수어획 경감 및 우발적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제수산기구의 규정에 따른 '부수어획처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전 선박에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A사의 부수어획처리 관리지침은 '상어 보존관리 지침', '고래, 돌고래 및 고래상어 관련 지침', '바닷새 부수포획 경감 보존관리 지침', '바다거북 보존관리 지침'이다. 상어 보존관리 지침은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행위(shark finning)와 보호종 부수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다. 고래, 돌고래 및 고래상어 관련 지침은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해 조업 전 그리고 조업 중 조치사항에 다루고 있다. 바닷새 부수포획 경감 보존관리 지침은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 새 쫓는 줄(tori-line)을 사용하고, 찌꺼기를 관리하도록 하여 부수어획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것이다. 바다거북 보존관리 지침은 포획된 바다거북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게 방류하기 위한 방법과 보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4-3〉 (좌) 장완흉상어 방류 사례 및 (우) 고래탈출 장치 사용 사례

자료: A사 홈페이지(검색일: 2019. 10. 22.)

A사는 2016년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연구기관인 SRC(Stockholm Resilience Center)에서 발표한 세계 수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2개 기업 '키스톤액터(Keystone Actors)'로 선정되었다. 한국에서는 A사가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세계 최대의 연어회사인 노르웨이의 '모위(Mowi)'와 태국의 '타이유니온(Thai Union)', 일본의 '니쓰이(Nissui)', 세계 최대 어류 사료회사인 노르웨이의 '스크레팅(Skretting)'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키스톤액터 중에서도 세계 10대 기업들은 과학에 기반을 둔 수산업 혁신과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해양관리를 위한 수산물 비즈니스(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 이하 SeaBOS)' 이니셔티브를 구성했다. SeaBOS는 IUU 및 강제 노동 문제 해결, 추적성과 투명성,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규제 개선, 플라스틱 문제 해결, 업계의 긍정적 영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A사는 SeaBOS의 창립 멤버이자 국내 유일 기업으로 불법조업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 4-4〉 SeaBOS 멤버

자료: 키스톤 다이얼로그 홈페이지(검색일: 2019. 10. 22.)

A사는 해양생물 보호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규정 및 슬러지, 폐유,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슬러지 및 폐유의 보관과 폐기물의 해상 투기 금지, 폐기물 처리 절차 및 방법, 기록을 규정하고 있다.

〈표 4-4〉 A사 폐기물 처분 절차

폐기물 형태	모든 선박		해상 플랫폼 및 이러한 플랫폼으로부터 500m 이내의 선박
	특별해역 외	특별 해역 내	
합성로프, 어망, 독성 및 중급속이 함유된 플라스틱 제품의 소각잔재 및 비닐봉지를 포함한 플라스틱류	투기금지 (제3(1)(a)규칙)	투기금지 (제5(2)(a)(i)규칙)	투기금지 (제4(1) 규칙)
부유성의 던니지라이닝 및 포장재	육지로부터 25해리 이내에서 투기금지 (제3(1)(b)(i)규칙)	투기 금지 (제5(2)(a)(ii)규칙)	투기금지 (제4(1)규칙)
분쇄 또는 마쇄되지 아니한 종이, 걸레, 유리, 금속, 병, 도자기 및 이와 유사한 쓰레기	육지로부터 12해리이내에서 투기 금지 (제3(1)(b)(ii)규칙)	투기금지 (제5(2)(a)(ii)규칙)	투기금지 (제4(1)규칙)
분쇄 또는 마쇄된 종이, 걸레, 유리, 금속, 병, 도자기 및 이와 유사한 쓰레기	육지로부터 3해리이내에서 투기 금지 (제3(1)(c)규칙)	투기 금지 (제5(2)(a)(ii)규칙)	투기금지 (제4(1) 규칙)
분쇄 또는 마쇄되지 아니한 음식 쓰레기	육지로부터 12해리이내에서 투기 금지 (제3(1)(b)(ii)규칙	육지로부터 12해리이내에서 투기 금지 (제5(2)(b)규칙)	투기금지 (제4(1)규칙)
분쇄 또는 마쇄된 음식 쓰레기	육지로부터 3해리이내에서 투기 금지 (제3(1)(b)(ii)규칙)	* 광역 캐리비안 해역 내에서는 육지로부터 3해리 이내에서 투기 금지 * 상기이외의 특별 해역 내에서는 육지로부터 3해리	육지로부터 12해리이내에서 투기금지 (제4(2)규칙)

폐기물 형태	모든 선박		해상 플랫폼 및 이러한 플랫폼으로부터 500m 이내의 선박
	특별해역 외	특별 해역 내	
		이내에서 투기금지 (제5(2)(b)규칙	
혼합된 쓰레기(잡쓰레기)	가장 엄격한 배출 요건을 적용한다(제3(2) 및 5(3)규칙)		

자료: A사 홈페이지(검색일: 2019. 10. 22.)

A사는 선단의 안전운항과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해 안전운항 관리지침, 조업 중 규칙준수 지침, 외국인 선원 고통 및 관계 지침을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련 문제, 선박 사고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안전운항 관리지침은 공통 안전 수칙과 기관부 및 항해부 안전 수칙 등 작업 환경과 장소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 수칙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선박 퇴선, 침수, 화재 시 행동 지침을 마련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침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선상 안전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해 선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B사[87]

B사는 태평양, 인도양, 페루 공해, 포클랜드 공해, 칠레, 남아프리카 등에서 명태, 오징어, 이빨고기, 크릴, 골든크랩 등을 생산하는 원양 기업이다. 1986년 설립된 개양흥신 주식회사가 전신으로 1996년에 인성산업, 2019년에 B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B사는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남극 이빨고기 어장을 개발해 수출주력어종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87) B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B사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회사 내 자체 모니터링 조직인 안전준법팀을 신설했다. 안전준법팀은 B사의 선박이 입어한 연안국의 EEZ 경계선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체계와 불법조업 사전 방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CCAMLR 해역의 남극 생물종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남극해보존연합(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이하 ASOC) 및 시민환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다.

B사는 2019년 2월 남극 크릴 어업 예비 MSC를 취득했다. 평가 결과 CCAMLR 해역의 크릴 자원량은 한계 기준점보다 높아 크릴 어업이 크릴 자원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모니터링 및 통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옵서버 커버리지가 높아, 멸종 위험이 있는 종과 그 종의 서식지에 영향이 적다. 그리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원양어선을 통제 및 감시할 근거가 있으며, FAO의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행동 강령을 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사는 선내 안전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정부가 발행한 매뉴얼과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 매뉴얼을 발행에 전 선박에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수산기구의 보존수칙을 교육해 IUU 어업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전 조업선의 안전 점검을 위한 선박안전관리실태 점검표와 선원건강 관리를 위한 선원건강상태 점검표를 만들어 매월 10일 확인하고 있다. 출항 전에는 어선안전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선원 인권 및 안전·준법 교육을 실시한다. 출항 후부터 매월 1일에는 소방, 퇴선 훈련을 실시하며, 어기가 종료된 수에는 선박 점검을 실시하고 일일 보고를 통해 선박 상태를 확인한다. 매년 연말에는 남극조업 선원에 대해 극지방 선박 안전 항해 시뮬레이션 및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미비아 등 해적행위 위험국가 수역을 항해할 때에는 해적행위 대응 비상훈련을 사전에 받고 있다.

〈그림 4-5〉 원양어선 안전 관련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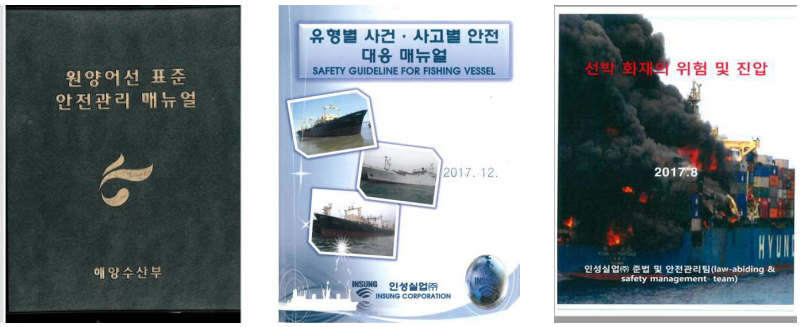

자료: B사 내부 자료

B사는 극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극지연구소와 MOU를 체결했다. 극지연구소와 B사는 상호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해 우리나라 극지 생물 연구에 협력한다. B사는 조업 중 어획된 생물자원을 연구 시료로써 극지연구소에 정보를 제공하고, 극지연구소는 극지 자원조사 자료를 공유해 극지 생물자원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시사점

제4장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CSR 활용 사례를 통해 국내 원양선사의 향후 CSR 활동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공헌, 환경,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기업의 시장 진출 또는 기존에 진출한 시장에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교육사업, 민관협력사업, 재해 복구, 사회공헌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공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CSR 활동보다

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내 원양 기업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이 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향후 수출국의 정책 및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CSR 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사례로 우리나라 다랑어의 중간 공급단계인 태국의 타이유니온과 다랑어의 주요 소비시장인 유럽의 스페인, 그리고 노르웨이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노르웨이는 ILO의 어선원 협약과 IMO의 케이프타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국내법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다. 타이유니온은 유럽과 미국에 다랑어 통조림의 주요 수출국으로써 선진 소비시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랑어 자원의 지속가능성, 어선원의 복지, IUU 어업 근절 등 공정 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OPAGAC은 다랑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양 기업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A사는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한국 최초로 MSC 인증을 취득하고 수산업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SeaBOS를 창단해 국제 사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어선원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B사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조직 내에 자체 모니터링 부서를 마련하였으며, NGO 및 연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선내 안전과 인권 등에 관한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조직 구성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 5 장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 인식도 조사

제1절 설문 개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규범이 확산되고 세계 주요 수산 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업계 실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주요 소비지인 미국과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업계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식도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에 있어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해외 소비자 설문

1. 분석 모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Carroll이 정의한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등 4개 차원으로 구분했다. 김해룡 외(2005), 최지호·이성근·문연희(2007), 허인숙(2018)은 사회적 책임을 구분함에 있어 구체적인 활동 유형을 제시했다. 김해룡 외는 사회적 책임을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으로 나누어 검증했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척도에서 추상적 개념 중 경제적 책임 외의 부문은 기각되었다. 최지호·이성근·문연희는 각 사회적 이슈 유형과 사회적 책임 범주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해냈다.

〈표 5-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모형

선행연구	외생변수	매개변수	내생변수	기타
김해룡 외(2005)	• 사회적 책임 – 사회공헌활동 – 지역·문화사업 – 소비자 보호 – 환경보호 – 경제적 책임		• 소비자 신뢰 • 소비자 충성도	
최지호·이성근·문연희(2007)	• 사회적 책임 – 경제/법률/윤리/자선적 책임 • 사회적 이슈 – 제품·서비스/종업원 지원/지역사회개발/평등기회/환경보호		• 경영성과 – 동일시 – 기업평가	

선행연구	외생변수	매개변수	내생변수	기타
이한준·박종철(2009)	• 사회적 책임 – 경제/법률/윤리/자선적 책임	• 신뢰 – 전문성 기초 신뢰 – 호의성 기초 신뢰	• 제품 평가 • 기업 평가	
홍복순 외(2012)	• 사회적 책임 – 경제/법률/윤리/자선적 책임	• 기업 이미지 • 브랜드 이미지	• 구매의도	
이지현, 이주현(2013)	• 사회적 책임 – 경제/법률/윤리/자선적 책임	• 윤리적 소비주의	• 구매의도	• 조절변수 – 구매경험 유무
안소영·한진수(2014)	• 사회적 책임 – 경제/법률/윤리/자선적 책임	• 호텔 이미지	• 고객만족도 • 고객충성도	
소원근·김하균(2016)	• 사회적 책임 –경제·사회 기여도 – 사회적 활동 정도 – 지역사회 삶의 질 –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여 활동	• 브랜드 가치 – 브랜드 인지도 – 브랜드 이미 – 지각된 품질	• 고객충성도 – 재구매의도 – 추천의도	• 조절변수 – 일반/수산기업
허인숙(2018)	• 사회적 책임 – 조직거버넌스 – 인권 – 노동관행 – 지역사회 – 고객쟁점 – 공정 운영 관행 – 환경		• 조직 성과 – 개인 성과 – 팀 성과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구분함에 있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활용했다. 사회적 책임 구성은 선행연구와 ISO 26000, UN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재구성했다.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을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대 의제로 구분한다. UN Global Compact는 사회적 책임을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의 4개 분야로 나눈다. 설문 응답의 용이성을 위해 구분을 줄이고자 인권, 노동관행(노동)은 노동자 인권 보장으로, 지배구조와 반부패는 공정 운영 항목을 추가하여 반부패로, 소비자 이슈는 일부 공정 운영 항목을 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로 재구성했다.

매개변수로는 이한준·박종철(2009)과 홍복순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를 활용하였다. 내생변수인 소비자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구매의도와 추천의도를 선정했다.

평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절변수로써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를 활용했다.

〈그림 5-1〉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행동 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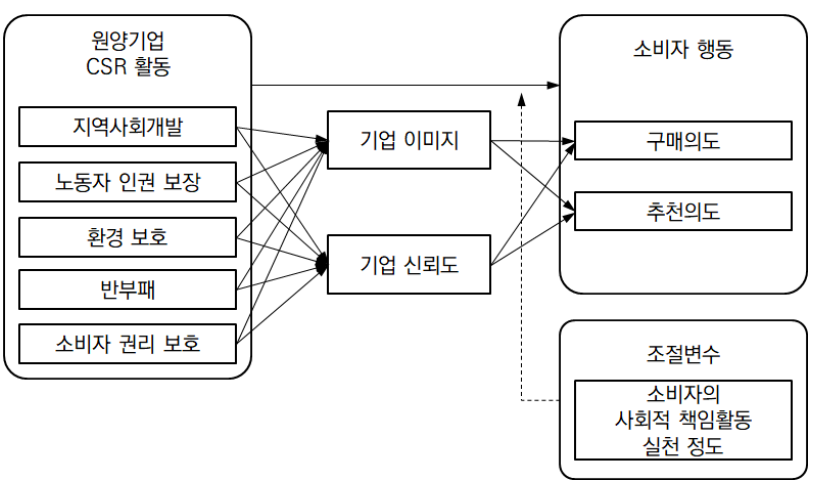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설정된 분석 모형에 따라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각 활동 부문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다.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는 각각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가 이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했다.

〈표 5-2〉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분석 연구 가설

가설	
H1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1	원양기업의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2	원양기업의 노동자 인권 보장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3	원양기업의 환경 보호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4	원양기업의 반부패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5	원양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2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2-1	원양기업의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기업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2-2	원양기업의 노동자 인권 보장 활동은 기업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2-3	원양기업의 환경 보호 활동은 기업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2-4	원양기업의 반부패 활동은 기업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2-5	원양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은 기업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3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3-1	원양기업의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3-2	원양기업의 노동자 인권 보장 활동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3-3	원양기업의 환경 보호 활동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3-4	원양기업의 반부패 활동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3-5	원양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4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추천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4-1	원양기업의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추천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H4-2	원양기업의 노동자 인권 보장 활동은 추천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4-3	원양기업의 환경 보호 활동은 추천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4-4	원양기업의 반부패 활동은 추천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4-5	원양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은 추천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5	원양기업의 기업 이미지는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5-1	원양기업의 기업 이미지는 소비자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5-2	원양기업의 기업 이미지는 소비자 추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6	원양기업의 기업 신뢰도는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6-1	원양기업의 기업 신뢰도는 소비자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6-2	원양기업의 기업 신뢰도는 소비자 추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7	기업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7-1	기업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대한 지역사회개발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7-2	기업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대한 노동자 인권 보장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7-3	기업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대한 환경 보호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7-4	기업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대한 반부패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7-5	기업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8	기업 신뢰도는 구매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8-1	기업 신뢰도는 구매의도에 대한 지역사회개발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8-2	기업 신뢰도는 구매의도에 대한 노동자 인권 보장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8-3	기업 신뢰도는 구매의도에 대한 환경 보호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8-4	기업 신뢰도는 구매의도에 대한 반부패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8-5	기업 신뢰도는 구매의도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9	기업 이미지는 추천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9-1	기업 이미지는 추천의도에 대한 지역사회개발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9-2	기업 이미지는 추천의도에 대한 노동자 인권 보장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9-3	기업 이미지는 추천의도에 대한 환경 보호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9-4	기업 이미지는 추천의도에 대한 반부패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9-5	기업 이미지는 추천의도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10	기업 신뢰도는 추천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10-1	기업 신뢰도는 추천의도에 대한 지역사회개발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10-2	기업 신뢰도는 추천의도에 대한 노동자 인권 보장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10-3	기업 신뢰도는 추천의도에 대한 환경 보호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가설
H10-4	기업 신뢰도는 추천의도에 대한 반부패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10-5	기업 신뢰도는 추천의도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
H11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소비자 행동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활동 참여 정도는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2. 설문 설계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을 위한 설문을 설계했다. 표본은 수산물 구매 경험이 있고, 식료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소비자로 한정했다. 설문 대상 국가는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원양 수산물인 다랑어와 이빨고기 소비가 많은 영국과 미국으로 선정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의 개념에 대한 인식 여부와 사회적 책임 이행이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문항을 설정했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와 지불의사가격을 확인함으로써 예상되는 기업의 추가 이익을 분석했다. 또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적 책임 분야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수산기업과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물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연구 모형에 따라 지역사회개발, 노동자 인권 보장, 환경 보호, 반부패, 소비자 권리 보호 등 5개 부문에 대해 각 3~4개 문항을 구성했다.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는 선행연구를 참고했다. 구매 의도는 구매와 재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의도와 충성도에 대한 문항을 활용했다. 추천 의도는 추천을 필요로 하는 집단과 필요로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추천 의도로 확인했다.

〈표 5-3〉 원양산업의 CSR에 대한 소비자 설문문항 구성

구분		문항	참고문헌
CSR 인식 정도		귀하께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변혜원·조영현 (2013)
		소비자로서 수산기업의 CSR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수산물 구매 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편입니까?	변혜원·조영현 (2013)
		수산물 구매 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상품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변혜원·조영현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수산기업의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품이 $10.00(영국은 £10.00)일 때,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다음 중 귀하께서 지난 12개월 동안 하신 적 있는 일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변혜원·조영현 (2013)
		귀하께서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무엇입니까?	허인숙 (2018)
		귀하께서 수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무엇입니까?	허인숙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 사회 개발	기업이 위치하거나 조업을 하는 지역을 위해 문화·교육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김해룡 외 (2005), 고동수 (2011), 최지호·이성근·문연희 (2007)
		기업이 위치하거나 조업을 하는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할 것이다.	
		기업이 위치하거나 조업을 하는 지역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기업이 위치하거나 조업을 하는 지역의 인프라 마련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것이다.	
	노동자 인권	인종 및 성별에 따라 근무조건, 승진, 임금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고동수 (2011), 최지호·이성근·문연희 (2007)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선원 안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장비를 마련할 것이다.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나은 생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구분		문항	참고문헌
	환경 보호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할 것이다.	UN Global Compact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이용할 것이다.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반부패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할 것이다.	UN Global Compact
		책임감 있는 정치적 참여를 할 것이다.	
		공급사슬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촉진할 것이다.	
	소비자 이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고동수 (2011)
		환경적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할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기업 평가	기업 이미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순복 외(2012), 소원근·김하균 (2016)
		사회에 공헌한다.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한다.	
		경영이 잘 되고 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	
	기업 신뢰도	나는 이 기업을 신뢰한다.	Chaudhuri and Holbrook (2001)
		나는 이 기업을 믿을 수 있다.	
		이 기업은 정직하다.	
		이 기업은 안심할 수 있다.	
소비자 행동	구매 의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이 브랜드를 재구매할 것이다.	Chaudhuri and Holbrook (2001)
		이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해서 구입할 것이다.	
		이 브랜드의 제품만을 구입할 것이다.	
		이 브랜드의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추천 의도	가족, 친구, 친지에게 이 기업을 추천할 것이다.	서지연·이형주 (2011)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3. 설문 결과

1) 응답자 특성

설문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표본은 층화표본추출법에 추출했다. 응답자는 총 600명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300명이 각각의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1.7%, 여성이 58.3%로 여성이 약 16.6%p 많았다. 가정 내 식료품 및 수산물 구매 결정권을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연령은 19~29세가 17.7%를 차지하고, 30대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40대가 26.2%, 50대 이상이 29.7%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8%로 가장 적었으며 대학교 졸업자와 고졸자의 비중이 38.0%, 23.3%로 많았다. 응답자의 51%는 정규직 근로자였고, 무직과 단기간 근무제 근로자는 15.3%, 14.8%로 나타났다.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 전업주부의 비중은 6.0%로 전체 응답자 중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미국과 영국의 중위 소득은 $61,822와 £28,400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응답자 중 중위소득 이하인 비율은 미국은 약 40.3%, 영국은 43.6%로 계층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표 5-4〉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요약

구분		응답수	비율(%)
국적	미국	300	50.0
	영국	300	50.0
성별	남성	250	41.7
	여성	350	58.3
연령	19~29세	106	17.7
	30대	159	26.5
	40대	157	26.2
	50대 이상	178	29.7
학력	고졸 이하	11	1.8
	고졸	140	23.3
	전문대졸	104	17.3
	대학교졸	228	38.0
	대학원졸	117	19.5
직업	정규직(주40시간 이상)	308	51.3
	단시간 근무제(주40시간 미만)	89	14.8
	무직	92	15.3
	자영업	47	7.8
	학생	28	4.7
	주부	36	6.0
가계소득 (미국)	USD 20,000 미만	39	13.0
	USD 20,000 ~ USD 35,000 미만	45	15.0
	USD 35,000 ~ USD 50,000 미만	37	12.3
	USD 50,000 ~ USD 75,000 미만	60	20.0
	USD 75,000 ~ USD 100,000 미만	51	17.0
	USD 100,000 이상	68	22.7
가계소득 (영국)	GBP 20,000 미만	58	19.3
	GBP 20,000 ~ GBP 35,000 미만	73	24.3
	GBP 35,000 ~ GBP 50,000 미만	56	18.7
	GBP 50,000 ~ GBP 75,000 미만	51	17.0
	GBP 75,000 ~ GBP 100,000 미만	34	11.3
	GBP 100,000 이상	28	9.3

자료: 저자 작성

2) 소비자 CSR 인식

CSR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들어만 보았다는 소비자가 29.2%, 개념만 알고 있다는 소비자가 43.5%, 알고 있거나 잘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는 27.3%였다. 이를 통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CSR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는 27.3%만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중 주부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에 비해 이해 정보가 낮은 편이었다.

〈그림 5-2〉 CSR 개념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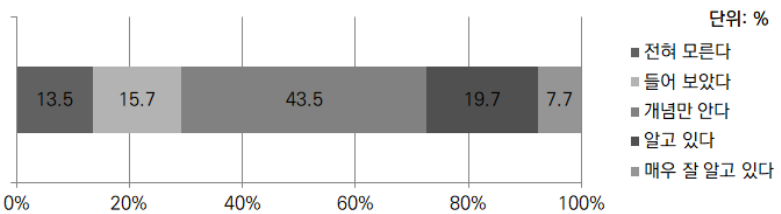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소비자로서 수산기업의 CSR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57.6%의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수산식품 구입 시 CSR 활동에 대해 홍보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0.8%로 많았다. 소비자의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5-3〉 수산식품 구매 시 CSR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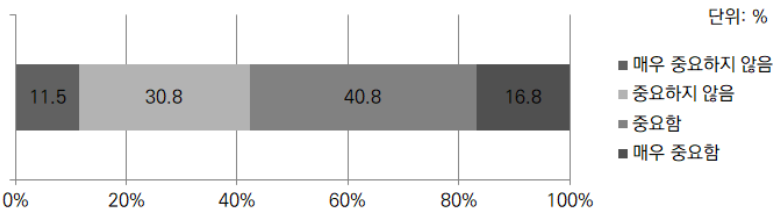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수산물 구매 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88%의 소비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 9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소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졸자와 무직, 50대 이상 집단으로 각각 17.1%, 15.2%, 16.3%를 차지하였다.

〈그림 5-4〉 CSR 실천 기업 제품 구매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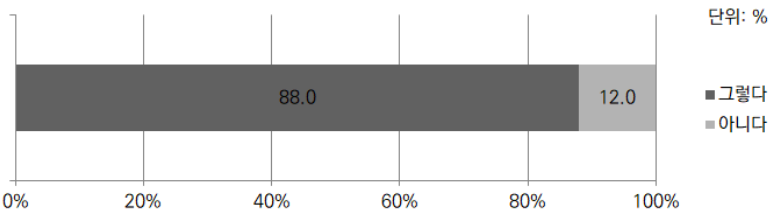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수산기업의 제품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46.8%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연령별 응답자 비율이 크게 차이 났다. 19~29세 소비자는 54.7%, 30대는 56%가 불매한 데에 비해, 40대는 46.5%가 불매했으며 50대는 34.3%만이 불매했다고 답해 연령이 낮을수록 CSR 불이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5〉 CSR 불성실 이행 기업 불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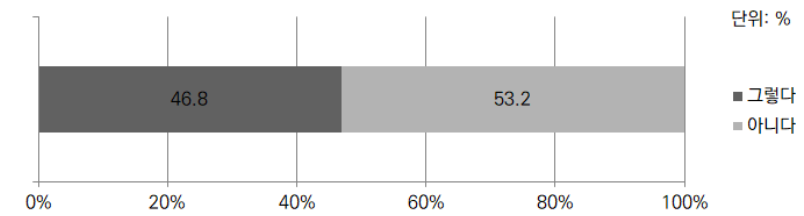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CSR을 성실히 이행하는 수산기업의 제품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65.7%의 소비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의 78.6%와 주부의 75%가 그렇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추가 비용 지불에 대해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29세는 73.6%, 30대는 71.1%, 40대는 66.2%, 50대 이상은 55.6%가 추가 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6〉 CSR 성실 이행 기업의 제품에 대한 추가비용지불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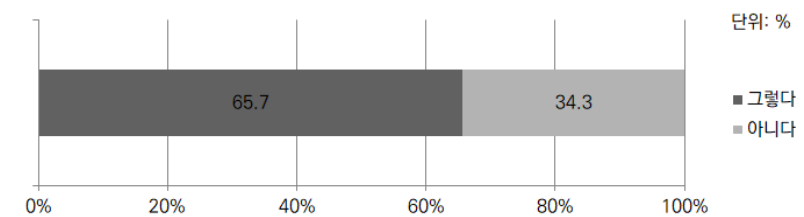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8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제시하고 최근 1년간의 이행 여부를 물어 실천한 활동

의 개수를 확인했다. 0~2개를 이행한 경우 '낮음', 3~5개를 이행한 경우 '중간', 6~8개를 이행한 경우 '높음'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중간 정도는 33.8%, 높은 수준을 보인 응답자는 17%였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 응답자가 더 높은 실천 수준을 보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직업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정규직의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비교적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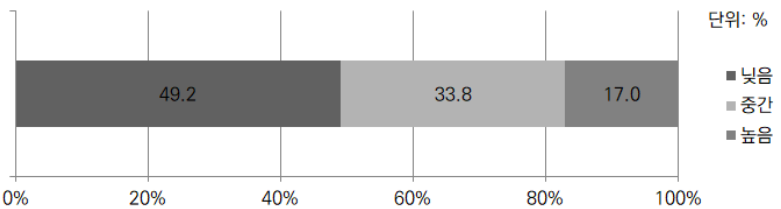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섯 가지 CSR 인식을 확인하는 질문을 지표로 하여 각 문항에 1점씩 배점해 5점 만점의 인식도를 산출했다. CSR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1점, 그렇지 않은 응답을 0점으로 두고 응답별로 가중치를 주어 계산했다. 분석 결과 미국과 영국의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3.25의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과 직업, 사회적 책임의 실천 정도에 따라 인식도의 차이가 컸다. 연령이 어리고 사회적 책임을 많이 실천할수록 인식도가 높았으며, 정규직과 학생, 주부의 인식도가 높은 반면, 무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무제 종사자의 인식도는 비교적 낮았다.

〈표 5-5〉 소비자 특성별 CSR 인식도 및 CSR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가치

구분		CSR 인식도	평균 지불의사가치($)
전체		3.25	12.63
국적	미국	3.27	12.33
	영국	3.22	12.34
성별	남성	3.25	12.58
	여성	3.24	12.17
연령	19~29세	**3.44**	**13.17**
	30대	**3.46**	**12.89**
	40대	3.31	11.60
	50대 이상	2.89	11.83
학력	고졸 이하	3.37	11.25
	고졸	2.89	12.29
	전문대졸	3.26	12.69
	대학교졸	3.39	12.07
	대학원졸	3.37	12.73
직업	정규직(주40시간 이상)	3.41	12.54
	단시간 근무제(주40시간 미만)	3.03	13.29
	무직	2.98	11.79
	자영업	3.09	11.50
	학생	3.34	11.50
	주부	3.22	11.56
CSR 인식도	낮음	-	11.16
	높음	-	12.66
사회적 책임 실천정도	낮음	**2.67**	11.94
	중간	**3.65**	12.38
	높음	**4.11**	12.95

주1: CSR 인식도: CSR에 대한 5개 문항을 각 1점으로 환산하여 총점 5점의 인식도를 산정
주2: 지불의사가치: 시장가격이 $10.00인 제품의 제조사가 사회적 책임 이행 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자료: 저자 작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산기업의 제품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전체

평균 $12.63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력이 높고 정규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CSR의 인식도가 평균보다 높거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많은 소비자가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에 따른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미래의 시장 주도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양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성숙한 소비 및 사회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ISO 26000의 7대 의제를 기준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인권(38.3%), 환경(29.3%), 노동관행(12.2%) 순이었다. 2순위로 선택한 것은 환경(23.7%), 노동관행(23.5%), 공정 운영(19%)이었다. 3순위로는 노동관행(20%), 공정 운영(19.7%), 환경(17.3%)이 가장 많이 꼽혔다. 노동관행과 환경은 1, 2, 3순위에서 상위 3개 영역에 들어 일반 기업의 CSR에 있어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임을 알 수 있었다. 1, 2, 3순위에 각 가중치를 두어 종합적인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인권이 27.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환경(25.4)과 노동관행(17.3%)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5-6〉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지배구조	7.2	3.8	5.2	5.7
인권	**38.3**	18.8	12.8	**27.6**
노동관행	**12.2**	**23.5**	**20.0**	**17.3**
환경	**29.3**	**23.7**	**17.3**	**25.4**
공정 운영	7.5	**19.0**	**19.7**	13.4
소비자 이슈	3.2	6.2	15.3	6.2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	2.3	5.0	9.7	4.4

주: 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순위 선정
자료: 저자 작성

수산기업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일반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수산기업의 경우 1순위로 환경(44.3%), 인권(19.5%), 노동관행(16.2%)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으며, 2순위로는 노동관행(23.8%), 환경(23.7%), 공정 운영(23.7%)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순위에는 공정 운영(21.3%), 노동관행(20.8), 소비자 이슈(15.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 2, 3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환경이 32%로 가장 높았고, 노동관행과 공정 운영이 19.5%와 1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수산기업에게 환경과 노동 부문에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지배구조	4.5	4.8	8.3	5.3
인권	**19.5**	13.3	13.0	16.4
노동관행	**16.2**	**23.8**	**20.8**	**19.5**
환경	**44.3**	**23.7**	11.8	**32.0**
공정 운영	10.7	**23.7**	**21.3**	**16.8**
소비자 이슈	4.0	6.7	**15.2**	6.8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	0.8	4.0	9.5	3.3

주: 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순위 선정
자료: 저자 작성

3) 분석 결과

(1)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서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판별타당도를 분석했다. 모든 측정변수의 외부적재치(Outer Loading)가 0.7 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변수 신뢰도와 AVE(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0.5 이상으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집중타당도 평가 결과 요약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0.70	〉0.50	〉0.50
지역사회 개발	COM1	0.863	0.745	0.768
	COM2	0.906	0.821	
	COM3	0.846	0.716	
	COM4	0.888	0.789	
노동자 인권	LHR1	0.830	0.689	0.724
	LHR2	0.832	0.692	
	LHR3	0.888	0.789	
	LHR4	0.851	0.724	
환경 보호	ENV1	0.902	0.814	0.825
	ENV2	0.936	0.876	
	ENV3	0.887	0.787	
반부패	ANT.C1	0.885	0.783	0.814
	ANT.C2	0.918	0.843	
	ANT.C3	0.903	0.815	
소비자 이슈	CON1	0.867	0.752	0.748
	CON2	0.860	0.740	
	CON3	0.880	0.774	
	CON4	0.851	0.724	
기업 이미지	CI01	0.856	0.733	0.770
	CI02	0.872	0.760	
	CI03	0.884	0.781	
	CI04	0.884	0.781	
	CI05	0.891	0.794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0.70	〉0.50	〉0.50
기업 신뢰도	CT1	0.918	0.843	0.814
	CT2	0.837	0.701	
	CT3	0.939	0.882	
	CT4	0.912	0.832	
구매 의도	PI1	0.864	0.746	0.685
	PI2	0.876	0.767	
	PI3	0.739	0.546	
	PI4	0.826	0.682	
추천 의도	RI1	0.968	0.937	0.938
	RI2	0.969	0.939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크론바하 알파, rho_A, CR(합성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을 통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신뢰도 측정 지표에서 임계값 이상의 값이 도출되어 모든 잠재변수가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내적 일관성 신뢰도 평가 결과 요약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적 일관성 신뢰도		
		크론바하 알파	rho_A	CR
		0.60~0.90	〉0.70	0.60~0.90
지역사회 개발	COM1	0.899	0.900	0.930
	COM2			
	COM3			
	COM4			
노동자 인권	LHR1	0.873	0.88	0.913
	LHR2			
	LHR3			
	LHR4			
환경 보호	ENV1	0.894	0.895	0.934
	ENV2			
	ENV3			
반부패	ANT.C1	0.886	0.886	0.929
	ANT.C2			
	ANT.C3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적 일관성 신뢰도		
		크론바하 알파	rho_A	CR
		0.60~0.90	〉0.70	0.60~0.90
소비자 이슈	CON1	0.887	0.888	0.922
	CON2			
	CON3			
	CON4			
기업 이미지	CI01	0.925	0.926	0.944
	CI02			
	CI03			
	CI04			
	CI05			
기업 신뢰도	CT1	0.923	0.926	0.946
	CT2			
	CT3			
	CT4			
구매의도	PI1	0.847	0.858	0.897
	PI2			
	PI3			
	PI4			
추천의도	RI1	0.934	0.934	0.968
	RI2			

자료: 저자 작성

판별타당도는 Fornell-Larcker기준과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로 분석했다. Fornell-Larcker기준에 따른 판별타당도 평가 결과 구매의도와 추천의도를 제외한 변수에서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치보다 AVE 제곱근값이 더 컸다. 그러므로 반영적 측정 모델의 잠재변수 간 판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구매의도와 추천의도 간 상관관계가 AVE 제곱근보다 커 판별 타당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두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 간 교차적재치를 추가로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PI3의 외부적재치가 RI1, RI2의 교차적재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없었다. 따라서 PI3을 제외하여 다시 판별타당도 분석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치가 AVE 제곱근보다 낮아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0〉 Fornell-Larcker 기준에 의한 판별타당도 평가 결과 요약

	지역사회 개발	노동자 인권	환경 보호	반부패	소비자 이슈	기업 이미지	기업 신뢰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
지역사회 개발	0.876								
노동자 인권	0.760	0.851							
환경 보호	0.795	0.787	0.908						
반부패	0.783	0.758	0.794	0.902					
소비자 이슈	0.769	0.794	0.832	0.831	0.865				
기업 이미지	0.778	0.769	0.773	0.740	0.792	0.877			
기업 신뢰도	0.692	0.645	0.698	0.656	0.706	0.820	0.902		
구매 의도	0.644	0.573	0.624	0.587	0.611	0.771	0.759	0.874	
추천 의도	0.651	0.562	0.635	0.617	0.631	0.728	0.764	0.818	0.969

자료: 저자 작성

(2) 가설 검증

내생잠재변수 간 다중공선성 판단을 위해 내부VIF값을 확인했다. 내부VIF값(Inner VIF Value)은 소비자 이슈를 제외한 모든 내생잠재변수에서 5 미만으로 잠재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이슈는 구매의도, 추천의도와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결정계수(R^2)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1〉 잠재변수 간 다중공선성 평가 결과 요약

	지역사회 개발	노동자 인권	환경 보호	반부패	소비자 이슈	기업 이미지	기업 신뢰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
지역사회 개발						3.506	3.506	3.799	3.799
노동자 인권						3.433	3.433	3.630	3.630
환경 보호						4.393	4.393	4.496	4.496
반부패						4.068	4.068	4.067	4.067
소비자 이슈						4.782	4.782	**5.067**	**5.067**
기업 이미지								3.047	3.047
기업 신뢰도								3.047	3.047
구매 의도									
추천 의도									

자료: 저자 작성

〈표 5-12〉 결정계수(R^2) 평가 결과 요약

내생잠재변수	R^2	수정된 R^2
기업 이미지	0.722	0.719
기업 신뢰도	0.566	0.562
구매의도	0.649	0.646
추천의도	0.630	0.626

자료: 저자 작성

효과크기(f^2) 평가 결과 모든 사회적 책임이 내생잠재변수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기여하는 효과크기(f^2)가 0.02 미만으로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는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개발, 노동자 인권 보장, 소비자 이슈 대응은 기업 이미지에 약한 기여도를 나타냈다. 기업 신

뢰에는 지역사회개발, 환경 보호, 소비자 이슈 대응이 낮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변수인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는 모두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업 신뢰도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정도로, 다른 잠재변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효과크기는 0.15보다 낮아 기여하는 정도가 낮거나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5-13〉 효과크기(f^2) 평가 결과 요약

	지역사회 개발	노동자 인권	환경 보호	반부패	소비자 이슈	기업 이미지	기업 신뢰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
지역사회 개발						0.078	0.046	0.008	0.012
노동자 인권						0.049	0.002	0.009	0.013
환경 보호						0.014	0.021	0.000	0.002
반부패						0.001	0.000	0.000	0.006
소비자 이슈						0.058	0.038		
기업 이미지								0.123	0.031
기업 신뢰도								0.126	**0.186**
구매 의도									
추천 의도									

자료: 저자 작성

예측적합성 분석 결과 모든 내생잠재변수의 Q^2값이 0보다 커 구조모델의 예측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표 5-14〉 예측적합성(Q^2) 평가 결과 요약

내생잠재변수	Q^2
기업 이미지	0.518
기업 신뢰도	0.430
구매의도	0.462
추천의도	0.559

자료: 저자 작성

〈표 5-15〉 경로계수의 유의성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요약

가설		경로계수	t-values	p values	유의성 (p<0.05)
H1-1	**지역사회개발 → 기업 이미지**	**0.276**	**5.03**	**0.000**	**YES**
H2-1	**지역사회개발 → 기업 신뢰도**	**0.266**	**4.077**	**0.000**	**YES**
H3-1	지역사회개발 → 구매 의도	0.104	1.312	0.190	NO
H4-1	지역사회개발 → 추천 의도	0.130	1.892	0.059	NO
H1-2	**노동자 인권 보장 → 기업 이미지**	**0.217**	**3.944**	**0.000**	**YES**
H2-2	노동자 인권 보장 → 기업 신뢰도	0.047	0.815	0.416	NO
H3-2	노동자 인권 보장 → 구매 의도	-0.104	1.913	0.056	NO
H4-2	**노동자 인권 보장 → 추천 의도**	**-0.130**	**2.496**	**0.013**	**YES**
H1-3	**환경 보호 → 기업 이미지**	**0.132**	**2.391**	**0.017**	**YES**
H2-3	**환경 보호 → 기업 신뢰도**	**0.200**	**2.905**	**0.004**	**YES**
H3-3	환경 보호 → 구매 의도	0.023	0.407	0.684	NO
H4-3	환경 보호 → 추천 의도	0.054	0.887	0.376	NO
H1-4	반부패 → 기업 이미지	0.024	0.41	0.682	NO
H2-4	반부패 → 기업 신뢰도	0.019	0.253	0.800	NO
H3-4	반부패 → 구매 의도	-0.020	0.333	0.739	NO
H4-4	반부패 → 추천 의도	0.090	1.530	0.127	NO
H1-5	**소비자 이슈 → 기업 이미지**	**0.278**	**4.521**	**0.000**	**YES**
H2-5	**소비자 이슈 → 기업 신뢰도**	**0.282**	**3.926**	**0.000**	**YES**
H5-1	**기업 이미지 → 구매 의도**	**0.459**	**6.439**	**0.000**	**YES**
H5-2	**기업 이미지 → 추천 의도**	**0.235**	**3.989**	**0.000**	**YES**
H6-1	**기업 신뢰도 → 구매 의도**	**0.376**	**5.187**	**0.000**	**YES**
H6-2	**기업 신뢰도 → 추천 의도**	**0.468**	**7.948**	**0.000**	**YES**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을 위해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지역사회개발, 노동자 인권 보장, 환경 보호, 반부패가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노동자 인권 보장은 구매의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추천 의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개발, 노동자 인권 보장, 환경보호, 소비자 이슈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반부패의 추천 의도에 대한 영향은 기각되었다. 기업 신뢰도의 경우 지역사회 개발, 환경보호, 소비자 이슈만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반부패 활동을 제외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미지와 기업 신뢰도가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16〉 기업이미지 및 신뢰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및 적합성 평가 결과 요약

가설		경로계수	t-values	p values	유의성 (p<0.05)
H7-1	**지역사회개발 →기업 이미지 →구매 의도**	**0.127**	**4.299**	**0.000**	**YES**
H7-2	**노동자인권보장→기업이미지→구매의도**	**0.100**	**3.245**	**0.001**	**YES**
H7-3	**환경 보호 →기업 이미지 →구매 의도**	**0.061**	**2.038**	**0.042**	**YES**
H7-4	반부패 →기업 이미지 →구매 의도	0.011	0.404	0.686	NO
H7-5	**소비자 이슈 →기업 이미지 →구매 의도**	**0.128**	**3.964**	**0.000**	**YES**
H8-1	**지역사회개발 →기업 신뢰도 →구매 의도**	**0.100**	**3.095**	**0.002**	**YES**
H8-2	노동자인권보장→기업신뢰도→구매의도	0.018	0.811	0.418	NO
H8-3	**환경 보호 →기업 신뢰도 →구매 의도**	**0.075**	**2.649**	**0.008**	**YES**

가설		경로계수	t-values	p values	유의성 (p<0.05)
H8-4	반부패 →기업 신뢰도 →구매 의도	0.007	0.249	0.803	NO
H8-5	**소비자 이슈 →기업 신뢰도 →구매 의도**	**0.106**	**3.076**	**0.002**	**YES**
H9-1	**지역사회개발 →기업 이미지 →추천 의도**	**0.065**	**3.268**	**0.001**	**YES**
H9-2	**노동자인권보장 →기업 이미지 →추천 의도**	**0.051**	**3.044**	**0.002**	**YES**
H9-3	**환경 보호 →기업 이미지 →추천 의도**	**0.031**	**2.055**	**0.040**	**YES**
H9-4	반부패 →기업 이미지 →추천 의도	0.006	0.394	0.694	NO
H9-5	**소비자 이슈 →기업 이미지 →추천 의도**	**0.065**	**2.856**	**0.004**	**YES**
H10-1	**지역사회개발 →기업 신뢰도 →추천 의도**	**0.124**	**3.394**	**0.001**	**YES**
H10-2	노동자인권보장 →기업 신뢰도 →추천 의도	0.022	0.811	0.418	NO
H10-3	**환경 보호 →기업 신뢰도 →추천 의도**	**0.093**	**2.780**	**0.006**	**YES**
H10-4	반부패 →기업 신뢰도 →추천 의도	0.009	0.246	0.806	NO
H10-5	**소비자 이슈 →기업 신뢰도 →추천 의도**	**0.132**	**3.680**	**0.000**	**YES**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했다. 기업이미지가 반부패를 제외한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의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매개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반부패를 제외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업 신뢰도는 반부패와 노동자 인권 보장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책임 활동의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정도가 구매 의도와 추천 의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모든 가설이 기각되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정도뿐만 아니라, 성별, 국가, 연령,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절변수로 두고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소비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8〉 PLS-SEM 분석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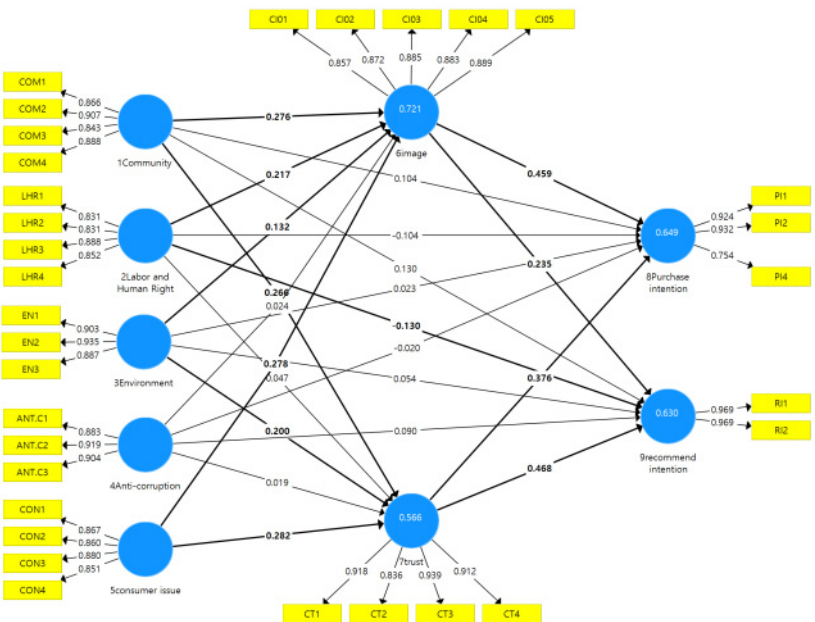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정리하면, 대부분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를 만드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비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를 만드는 데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 부분이 구매 의도 및 추천 의도와 같은 소비자 행동을 결정한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소비

자로 하여금 구매와 추천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물론 이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기업 신뢰도는 추천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원양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원양업계 인식도 조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내 원양업계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하는 원양 기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해 CSR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정도와 실천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업계 인식도, CSR 부문별 우선순위, 실천 정도 등을 파악했다[88].

1. 업계 설문조사 결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양 업계 인식도

설문조사와 업계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53.8%였으며, 30.8%는 기업의

88) 업계 설문조사에는 전체 39개 원양선사 중 18개 선사에서 응답을 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 6개를 제외한 12개 표본에 대해 인식도 분석을 실시함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기업 운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41.7%),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기 때문(25%)이라고 밝혔다. 응답자 중 16.7%는 보다 큰 수익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원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한 부문에 대해 업계에 설문한 결과, 소비자 설문 결과(〈표 5-7〉)과 차이를 나타냈다. 해외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 부문별 우선순위 1순위로 환경과 인권, 노동관행을 높게 평가한 데에 반해, 원양 업계에서는 노동관행과 지배구조, 공정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소비자가 2순위 부문으로 노동관행, 환경, 공정 운영을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꼽은 데에 반해, 업계는 공정운영,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3순위로 소비자가 공정 운영, 노동관행, 소비자 이슈를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업계는 환경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각 순위별 응답을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업계에서는 공정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운영에 대한 중요성은 전체 중 22.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배구조(18.1%), 노동관행(16.7%)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평가한 환경(32.0%), 노동관행(19.5%), 공정운영(16.8%)과 차이를 보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기업은 전체 부문 중 소비자 이슈,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소비자와 업계 간의 중요도 순위와 그 비중의 차이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노동관행과 공정운영을 중요한 부문으로 뽑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기도 했다.

〈표 5-17〉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도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지배구조	**25.0**	8.3	16.7	**18.1**
인권	8.3	**25.0**	8.3	13.9
노동관행	**33.3**	0.0	0.0	**16.7**
환경	8.3	0.0	**33.3**	9.7
공정 운영	16.7	**33.3**	16.7	**22.2**
소비자 이슈	8.3	8.3	16.7	9.7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	0.0	**25.0**	8.3	9.7

주: 1순위 300%, 2순위 200%, 3순위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순위 선정
자료: 저자 작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양 업계의 인식도 조사 결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며 사회적 책임의 실천과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경제 주체로서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ISO 26000을 기준으로 구분한 사회적 책임 7개 부문 중 공정 운영과 지배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청렴하고 투명한 운영에 중요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관행과 인권을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아 선상 노동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 업계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원양 업계에서는 2순위 부문으로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을 높게 평가한 데에 반해 소비자는 전체 부문 중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차이는 입어 협상에 참여하는 원양 기업과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경험과 관점의 격차에서 오는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원양업계는 입어 협정에 따라 입어국의 국민을 어선원으로 승선시키거나, 쿼터 확보를 위해 ODA, 문화 교류 사업, 문자 지원 사업 등 입어국의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한다. 이러한 실정을 알기 어려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원양 업계의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

원양 업계의 사회적 책임 실천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지표를 활용했다. 첫 번째는 Carroll(1979)이 제시한 규범적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소비자 설문에 활용되었던 것과 같은 평가 지표를 활용했다. 평가에는 7점 척도를 사용했다.

원양기업들은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한 실천 수준을 각 6.1점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이는 전체 평가 결과의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윤리적 책임은 이보다 늦은 5.3점으로 평가했으며, 자선적 책임은 전체 부문 중 가장 낮은 4.1점으로 평가했다.

〈표 5-18〉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양 업계 평가결과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전체
6.1	6.1	5.3	4.1	5.6

주: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는 7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함
자료: 저자 작성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에 비해 강제성이 있다. 기업은 비교적 강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가장 낮은 자선적 책임에 대해서는 실천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바와 업계가 자발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항목을 이용해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원양기업이 전반적으로 소비자

가 느끼고 있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실천을 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원양 업계는 지역사회개발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소비자가 평가한 것에 비해 약 0.7~0.9점가량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원양업계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에 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양기업은 기업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비자와 시장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단순한 실천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홍보활동 및 정보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19〉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및 원양 업계 평가결과 비교

구분	소비자	원양 업계
전체	4.8	**5.3**
지역사회개발	**5.0**	4.1
노동자 인권 보장	4.8	**5.6**
환경 보호	4.8	**5.7**
반부패	4.9	**5.6**
소비자 권리 보호	4.9	**5.6**

주: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는 7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함
자료: 저자 작성

2.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저해 요인

원양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저해 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저해 요인으로는 시장에서의 차별성 부족, 정보과 자금 부족, 산업 환경의 한계, 정책의 한계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기업에 있어 이윤 추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다. 기업

의 의사 결정은 이윤을 따라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설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 수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시장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원양산업의 상품은 통조림 가공 다랑어를 제외하고는 1차 산업으로 생산된 가공용 냉동 원물이며, 대부분은 수출된다. 즉, 우리나라 다랑어 원양 생산량은 약 40만 톤 수준이나 국내 소비는 10만 톤 이하이고 나머지 30만 톤은 해외 공장에서 가공되거나 가공용 원물로 수출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비자는 일반 공산품처럼 원양 수산물 간의 차별성을 크게 느끼기 힘들다.

MSC 인증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생산량 감소량에 비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충분한 가격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 원양 업계에서는 MSC 인증이 필요하나 매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어려운 비용 발생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생산량이 적은 소기업일수록 국제 인증 취득에 느끼는 어려움이 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매출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실천이 매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적었다. 한 예로 2014년 사조의 501 오룡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부실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적받은 바 있으나, 실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가 매출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실천 동기를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나 지속가능성이 시장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 개선은 민간 기업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책임 있는 소비(responsible consumption)'를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 실천을 시장에 통용되는 수단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양 업계는 국제 인증에 대한 정보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사는 포클랜드 공해상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대해 MSC 인증 취득을 시도했다. 그러나 포클랜드 공해 오징어 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원평가가 불가능해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포클랜드 정부에 자원조사 자료 공유를 요청해도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자원 조사를 시작한 수준이며, 정보 공유에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ODA 사업 및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입어한 해역의 자원조사를 진행한다면, 국내에 해외 자원 정보를 축적하고 향후 국제 인증 취득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MSC 이외에도 수출을 위한 위생증명을 취득하려 해도 국가별로 신청 방법과 양식, 필요서류 등이 상이하다. 이에 대해 국내 관계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소규모 업체에서는 정보 수집 및 인증 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산회에서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으로 국제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해 국제 인증 취득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지식창고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선원 복지와 노동에 관한 국제 규범이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현실과 차이가 있어 국제 규범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케이프타운 협정[89]에 가입할 경우, 어선 설계 변경, 작업 공간 축소 등으로 인해 시설투자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신조 시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조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WCPFC 관할해역 내 각 연안국은 입어 협정 시 자국민의 어선원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RFMO 해역 내 다수의 연안국에 입어할 경우, 숙련되지 못한 외국인 어선원을 국가별로 고용해야 하므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중서부태평양 선원학교를 설립하고 입어 협정 시 특정 국가 출신이 아닌 선원학교 수료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 정책 수립 시 타 산업과 원양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원양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생산-가공-유통 등 공급 가치사슬을 수직 계열화하거나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진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 실천이 기업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원물 생산 및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으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원양기업을 규모, 사업 범위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 Cape Town Agreement of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1993 Protocol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제4절 시사점

소비자와 원양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는 수산물 구매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고, 약 26.3%의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46.8%를 차지했다. 이러한 소비자의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92.3%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와 실천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특성 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와 지불의사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과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지불의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가 다른 특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시장 주도층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원양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이 조금 달랐다. 노동 관행과 인권 등 어선원의 안전 및 노동환경, 차별대우 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이 같았다. 반면, 소비자는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업계는 지배구조 및 공정 운영 등 청렴함과 투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와 원양업계가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업계가 평가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의 평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양업계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소비자 의도 간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반부패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 형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형성된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와 추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업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기업 신뢰도는 추천의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양기업은 사회적 책임 실천이 기업 이미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와 원양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양 업계에서는 시장에서의 차별성 부족, 정보과 자금 부족, 산업 환경의 한계, 정책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책임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시장에서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제 인증 취득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 책임 있는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나 산업 환경과 특성으로 인해 충실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업별 특성과 산업 특성을 파악하고 구분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6장

국내 원양산업 CSR 실천 강화 추진 방향

제1절 국내 원양산업 CSR 실천을 위한 SWOT 분석

SWOT 분석은 1971년 Ken Andrews에 의해 개발된 기업 전략 모델[90]로, 기업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그리고 내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기업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석 기법이다. SWOT 분석은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유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원양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국내 원양산업이 직면할 위협과 기회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 SWOT 분석 단위는 개별 원양선사가 아니라 원양산업으로 하였다.

90) 윤익중·이성규(2018), p. 136

1. 강점

원양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는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산업은 어선 어업과 관련해 원양산업협회와 소수 회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한 연대와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원양선사는 39개사이며, 이들 선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원양산업협회의 기능은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구심점 역할뿐만 아니라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원양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원양산업협회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의 필요성, 특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내용, 사회적 책임 활동에 따른 이익 등을 신속하게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둘째, 원양산업은 상대적으로 국제 규범 수용성이 높다.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수역의 입어 금지, 수출국가로부터의 수출 규제 등 원양선사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해제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원양업계는 국제 규범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실제 경험하였다.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고 있는 ISO 26000과 CPTPP 등이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이들 규범이 중장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국내 원양산업을 구성하는 선사가 사회적 책임을 일종의 규범으로 간주하고,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원양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법에서 원양산업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보고 등을 준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 원양산업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한 '환경', '노동', '인권', '지역개발' 분야에서 원양선사가 이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약점

첫째, 원양선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인식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다랑어 통조림 가공에 참여하는 일부 중견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사는 냉동 원물로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선사에게 사회적 책임 활동을 요구할 경우, 선사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원양선사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미흡하다. 〈그림 6-1〉과 같이 2018년 기준, 국내 원양선사 42개 중 중견기업 8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또는 어선 1척으로 조업하는 영세 선사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6-1〉 우리나라 원양기업체수(2013~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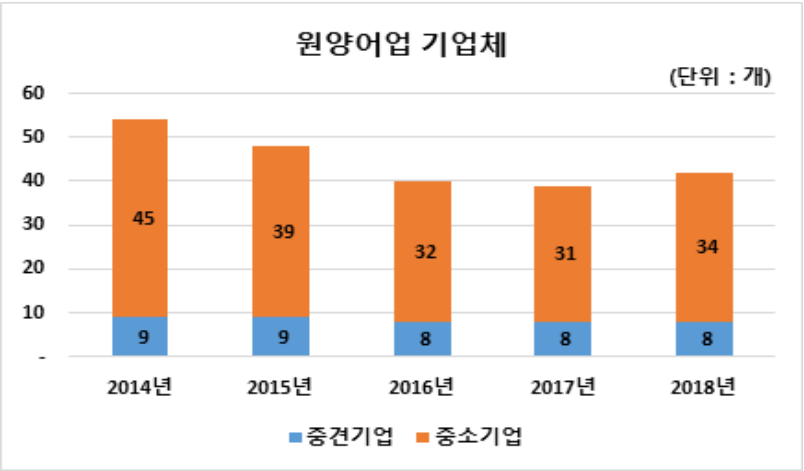

자료: 한국원양산업협회, 『2019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2018년 기준 원양어업 단독기업체』, 2019a, p. 12.

일례로 '환경'분야에서 원양선사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산자원을 생산하였음을 인정해주는 인증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당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제의 특징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단계별로 요구하는 서류 작업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데 중소 수준의 원양선사에서 해당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사 입장에서 핵심적 CSR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일례로 원양선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권'을 포함한 윤리적 CSR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구조 변경 또는 신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행 어선의 구조로는 어선원의 거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 문제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선 현대화 또는 신조가 필요한데, 중소 선사의 경우 초기 높은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내 원양어선 현대화 또는 신조 추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선의 선령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국내 원양어선 213척 중 선령 26년 이상 어선이 85%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원양채낚기어선과 봉수망 어선은 40년 이상 된 노후 어선으로 안전 및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표 6-2〉의 원양선사의 조직별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100%를 초과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표 6-1〉 원양어업 선령별 어선수(2017년 기준)

단위: 척, %

구분	합계(A)	6년 미만	6-10년 이하	11-15년 이하	16-20년 이하	21-25년 이하	26년 이상(B)	비중 (B/A)
소계	213	12	5	1	10	4	181	85
원양연승어업	123	1	-	-	9	3	110	89
원양트롤어업	17	-	-	-	-	-	17	100
원양선망어업	34	10	5	1	1	1	16	47
원양봉수망어업	8	1	-	-	-	-	7	88
원양채낚기어업	30	-	-	-	-	-	30	100
원양통발어업	1	-	-	-	-	-	1	100

자료: KOSIS(검색일: 2019. 10. 22.)

〈표 6-2〉 원양선사 조직규모별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

단위: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	부채비율	97.9	94.6	93.1	97.5	90.9
	차입금의존도	29.4	30.3	24.3	20.7	18.7
중견기업	부채비율	77.0	83.2	84.7	91.6	87.0
	차입금의존도	28.3	29.6	23.9	20.1	18.2
중소기업	부채비율	304.5	232.3	207.2	172.1	131.8
	차입금의존도	34.3	34.4	27.7	26.3	22.5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

즉, 선사가 적극적으로 신조에 투자함으로써 어선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의 윤리적 CSR을 실천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원양선사의 조업이 이뤄지는 공간적 범위가 공해 또는 연안국 EEZ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또는 협력의 주체가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연안국 정부이다. 선사의 윤리·법적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환경 CSR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안국 정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선사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3. 기회

국내 원양선사 해외 수산자원을 이용·생산한 수산물이 주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원양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실천은 향후 원양선사 및 국가에 다양한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원양 선사의 입장에서 CSR 활동은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원양선사의 CSR 활동을 통해 제품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다. 동일한 어족 자원을 생산하는 원양선사의 입장에서 가공 방식을 제외하면 제품 차별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방식의 생산, 어선원에 대한 공정 행위, 연안국에 대한 지역개발 등의 CSR 활동을 제품의 홍보·마케팅과 연계시킴으로써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다. 둘째, CRS 활동 실천으로 원양선사의 고가 프리미엄 전략이 가능하다. 제5장의 영국과 미국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수산 기업의 제품에 26.3%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매 시 이와 같은 추가 지불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기업의 CSR 행동에 대해서 추가 지불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즉,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가운데,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해당 제품의 고가 전략이 소비자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기업의 CSR 활동 인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개도국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EU의 주요 소매·유통업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MSC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수산물의 취급 비율을 높이고 있다. 타이유니온社와 같이 다랑어 원료를 공급받아 가공하는 주요 업체에서도 다랑어 취급 물량의 100%에 대해 MSC 인증 목표를 수립하고 2020년까지 MSC 인증 수산물의 비율을 75% 달성하기로 선언한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양선사의 CSR 활동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간 긍정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원양선사의 환경분야 CSR 활동은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연안국 현지의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IUU 어업-free에 근거한 어업 활동[91]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분야 CSR 활동은 어선원 인권을 보호하면서 생산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환경·윤리분야 CRS 활동을 실천한 원양선사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제5장의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기업이 지역사회 개발, 환경보호에 대한 CSR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구매 추천 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1) IUU-Free 활동이란 IUU 어업으로 통칭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상반된 개념으로 합법적 어업, 보고 어업, 규제 어업(legal, reported, regulated fishing)을 의미함

원양선사의 CSR 활동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매우 다양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공해 어족 자원 또는 연안국의 해외 수산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양선사의 활동은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연안국, NGO 등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으로 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IUU 어업 목록 등재 등 국가 차원의 불명예 및 수출 규제 등의 리스크를 안게 된다. 따라서 선사 차원에서 수행하는 CSR 활동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고,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4. 위협

CSR 미이행에 따른 위협은 크게 생산과 수출에서 나타날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윤리적 CSR의 미이행으로 인해 국내 원양선사의 입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내 원양어업 생산의 50%가 이뤄지는 남태평양 해역의 지역수산관리기구인 WCPFC는 2018년 12월 어선원 근로 기준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Labor standards for crew on fishing vessels)를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선상 옵서버의 복지 개선, 선원 복지와 옵서버 간 복지의 동등성, 남태평양 도서국 국민의 제3국 다랑어 조업선에 어선원으로써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결의문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향후 논의가 확대되어 구속력을 가지는 보존관리조치로 발전하거나 다른 보존관리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당 해역에 입어하는 국내 원양선사가 이행해야 하는 규범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투자 및 환경 챕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권고를 명문화하고 있어 향후 선사의 CSR 활동은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6-2〉 국내 원양산업 CSR 실천을 위한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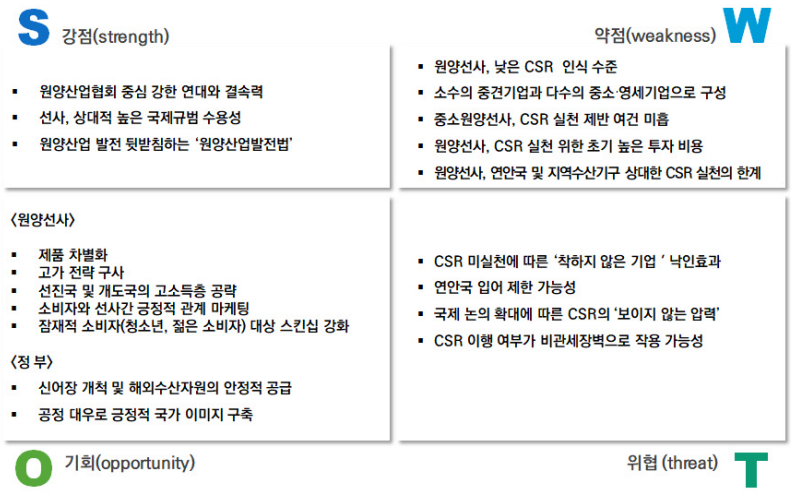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SWOT 분석을 활용한 전략 과제

1. SO 전략과 우선 추진과제

SO 전략은 강점과 시장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우선 추진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 선사별로 경영활동과 CSR 활동을 연계한 비전을 수립한다. CSR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식 전환 하에 선사별 핵심 경영 활동에 CSR 활동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각 선사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나 그 외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고, 확인된 활동들을 ISO 26000, UN 글로벌 콤팩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지역 개발'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기존에 실천하고 있는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CSR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CSR 활동을 기업의 내부 규정에 반영시키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원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가칭) 원양산업 CSR 사례 보고서' 발간을 통한 국내 원양산업의 CSR 활동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보고서는 CSR 활동을 실천한 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내 원양선사의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해당 보고서는 국영문으로 작성하여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수산관리기구, 국제 NGO에 배포하여 국내 원양선사의 good practice를 널리 홍보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선사별로 지난 5년동안 국내외에서 실천한 CSR 활동 내용을 수집하여 소개하고,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가칭) 존경받는 원양수산기업 상 수여식'을 기획한다. 해당 수여식은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분야별 존경받는 원양수산기업을 선정·시상한다.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전문 협의체를 구성한다.

셋째, CSR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양산업의 자조금[92]을 조성한다. 원양산업의 자조금 조성에 대해 2012년에 연구[93]된 바 있지만 실제 자조금 조성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양산업의 자조금 도입의 기본 방향으로 "정부의 공적이익과 원양업계의 사적이익이 모두 증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94]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에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양산업발전법」에 CSR 실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원양산업자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원양산업발전법에 적시하기 위해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원양산업자의 사회적 책임 노력 조항을 추가 신설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2. ST 전략과 RISK 해결과제

ST 전략은 외부 환경의 위협 요소를 회피하면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하는 일종의 Risk 해결 과제이다. 동 전략에서 확인된 위협

92) 자조금이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 · 운용하는 자금"을 의미함. 법에서 정해진 자조금의 용도는 소비촉진,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음

93) 해양수산부(2012), p. ??

94) 위의 책, p. 71

요인은 입어 제한과 수출 제한 또는 수출 시 비관세 장벽의 노출 가능성이다. 이러한 위협 요인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관할 해역의 입어를 회피하거나 수출 시장 다각화를 통한 수출 제한 또는 비관세 장벽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특정 목표 어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정 해역 입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입어 지역을 다각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 해역을 살펴보면, 다랑어는 생산량의 60%가 WCPFC 관할 해역 및 나우루협정(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PNA) 8개국에서 생산된다.[95] 이빨고기는 남빙양 CCAMLR 관할 해역과 포클랜드 공해에서 주로 생산되고 명태는 북서부 태평양의 러시아 EEZ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들 어종 생산을 위해서는 해당 해역 입어가 전제되기 때문에 선사에 요구되는 CSR 관련 규범들을 수용하고, 이러한 내용을 기업의 CSR 활동으로 실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CSR 실천과 연계한 입어 제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CSR 실천 해역을 선정한다. 우선 CSR 실천 해역은 WCPFC, CCAMLR, 포클랜드 해역으로 한다. 국내 다랑어 선망 27척과 다랑어 연승 100척이 입어하는 WCPFC는 어선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 선상 근로 조건 개선, 기국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결의(Resolution) 사항으로 채택하였고,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상 근로 조건은 어선 개조 및 신조를 통해 개선하고 어선원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노사협

95) 나우루 협정은 세계최대 규모의 다랑어포켓공해의 조업을 관리하고 회원국 간의 어업관리제도 협력을 위해 설립됨. 1982년 나우루협정(Nauru Agreement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of Common Interest) 체결을 통해, 현재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등 8개 주요 다랑어자원 보유국이 가입됨(자료: 부산일보(검색일: 2019. 11. 12.)

의 사항을 따르되, 보합제를 지양하고 기본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안전 항해를 위해 어선원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탄력적 휴식시간제로 변형하는 안에 대한 추가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오징어가 주로 생산되는 포클랜드 정부는 '16-'18년 입어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설비 규정을 강화하였다. 노후 어선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채낚기 어선의 포클랜드 수역 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선 건·개조를 통한 어선의 안전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 CCAMLR 해역에서는 IUU 어업 근절 및 해양수산보존조치를 이행한다.

둘째, 선진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CSR을 명문화하고 있는 CPTPP 회원국의 수산물 수입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PTPP 회원국 중에서도 주요 선진국이자 수산업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수입 수산물에 대한 CSR 사항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대상국은 일본, 캐나다, 칠레이다. 현재 국내 원양연승어업으로 생산한 다랑어가 일본에 수출되어 횟감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다랑어 수입 정책 및 CSR 요구 사항에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WO 전략과 우선 보완과제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해서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네 가지의 우선 보완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양 선사의 의사결정자와 실무자 CSR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확대한다. 교육은 전문기관의 교육 실시와 CSR을 우선 수행한 선사의 정보 공유, 두 가지 트랙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목적은 CSR 활동이 기업 활동

의 필수 요소이자,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작용[96]"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계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교육 대상은 의사 결정이 가능한 임원급 이상으로 한다. 현재 ISO 26000의 국내 간사 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여러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선사에서는 ISO 26000에 기초하여 각 선사의 경영활동과 연계된 핵심 CSR 활동을 규명하고, 이러한 CSR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부 지침 마련을 유도한다.

또한 선사 실무자의 CSR 활동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착오 과정을 줄이기 위해 '원양산업 CSR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CSR 활동을 우선 수행한 선사가 유사 활동을 계획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외 수산기업의 best practice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무 과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둘째, CSR 실천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전략적 홍보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출 수산물 품질 관리의 일환으로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97]. 이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과 관련된 MSC 등이 포함되며,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 비용,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98].

국제인증 취득은 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간주되어 원양선사들의 관심이 높지만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원양선사 및 원양산업협회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의 타깃(target) 범위를 원양선사의 수출 관계

96) KATS 기술보고서(2011), p. 12
97)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검색일: 2019. 11. 12.)
98) 한국수산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 11. 12.)

자뿐만 아니라 국제인증 관계자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CSR 실효성 증진을 위해 선사 간 전략적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공동 대응 분야는 환경과 지역개발 분야를 우선 고려한다. 환경 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에 포함된 국내 다랑어 생산업체들이 글로벌 식품업체 또는 소매·유통업체로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다랑어의 공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국제인증제인 만큼, 공급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증을 준비함으로써 비용과 인력의 중복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MSC 인증 취득의 경우, 최대 2년의 평가 기간과 척당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선사 간 공동 부담하고, 인증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원양산업협회 산하 공동대응 TF팀(안)을 구성하며, 팀은 '남태평양 다랑어 연승어업 국제인증', '남태평양 다랑어 선망어업 국제인증', '인도양 다랑어 선망어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넷째, 민관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원양산업의 CSR 활동을 촉진한다. 원양선사의 생산 활동이 제3국 EEZ 또는 공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CSR 활동의 이해관계자가 연안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 NGO 단체 등이다. 이로 인해 선사 또는 협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양선사를 주축으로 하되,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이 원양선사의 CSR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선사는 실제 연안국과 입어 협상 및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기구의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선사에 요구되는 CSR 활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선사는 CSR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한다. 선사의 CSR 실천 계획을 공유 받은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은 선사가 자체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제3국 EEZ의 수산자원평가, 연안국의 지역개발, 공동연구 분야에 한해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6-3〉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SWOT 분석에 따른 추진과제

외적 요소 / 내적 요소	기 회					위 협		
	제품 차별화	고가 전략	시장 개척	선사-소비자 긍정적 관계 마케팅	책임 있는 조업국 위상제고	'착하지 않은 기업' 낙인 효과	입어 제한 가능성	선진국 및 CPTPP 시장의 비관세 장벽
강점	원양산업 중심 강한 연대와 결속	[우선 추진과제] ❖ 원양선사, CSR 활동을 경영활동과 연계한 자발적 노력 ❖ 'CSR 우수사례 연례보고서(안)' 마련 통한 투명성 강화 ❖ CSR 실천 위한 '원양 자조금' 조성 ❖ 원양산업발전법에서 CSR 실천 기업의 지원 근거 마련				[RISK 해결 과제] ❖ 원양선사의 우선 CSR 실천 해역 선정 - WCPFC, CCAMLR, 포클랜드 ❖ CPTPP 회원국 수출 대상국의 CSR 요구사항 파악		
	국제규범 수용성 상대적 높음							
	원양산업 뒷받침하는「원양산업발전법」							
약점	선사, 낮은 CSR 인식 수준	[우선 보완 과제] ❖ CSR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 중견기업-중소기업간 CSR knowledge sharing 확대 ❖ CSR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전략적 홍보 확대 ❖ CSR 실효성 증진 위한 선사간 전략적 공동 대응 ❖ CSR 활동 촉진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장기 보완 과제] ❖ 대국민 소통 통한 중소기업 CSR 활동에 대한 관심 유도 ❖ 중소 선사의 경쟁력 강화 통한 CSR 역량 증대		
	CSR 실천 제반 여건 부족							
	CSR 실천 위한 높은 비용							
	원양선사 자체 CSR 실천의 한계							

자료: 저자 작성

제 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기업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그러나 이윤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환경 문제로 인해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0년 국제적으로 ISO 26000이 발간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수산 기업에 예외일 수 없다. 생산 원료 확보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원양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원양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는 크게 7장으로 구성

하였다. 제1장에서는 원양선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상호 작용의 과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통합적 이론과 Packer et al.(2019) 연구 결과는 국내 원양선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제2장은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추론하였다. ISO 26000과 UN 글로벌 콤팩트,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양산업 CSR 활동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인권', '환경', '노동', '지속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국내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 원양 다랑어의 공급가치사슬을 확인하고 제2장에서 도출된 사회적 책임이 실제 요구되고 있거나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전망하였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다랑어만 취급·판매하는 해외 다랑어 벤더 또는 소매유통업체가 늘어나면서 다랑어를 생산하는 국내 원양 선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는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후 어선원의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례로 태국은 어선원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ILO의 어선원 노동협약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입하였는데, 태국을 중심으로 한 다랑어 글로벌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글로벌공급사슬에 참여하고 있어 태국 업체가 국내 선사에 동등한 수준에서 생산된 다랑어 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외 어선안전, 연안국의 지역 개발에 관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추론되었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CSR 활용 사례를 통해 국내 원양선사

의 향후 CSR 활동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SR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공헌, 환경,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자발적 CSR 활동보다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맞춤화하고, 이를 기업의 CSR 활동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례로 2015년 IUU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태국의 글로벌수산식품기업인 타이유니온社는 지정 해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지속가능성 전략 'SeaChange'를 발표하며 사회적 책임 노력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타이유니온은 다운존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 100대 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국내 수산기업의 경우 '해양관리를 위한 수산물 비즈니스(SeaBOS)' 이니셔티브 구성,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자체 조직 신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NGO와 적극적 협력 강화는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해외 수산물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구매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외 소비자는 수산기업의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우선 분야로 '환경', '노동관행', '공정', '지역개발' 분야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긍정적으로 형성된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는 구매 의도 및 추천 의도에 대한 일부 사회적 책임 활동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 원양산업 CSR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하고, 4대 전략 4대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SO 전략, ST 전

략, WO 전략, WT 전략에 따른 '우선 추진과제', 'Risk 해결과제', '우선 보완과제', '장기 보완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추진과제'는 (1) 선사의 자발적 CSR 활동 실천 강화, (2)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고(예: CSR 우수사례 연례보고), (3) 원양산업발전법의 지원 근거 마련을 제시하였다. Risk 해결과제는 CSR 활동과 연계한 입어 제한 또는 수입 제한 가능성을 대응한 Risk를 해결하기 위해 (1) 원양산업의 우선 CSR 실천 필요 지역으로 WCPFC, CCAMLR, 포클랜드 해역을 선정하고, (2) 선진국 및 CPTPP 시장의 수산물 수출 규범과 CSR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선 CSR 활동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로 네 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1) CSR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2) CSR 관련 정부 수출지원사업의 전략적 홍보 확대, (3) 실효성 증진을 위한 선사 간 공동 CSR 활동의 전략적 추진, (4) CSR 활동 촉진 위한 민관연 협력 체계 구축이다.

이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7장은 요약 및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원양산업은 수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는 어업이다. 대양 또는 연안국의 공유 어족자원을 이용하고, 다수의 외국 어선원이 노동에 참여하는 원양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향후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양 수산물이 주로 소비되는 선진국 및 글로벌 수산식품기업은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또는 원료 공급업체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양선사는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규범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재 기업의 CSR 활동을 확인하고 ISO 26000 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CSR 활동과 비교·검토 후 기업의 CSR 활동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CSR 이행을 홍보 사업, 일회성 사회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이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교우위' 또는 '기업의 新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때 국내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양산업이 타 산업과 대별되는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발적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에는 일정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원양업체의 자발적·주도적 CSR 활동 실천

1) 필요성

기업은 사회와 자연 환경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대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공급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 모든 조직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고, 국제 규범으로 확산될 개연성도 있다.

원양산업에 소속되어 있는 원양선사들도 이러한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경영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2) 추진 내용

첫째, 국내 원양선사의 CSR 활동을 담은 '(가칭) 원양산업 CSR 사례 보고서' 작성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우선 원양기업체의 CSR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활동 내용을 분류한다. 사례 보고서는 원양선사별로 이뤄지고 있는 CSR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로 선사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내 원양선사의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또한 후술할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후 제출해야 하는 이행보고서나 참여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원양산업협회의 'UN 글로벌 콤팩트' 등록을 추진한다.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의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등 4개 영역의 핵심가치에 대한 규범화 목적으로 발족된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다. 전 세계적으로 162개국 10,00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245개 기관과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2007년에 가입하였다.

UN 글로벌 콤팩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99], 가입 절차는 매우 단순하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Commitment Letter를 포함한 가입 서류를 글로벌 콤팩트에 송부하고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99)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의 '참여방법'(접속일자: 2019. 10. 1.)

기간이 약 1-2주 정도 소요된다. 가입 승인 후에는 기업의 전략 실천 시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들을 이행해야 한다.

가입 후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UN 글로벌 콤팩트 원칙에 대해 지지 선언과 보고서 발간이다. 연간보고서 등의 발간물에 UN 글로벌 콤팩트와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원양산업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원양산업통계연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가입 후 원양산업협회는 사무국에 이행보고서나 참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보고서는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공개하는 보고서이다. 보고서 제출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1) UN 글로벌 콤팩트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선언, (2) UN 글로벌 콤팩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이 실질적인 활동 (3) 결과의 측정이다. 결과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수를 표시하며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참여보고서는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2년마다 공개하는 보고서이다.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3) 기대효과

원양선사의 CSR 사례 보고서 및 협회 차원의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은 국내 원양선사들이 의도적으로 경영 전략에 CSR 활동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CSR 사례 보고서 발간을 통한 선사 간 정보 공유 및 원양산업의 CSR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및 이행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선사가 국제사회의 CSR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법·제도 정비 방안

1) 원양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 필요성

「원양산업발전법」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양어업의 허가·육성,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2항의 '중대한 위반사항'과 제5장의 '벌칙 조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어업의 공정관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지원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공해 및 해외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원양선사는 국제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최근에는 자발적 규범인 사회적 책임 활동이 국제 규범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고, 사회적 책임 활동 여부가 입어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 원양선사가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적 활동을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원양 중소기업이 대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2) 제·개정(안)

원양산업자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원양산업발전법」에 적시하기 위해 제1조(목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안)을 제안하였다.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 관리 및 개발 · 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또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회사의 종사자(외국 어선원 포함), 거래처, 지역사회, 연안국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의 노력 조항을 신설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는 원양산업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원 사항을 추가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표 7-1〉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신설(안)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 관리 및 개발 · 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 관리 및 개발 · 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① 원양산업자는 회사의 종사자(외국 어선원 포함), 거래처, 지역사회, 연안국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양산업자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발췌, 개정 및 신설(안)저자 작성

(3) 참고 입법례

최근에는 기업 규모별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산부가 소관하는 있는 주요 법으로는 1999년에 제정된 「산업발전법」과 2014년에 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있다. 특히 「산업발전법」은 2006년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을 지속가능한 경영"[100]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101].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994년에 마련하고, 동법 제62조의8 제1항에 따라 2016년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련되는 기본계획에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사회적 책임경영의 활성화,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지원,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100)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

101) 심진예(2007) p. 290, "지속가능경영이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출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개념으로 발전함. 현재 CSR과 '지속가능경영'은 광의적 개념으로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

〈표 7-2〉 타법의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 책임 지원 근거

	목 적	제 정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
중소기업 기본법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	1966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1994	제62조의7(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원)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의8(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1999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 기준 및 지표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발췌, 저자 재작성

(4) 기대효과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을 통해 원양산업에 요구되는 CSR 이행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이행해야 하는 CSR을 구체화한다. 또한 CSR을 이행하는 원양선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실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CSR 추진 원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1) 필요성

높은 국제규범 준수 의무와 한정된 자원을 가진 원양 기업이 자발적으로 CSR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CSR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선사에 CSR 이행 동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2) 추진 내용

직접적 인센티브는 '(가칭) CSR 우수 원양산업자'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의 지원 사업 신청 시 혜택을 부여한다. '(가칭) CSR 우수 원양산업자'의 선정 기준은 CSR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인권', '노동', '지역 개발', '공정' 등 5대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을 선정한다.

지정 기준(안)으로는 "각 분야별 최저 기준을 정하고 기준 이상의 초과 성과들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업규모별(중기업·소기업) 구분한다"[102]. 이렇게 선정된 'CSR 우수 원양산업자'에게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지원 사업 신청 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크게 '원양어선안

102) 중소기업청(2016), p. 23

전관리(50억)', '원양어업 경영자금(14.8억)'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이 있고, 그 외 수출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단, 기업의 지정 기준, 부여 혜택,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간접적 인센티브는 우수 CSR 실천 선사에 '(가칭) 존경받는 원양수산기업상'을 수여한다. 수상 분야(안)은 '지속가능성', '인권', '노동', '지역 개발', '공정'이며, 매년 연말 시상식에서 선정 기업에 상을 전달한다.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전문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성(안)은 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장, 관련 연구기관, NGO, 학계 교수로 구성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6.

_____,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 ISO 26000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1.

고용노동부, 「ILO 주요 협약」, 2012.

권혁철,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이해, 『LG폴리머저널』, 2014.

김해룡·김나민·유광희·이문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척도 개발」, 『마케팅연구』, 제20권 제2호, 2005.

남영숙,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별 동향 연구」, 외교부, 2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

대한민국 국회,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자료집, 2019.

박종철·김경진·이한준, 「한국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저널』, 제12권 제2호, 2010.

변혜원·조영현,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013.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의 ISO 26000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2013.

서지연·이형주, 「커피전문점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신회,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경영연구』, 제13권 제3호, 2011.

소원근·김하균,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일반기업과 수산기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016.

심진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최근 동향과 대응현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7.

안소영·한진수, 「호텔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호텔이미지와 고객만족도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83호), 2014.

오삼교· 이남섭· 최윤국·홍욱헌,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외교통상부, 『성공적 해외진출과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CSR 사례집』, 2011.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관계발전의 요인분석(2012~2017): SWOT 분석을 적용하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5호, 2018.

이수동·류선호, 「외식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미지를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5호(통권 81호), 2013.

이지현·이주현, 「패션기업의 CSR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윤리적 소비주의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2013.

이한준·박종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제품 및 기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신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제24권 제1호, 2009.

중소기업청,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2016.

최지호·이성근·문연희, 「CSR 활동이 소비자의 기업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 범주와 사회적 이슈 모형 비교」, 『상업교육연구』, 제17권, 2007.

한국원양산업협회, 『2019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2018년 기준 원양어업 단독기업체』, 2019a.

_____, '2019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보도자료(2019년 9월 27일), 2019b.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MI 동향분석』, 제150호, 2019.

해양수산부, 「원양산업의 자조금 조성 방안 연구」, 2012.

_____, 「선원분야 법률 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8.

_____, '해수부, 원양 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로 배정' 보도자료 (2019년 4월 29일자), 2019.

허인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18.

홍순복·강경수·이정실·허범영, 「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27권 제3호, 2012.

KATS 기술보고서, 「ISO 26000 제정 및 동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11.

KOTRA,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CSR 실태 및 성공사례』, 2010. 12.

PEW, 「케이프타운 협정 설명」, 2018.

〈국외 문헌〉

Carroll, Archie B.,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1979.

Certification & Ratings Collaboration, *Framework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Seafood Sector*, 2018. 3.

Chaudhuri, Arjun & Morris B. Holbrook, "The Chain of Effects from Brand Trust and Band Affect to Brand Performance: The Role of Brand Loyalty," *Journal of Marketing*, 65(2), 2001.

FishWis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Global Seafood Industry – Background and Resources*, 2016. 12.

Garriga, E, and Mele, 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ories: Mapping the Territory". *Journal of Business Ethics*, 53, 2004, pp. 51-71.

Homer, Pamela M.,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Some Additional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7(1), 1990.

ISO, *ISO 26000:201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2010a.

_____, *Discovering ISO 26000*, 2010b.

_____, *Social responsibility - Schematic overview of ISO 26000*, 2017.

ISSF, *Status of the World Fisheries for Tuna*, 2019.

Kittinger, John N., et al, "Committing to socially responsible seafood," *Science*, 356(6341), 2017. 6.

Lecomte, Marie., Julien Rochette, Renaud Lapeyre, & Yann Laurans, "Sustainable Management of Tuna Fisheries: A Synthesis Report," *IDDRI*, 2017.

Nøstvold, Bjørg Helen, Svorken, Marianne, Ødegård, Anne Mette, Andersen, Rolf Kristian, Young, James A., "Social Sustainability in Norwegian Fisheries," *Nofima*, 2019.

Overbeek, G., Bette Harms & Sander Van den Burg, "Biodiversity and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genda,"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6(9), 2013. 8.

Packer, H., Wilf Swartz, Yoshitaka Ota, & Megan Baile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actices of the Largest Seafood Suppliers in the Wild Capture Fisheries Sector: From Vision to Action," *Sustainability*, 2019, 11(8), 2254, 2019. 4.

UN Global Compact, *Annual Review of Business Policies & Actions to Advance Sustainablility*, 2012.

WCPFC, *WCPFC Tuna Fisheries Yearbook 2017*, 2018.

White, Tiffany Barnett., "Consumer Trust and Advice Acceptance: The Moderating Roles of Benevolence, Expertise, and Negative Emo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5(2), 2005.

World Bank, *Tuna Fisheries*, 2016.

〈인터넷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65년간 노사분규 한번도 없었던 비결」,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6458 (검색일: 2019. 7. 15.)

동원산업 홈페이지, https://www.dwml.co.kr/contents/sustainable/environmental/288(검색일: 2019. 10. 22.)

_____, https://www.dwml.co.kr/contents/sustainable/protection (검색일: 2019. 10. 22.)

부산일보, '지구촌 해양 정책 세력 19/ 나우루협정당사국(PNA)',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702000209 (검색일: 2019. 11. 12.)

웅진코웨이 홈페이지, 사회공헌, http://www.coway.co.kr/Company/Management/Contribution (검색일: 2019. 10. 2.)

정책위키, ILO 핵심협약,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검색일: 2019. 7. 21.)

키스톤 다이얼로그 홈페이지, http://keystonedialogues.earth/ (검색일: 2019. 10. 22.)

한국수산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9년 국제인증 취득지원 대상업체」 선정 알림, http://www.korfish.or.kr/notice/?mod=document&pageid=1&keyword=%EA%B5%AD%EC%A0%9C%EC%9D%B8%EC%A6%9D&uid=972(검색일: 2019. 11. 12.)

한국표준정보망, www.kssn.net (검색일: 2019. 7. 18.)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https://www.ksa.or.kr/ksa_kr/875/subview.do(검색일: 2019. 7. 18.)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672&contentKey=174(검색일: 2019. 11. 12.)

Fair Trade Certified 홈페이지, https://www.fairtradecertified.org/ (검색일: 2019. 7. 22.)

FAO 홈페이지, World Global Tuna Fisheries, http://firms.fao.org/firms/fishery/459/en(검색일: 2019. 7. 22.)

FAO fishstat J, FAO Glob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 (2013~2017)(검색일: 2019.5.30.)

FIS 홈페이지,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1428&ndb=1 (검색일: 2019. 2. 15.)

Friends of the Sea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friendofthesea org/ (검색일: 2019. 7. 22.)

Friends of the Sea 홈페이지, https://friendofthesea.org/conservation-projects-and-awareness/save-the-dolphin-safe/ (검색일: 2019. 7. 22.)

ILO 홈페이지,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1300:0::NO:11300:P11300_INSTRUMENT_ID:312333 (검색일: 2019. 7. 21.)

_____,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071324/lang—en/index.htm(검색일: 2019. 7. 23.)

International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2017, https://cr.aldisouthgroup.com/sites/default/files/2018-07/ALDI%20SOUTH%20Group%20CR%20Report%202017_0.pdf(검색일: 2019. 7. 5.)

Ipsos MORI 홈페이지,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ethical-companies (검색일: 2019. 6. 22.)

ISSF 홈페이지, ISSF 회원 자격요건 목록, https://iss-foundation.org/what-we-do/verifiation/conservation-measures-commitments/ (검색일: 2019. 7. 5.)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tblId=DT_MLTM_5002642 (검색일: 2019. 10. 22.)

MSC 홈페이지, https://www.msc.org/kr/about-the-msc/what-is-the-msc (검색일: 2019. 7. 22.)

_____, https://www.msc.org/kr/for-business/use-the-blue-msc-label/guidelines (검색일: 2019. 7. 22.)

_____, https://www.msc.org/media-centre/press-releases/first-south-korean-fishery-achieves-msc-certification (검색일: 2019. 10. 25.)

OPAGAC 홈페이지, http://opagac.org/en/(검색일: 2019. 7. 19.)

PNATUNA 홈페이지, https://www.pnatuna.com/content/pna-ffa-support-minimum-standards-crew-fishing-vessels (검색일: 2019. 7. 23.)

Questionnaire about CSR in IKEA company, https://www.survio.com/survey/d/D1V3B3C6B4T3H9V5U(검색일: 2019. 7. 5.)

Sea change Sustainability 홈페이지, https://SeaChangesustainability.org (검색일: 2019. 7. 18.)

_____, https://SeaChangesustainability.org/about-SeaChange/(검색일: 2019. 7. 17.)

_____, https://SeaChangesustainability.org/fishing-for-the-future/(검색일: 2019. 7. 19.)

_____, https://SeaChangesustainability.org/ignite/(검색일: 2019. 7. 16.)

Thai Union's Fishery Improvement Project 2020 Roadmap 홈페이지, http://upmedio.wpengine.com/wp-content/uploads/Thai-Union-FIPs-Roadmap_English-13.12.16.pdf(검색일: 2019. 7. 18.)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4/sep/10/consumer-behaviour-sustainability-business(검색일: 2019. 7. 3.)

UN Global Compact 홈페이지,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participants(검색일: 2019. 7. 28.)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http://unglobalcompact.kr/membership/participation/(검색일: 2019. 7. 18.; 2019. 10. 1.)

_____, http://unglobalcompact.kr/about-us/10point/(검색일: 2019. 7. 18.)

_____, http://unglobalcompact.kr/about-us/sdgs/(검색일: 2019. 7. 18.)

_____, http://unglobalcompact.kr/about-us/intro/(검색일: 2019. 6. 22.)

UN지원SDGs협회, http://asdun.org/?page_id=2512(검색일: 2019. 10. 29.)

UN SDGs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검색일: 2019. 10. 29.)

Walmart Policies and Guidelines, https://corporate.walmart.com/policies(검색일: 2019. 7. 5.)

WCPFC 홈페이지, https://www.wcpfc.int/node/32051(검색일: 2019. 7. 23.)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6/david-attenborough-s-worried-about-this-ocean-threat-and-it-s-not-plastic/

(검색일: 2019. 6. 13.)

〈관련자료 목록〉

김계수, 『SmartPLS 이용 쉬운 구조방정식 모델』, 청람, 2013.

남수태·김도관·전찬용, 「동일 데이터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툴 간의 비교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2권 제7호, 2018.

대전광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 조례, 제2조(정의)

신건권,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2018.

우종필·김준호, 「경영학 분야에서 다중집단분석의 흐름에 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35권 제4호, 2017.

Rex B. Kline 저,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공역, 『구조방정식 모형 원리와 적용』, 학지사, 2010.

〈설문조사〉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도 조사(조사일시: 2019. 7. 5.)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조사일시: 2019. 10. 22.)

Consumer Awareness Surve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Overseas Fisheries Companies(조사일시: 2019. 6. 8.~6. 12.)

부록

부록 1.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설문지

Hello,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is a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specializes i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es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fisheries, shipping and ports industries and i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overnment in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and advancing the national economy.

As consumers are growing more interested in the business ethics around the worl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such, KMI is seeking ways to provide policy support to strengthen CSR of Korean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that export tuna and other marine products to Europe, the U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Respondents are kindly requested to give us frank responses and ideas regarding your view on fisheries companies and CSR. Your responses and the analysis result thereof will be used to form the foundation of Korea's policies to enhance CSR activities of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Responses will be processed in a statistical way and the study result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than the study itself. In addition, pursuant to Article 33 of Korea's Statistics Act, confidentiality is strictly observed. We seek your kind cooperation.

Thank you.

June, 2019
Korea Maritime Institute

PART SQ. Demographic Information

SQ1.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③ Prefer not to say

④ Prefer to self-describe _____

SQ2. In which year were you born? (_____year)

SQ3. In which city do you currently live?

① LA ② San Francisco ③ New York ④ Boston ⑤ etc. ( )

① London ② Manchester ③ Birmingham ④ etc. ( )

SQ4. Have you bought any marine product including tuna cans and frozen white fish meat fillet over the last 30 days? (Including consuming at restaurants)

① Yes ② No

SQ5. How much do you involved in selecting products when buying marine products?

① Usually I make the decision. ② I consult with others.

③ Usually others make the decision.

PART 1. Awarenes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Q1. What is level of your knowledge regard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① I don't know what it is

② I have heard the name but I don't know exactly what it is

③ I have basic understanding about this concept

④ I am familiar with CSR topic

⑤ I am well versed in CSR concept

〈Explan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fers to activities ensuing from their accountability for the society including charity, contribu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job creation and tax payment via transparent and ethical management. This is not confined to socially contributing activities but encompasses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governance and labor practices improvement, human rights protection, fair operating practices, consumer prot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ti-corruption, and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Q2. How much attention do you pay to CSR policy of a seafood company as a customer?

① It is not important for me.

② It is not really important for me but when I have a choice, I prefer companies that are responsible.

③ I try to choose companies which I recognize as being responsible, from e.g. social campaigns, advertisement.

④ It is really important for me and I pay attention on company's CSR policy.

Q3. If other factors are same, do you tend to buy marine products of a company that is more socially responsible?

① Yes ② No

Q4. Have you ever refused to buy a marine product from a company that has been negatively viewed in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① Yes ② No

Q5. Do you have any intention to pay additional price for a product of a fisheries company that faithfully fulfills its social responsibility?

① Yes ② No

Q6. (Q5의 ①번 응답자만) If an ordinary product costs $10.00, how much additional price would you like to pay?

($) (최소 10.00달러)

Q7. Please choose all the activities from below that you did over the last 12 months regarding CSR activities.

Question	Yes	No
(1) I have made a monetary donation.	①	②
(2) I have engaged in voluntary works.	①	②
(3) I have invested in socially responsible companies. (including subscribing to a fund)	①	②
(4) I have purchased products sold by a charity organization.	①	②
(5) I have searched information on CSR activities.	①	②
(6) I have participated in boycotts due to unethical behavior of a company.	①	②
(7) I have chosen a product due to ethical reputation of a company.	①	②
(8) I have donated blood.	①	②

Q8. Please select up to 3 core subjects that you think are most important among the 7 core subjects of CSR (in the order of importance).

1st ( ) 2nd ( ) 3rd ( ) (3순위까지 순서대로 답변)

① Organizational governance
② Human rights
③ Labor practices
④ Environment
⑤ Fair operating practices
⑥ Consumer issues
⑦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Q9. Please select 3 core subjects that you think are most important for fisheries companies among the 7 core subjects of CSR (in the order of importance).

1st ( ) 2nd ( ) 3rd ( ) (3순위까지 순서대로 답변)

① Organizational governance
② Human rights
③ Labor practices
④ Environment
⑤ Fair operating practices
⑥ Consumer issues
⑦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PART 2-1. Evaluations about CSR, Corporation, and Consumer Behavior

〈Direction〉
The following are evaluation items for specific companies, 'StarKist' and 'Chicken of the Sea'.
Please read the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to the items.
First, it will be asked to you about StarKist, Company A. After completing all questions, it will be asked to you about Chicken of the Sea with same question.
Please think about the company in order, and complete the following questions.
Company A: StarKist, Company B: Chicken of the Sea

Q10.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your thoughts about Company A(StarKist).

※ Your answers do not necessarily have to match the actual activities of Company A(StarKist) ; rather your answers can follow the opinions and impressions you have about the company. If you don't know much about the company, your answer can be based upon CSR activities that you expect the company to conduct.

No	Questions	Disagree 〈———〉 Agree						
(1)	It supports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ea where its HQ or plant is located or where it operat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t provides support to the economically -challenged residents of the area where its HQ or plant is located or where it operat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It creates jobs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ea where its HQ or plant is located or where it operat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It provides support to establish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of the area where its HQ or plant is located or where it operat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It does not discriminate a certain race or a gender on working condition, promotion or sala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t does not engage in child labor or forced lab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Questions	Disagree 〈——〉 Agree						
(7)	It prepares training programs and safety gears for the safety of seafarers working on boar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It promotes a bette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 for seafarer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It takes preventive measures for environmental issu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It uses marine resources in a sustainable wa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It promotes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green technolog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It opposes any form of corruption including illegal operation, extortion and bribe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It participates in politics in a responsible wa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It promotes social responsibility of other companies related to it in the course of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a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It protects health and safety of consumer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It develops products that consumers nee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It protects information and privacy of consumer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It provides consumer training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1.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your thoughts about Company A(StarKist)

No	Questions	Disagree 〈——〉 Agree						
(1)	It supplies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t contributes to the socie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It responds to the needs of consumer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It is under good managem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It has a good environment to work.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 trust this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I rely on this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It is an honest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This company is sa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2.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your thoughts about Company A(StarKist)

No	Questions	Disagree 〈———〉 Agree						
(1)	I will buy marine products from this company ag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 will continue to buy products from this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I will buy products of this company onl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I will pay more for the products of this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I will recommend this company to my family and friend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 will recommend this company to those who seek advi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2-2. Evaluations about CSR, Corporation, and Consumer Behavior

Q13.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your thoughts about Company B(Chicken of the Sea) .

※ Your answers do not necessarily have to match the actual activities of Company B(Chicken of the Sea) ; rather your answers can follow the opinions and impressions you have about the company. If you don't know much about the company, your answer can be based upon CSR activities that you expect the company to conduct.

No	Questions	Disagree 〈——〉 Agree						
(1)	It supports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ea where its HQ or plant is located or where it operat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t provides support to the economically -challenged residents of the area where its HQ or plant is located or where it operat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It creates jobs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ea where its HQ or plant is located or where it operat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It provides support to establish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of the area where its HQ or plant is located or where it operat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It does not discriminate a certain race or a gender on working condition, promotion or sala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t does not engage in child labor or forced lab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It prepares training programs and safety gears for the safety of seafarers working on boar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It promotes a bette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 for seafarer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It takes preventive measures for environmental issu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It uses marine resources in a sustainable wa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o	Questions	Disagree 〈——〉 Agree						
(11)	It promotes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green technolog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It opposes any form of corruption including illegal operation, extortion and bribe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It participates in politics in a responsible wa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It promotes social responsibility of other companies related to it in the course of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a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It protects health and safety of consumer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It develops products that consumers nee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It protects information and privacy of consumer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It provides consumer training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4.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your thoughts about Company B(Chicken of the Sea)

No	Questions	Disagree 〈——〉 Agree						
(1)	It supplies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t contributes to the societ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It responds to the needs of consumer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It is under good managem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It has a good environment to work.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 trust this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I rely on this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It is an honest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This company is sa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5.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your thoughts about Company B(Chicken of the Sea)

No	Questions	Disagree 〈——〉 Agree						
(1)	I will buy marine products from this company agai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 will continue to buy products from this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I will buy products of this company onl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I will pay more for the products of this compan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I will recommend this company to my family and friend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 will recommend this company to those who seek advi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DQ. Demographic Information 2

♠ The following are general questions about yourself.

DQ1. What is your ethnic background?

① Anglo-Saxon
② African-American
③ Hispanic or Latino
④ Native American or American Indian
⑤ Asian / Pacific Islander
⑥ Others( )
⑦ Prefer not to say

DQ2. What is your final education background?

①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② High school graduate, diploma or the equivalent (e.g. GED)
③ College degree
④ Bachelor's degree (e.g. BA, BS)
⑤ Master's degree (e.g. MA, MS, MEd)
⑥ Doctorate degree (e.g. PhD, EdD)
⑦ Other ( )

DQ3. What is your occupation?(Please select one)

① Employed full time (40 or more hours per week)
② Employed part time (up to 39 hours per week)
③ Unemployed and currently looking for work
④ Unemployed and not currently looking for work
⑤ Self-employed
⑥ Student
⑦ Homemaker
⑧ Retired
⑨ Unable to work
⑩ Others ( )

DQ4. What is your annual household income?

① Less than $20,000
② More than $20,000 ~ Less than $35,000
③ More than $35,000 ~ Less than $50,000
④ More than $50,000 ~ Less than $75,000
⑤ More than $75,000 ~ Less than $100,000
⑥ More than $100,000

- Thank you -

부록 2.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 부문의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다랑어 등을 유럽, 미국 등 선진 소비시장에 수출하는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기업의 경영목표와 정책을 감안하시어 CSR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과 분석 결과는 원양 수산 기업의 CSR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고,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파트 1. 기업 일반 현황

1. 귀사의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　　)명

2. 귀사의 2018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원

3. 귀사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　　)원

4. 귀사의 기업형태는 무엇입니까?
   (1) 상장 주식회사 (2) 비상장 주식회사 (3) 기타

5. 귀사의 주요 대상 어종은 무엇입니까?
   (1) 다랑어 (2) 이빨고기 (3) 오징어 (4) 명태 (5) 기타 (　　)

6. 귀하의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경영진(이사 이상) (2) 관리직(부장 이상) (3) 일반사무직(부장 미만)

7. 귀사의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어획 (2) 가공 (3) 수입 (4) 수입재가공 (5) 국내유통 (6) 해외 수출
   (7) 운반업 (8) 기타 (　　)

파트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도

1. 귀하께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전혀 알지 못한다.
   (2)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3)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익숙하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통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자선, 기부, 환경보호,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기업이 사회에 지는 책임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및 노동관행 개선, 인권 보호,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반부패, 공동체 참여 및 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2. 귀하께서는 기업 운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관련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1, 2 응답자는 2-1 문항으로, 3~5 응답자는 2-2 문항으로)

2-1. 귀하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의무가 없다.
   (2)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없다.
   (3)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5) 소비자와 사업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6) 기타 ( )

2-2. 귀하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2) 법을 준수해야 한다.
(3)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
(4)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 소비자와 사업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한다.
(6) 기타 ( )

3. 귀하께서 수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1) 지배구조 (2) 인권 (3) 노동관행 (4) 환경
(5) 공정거래 (6) 소비자 이슈 (7) 공동체 참여 및 개발

4. 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하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모르겠다
(1~2,6 응답자는 4-1 문항으로, 3~5 응답자는 4-2문항으로)

4-1. 귀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예산 부족 (2) 인력 부족 (3) 전문성 부족 (4) 실천 의지 부족
(5) 필요성 부족 (6) 이해 부족 (7) 기타 ( )

4-2. 귀사에서 이행 중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주로 어떤 부문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1) 지배구조 (2) 인권 (3) 노동관행 (4) 환경
(5) 공정거래 (6) 소비자 이슈 (7) 공동체 참여 및 개발

5. 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참고 자료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해외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예)

○ (Thai Union) 환경단체(그린피스, WWF 등)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업 운영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을 실시

-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 20개 파트너사와의 협업으로 지속 가능성 전략 'SeaChange*' 수립 및 발표

* 4대 전략: 안전하고 합법적인 노동, 책임 있는 운영, 책임 있는 자원이용, 사람과 지역사회 기여

〈SeaChange 4대 전략〉

출처: SeaChange 홈페이지(https://SeaChangesustainability.org/)

- 유럽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공로로 '지속 가능한 공급체인 지도자 상' 수상

* SeaChange의 다랑어 실천공약(Tuna Commitment)에 따라 유럽에 공급되는 다랑어를 100% MSC 인증 및 FIP 실천 어업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인을 개혁

* MSC 인증 및 FIP 실천 어업 수산물 비중: ('14) 5% → ('18) MSC 28%, FIP 90%

○ (OPAGAC*) 지속 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위해 UNGC 가입 및 사회적 책임 실천의지 강력 표명

* OPAGAC(Organización de Productores Asociados de Grandes Atuneros Congeladores): 스페인 대형냉동다랑어생산자협회

- '16년부터 UN SDGs 달성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선상 노예 및 아동노동 착취 방지 노력
-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다랑어 어업(APR)*' 표준 마련 및 어업개선프로젝트(FIP)를 통한 자원 관리 실시

* ILO, IMO, EFSA, 스페인 정부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APR 표준을 마련해 노동환경, 어업활동, 해상활동, 식품위생 등 관리

- '19년 UN Global Compact(UNGC)에 가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

UN Global Compact

○ (UN Global Compact) 2000년 발족한 UN 산하 전문기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국내 110여 개 포함, 전세계 170개국 1만3천여 기업 및 단체가 가입)
- 기업 활동에 있어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의 준수와 관련 연차 보고서 제출 권장

○ (연간 회원사 평가 보고서) 매년 UN Global Compact 가입 회원사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와 사업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한 보고서

〈UN Global Compact 회원사 평가 항목〉

구분	No	내용
인권	1	전반적인 기업 규정에 인권과 관련된 항목이 있다.
	2	인권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 있다.
	3	작업 환경에서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한다.
	4	종업원을 성별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5	종업원의 삶과 자유, 안전을 지킨다.
	6	종업원의 건강을 보장한다.
	7	생산과정에서 아동 노동이 없다.
	8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9	생산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없다.
	10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종업원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한다.
노동	1	종업원을 성별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다.
	3	종업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4	생산과정에서 아동 노동이 없다.
	5	생산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없다.
환경	1	자원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용한다.
	2	환경 보호에 대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다.
	3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한다.
	4	환경 보호를 위한 자발적 헌장 및 규칙이 있다.
	5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세 가지 영역(기업 이익, 사회적 책임, 환경 지속성)의 실천 및 평가 기준이 있다.
반 부패	1	전반적인 기업 규정에 반부패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
	2	규정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반부패와 관련된 특별 규정이 있다.
	4	타 기업 및 기관에 선물을 제공함에 있어 금액의 제한이 있다.
	5	독립적인 윤리감독 부서를 운영한다.
	6	기업이익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7	선물이나 금전 제공과 관련된 지출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표준 및 규정이 있다.
	9	정치 기부금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진다.

- UN Global Compact의 4대 분야별 측정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
- 실천 정도뿐만 아니라 관련 내부 정책(규정, 기준 등)의 보유 여부도 평가 대상 (국제 기준 준용, 자체 기준 개발 등)

파트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정도

아래 항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입니다. 항목별로 귀사의 실천 정도를 솔직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번	내용	낮음 〈						〉 높음
경제적 책임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전하고 안전한 자금운용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비용을 엄격히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법률적 책임	1	임직원은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 내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계약상의 의무를 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업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윤리적 책임	1	포괄적인 윤리행동강령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잘 정의된 윤리적 규범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독립적인 윤리감독 부서를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회 및 소비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선적 책임	1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단순히 이익창출을 넘어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연번	내용	낮음 〈						〉 높음
지역 사회 개발	1	기업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하거나 조업을 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문화·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기업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하거나 조업을 하는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기업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하거나 조업을 하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업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하거나 조업을 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마련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노동자 인권 보장	1	인종 및 성별에 따라 근무조건, 승진, 임금에 차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선상에서 작업하는 어선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나은 생활환경과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경 보호	1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반부패	1	불법어업,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책임감 있는 정치적 참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연관된 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비자 권리 보호	1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소비자의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파트 4. 기타 의견

1.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위 질문 이외에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귀하의 기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소비자 CSR 인식도 분석모형 설계 관련 선행연구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변혜원·조영현(2013)는 국내 소비자의 CSR 인식 관련 설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아는지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상품을 더 구매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상품을 일부러 구매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확인했다. 또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혹은 윤리적 행위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입소스 모리(ipsos MORI)의 연구결과[103]를 인용하여 8개 보기[104]를 구성했다. 8개 보기에 대한 중복 응답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평소 윤리적 행동 수준을 측정했다.

허인숙(2018)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ISO 26000의 분류기준을 인용하여 활동 유형을 구분해 각 유형별 실천 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종사자의 인식도 확인을 위해 ISO 26000의 7개 유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물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유형

김해룡 외(2005)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신뢰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으로 나누었다. 추상적 개념은 Carroll(1979)이 제시한 규범

103) Ipsos MORI 홈페이지(검색일: 2019. 6. 22.)

104) (1) 금전적 기부를 했다 (2) 자원봉사를 했다. (3) 사회적 책임을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펀드 가입 포함) (4) 자선단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했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았다. (6)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불매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7) 회사의 윤리적 명성에 의해 상품을 선택한 적 있다. (8) 헌혈한 적이 있다.

적 사회적 책임을 인용하였다. 추상적 개념 이외에 소비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척도에 포함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부, 환경보호, 지역·문화 사업활동, 소비자 보호 네 가지 활동을 구체적 개념으로 포함했다.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에 대한 103개 평가항목 풀을 구성하여 1차 타당성 조사를 통해 34개 항목을 선별했다. 이후 34개 항목에 대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탐험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5개 부문, 16개 항목을 도출했다. 측정항목을 재검증하기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 신뢰와 소비자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룡·김나민·유광희·이문규(2005)의 연구는 지역·문화사업 활동 및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회적인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추구해야할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질 수 있다.

〈부록 3-1〉 소비자 관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척도

부문	평가 항목
사회 공헌활동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행할 것이다.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단순히 이익창출을 넘어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활동에 할애할 것이다.
지역·문화 사업활동	지역공공시설 건립 및 지원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장학사업 등 교육학술활동을 할 것이다.
	사회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을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임직원들이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 내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고객관련 정보를 고객사전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의 불평이나 환불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환경 보호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을 것이다.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적 책임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비용을 검격히 관리할 것이다.
	건전하고 안전한 자금 운용을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을 계획할 것이다.

자료: 김해룡·김나만·유광희이문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척도 개발」, 『마케팅연구』, 제20권 제2호,2005, p. 86

최지호·이성근·문연희(2007)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 범주와 사회적 이슈로 개념을 구분했다. 사회적 책임 범주는 Carroll(1979)이 분류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성했다. 사회적 이슈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종업원 지원, 지역 사회 개발, 평등 기회, 환경 보호로 구성했다. 각 구성 개념에 대한 측정 항목을 통해 사회적 책임 범주와 사회적 이슈가 각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책임 범주 모형에서는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이 동일시에 영향을 주어 기업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 모형에서는 종업원 지원과 평등기회, 환경보호가 동일시에 영향을 주어 기업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사회적 책임 범주와 사회적 이슈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품/서비스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과, 종업원 지원은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 보호는 윤리적, 자선적 책임과, 지역사회 개발과 평등기회는 자선적 책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록 3-2〉 사회적 책임 범주와 사회적 이슈의 측정 항목

부문		평가 항목
사회적 책임 범주	경제적 책임	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업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일관성 있는 수익을 얻고 있다.
	법적 책임	이 기업은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일관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공정 거래 질서와 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킨다.
		이 기업은 종업원의 고용과 보상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이 기업은 법적 의무를 지키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최소한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 서비스를 생산한다.
	윤리적 책임	이 기업은 사회적 기대와 윤리적 규범에 일관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사회에 의해 정해진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
		이 기업은 기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윤리적 규범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 기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종업원을 위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법적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자선적 책임	이 기업은 사회의 자선적 기대에 일관된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 내 예술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업의 종업원과 관리자는 지역 사회의 자선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기업은 사적, 공적 교육 재단과 같은 비영리 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문		평가 항목
사회적 이슈	제품/서비스	이 기업은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보다 향상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종업원 지원	이 기업은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종업원과 이익을 분배하고 있다.
		이 기업은 종업원을 위한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해고된 종업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기업은 종업원 참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은 원만한 노사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 사회 개발	이 기업은 지역 사회의 예술 활동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 사회의 보건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 사회의 발전 및 향상을 목적으로 관대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평등 기회	이 기업은 여성에 대해 평등한 고용,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고용,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평등한 고용,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보호	이 기업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환경 재생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쓰레기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 최지호·이성근·문연희, 「CSR활동이 소비자의 기업평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 범주와 사회적 이슈 모형 비교」, 『상업교육연구』, 제17권, 2007, p. 479

박종철·김경진·이한준(2010)는 Carroll(1979)이 제시한 네 가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집단 면접을 통해 28개 측정 항목을 도출했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4개 요인, 17개 항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척도를 기준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진행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모델 적합도는 모두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경로분석에서는 법률적 책임을 제외한 분야의 활동이 기업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책임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부록 3-3〉 한국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척도

부문	평가 항목
경제적 책임	○○기업은 제품의 품질(혹은 서비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은 고객의 불평에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같다.
	○○기업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법률적 책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은 직원들의 복지추구와 고용관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기업은 다른 하청업체들과 명시된 계약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 기업의 조작관리자들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기업은 소비자보호법(예; 손해배상, 거래해약 등)을 잘 따르는 것 같다.
윤리적 책임	○○기업은 전반적인 윤리강령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은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기업은 투명경영(예; 부패, 비리척결 등)을 하는 것 같다.
	○○기업은 다른 사업파트너(예; 납품업자, 하청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 같다.
자선적 책임	○○기업은 지역사회 및 여러 학교들과의 협력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은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은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것 같다.
	○○기업은 자사의 자원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 같다.

자료: 박종철·김경진·이한준, 「한국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저널』, 제12권 제2호,2010, p. 35

3) 기업평가 및 소비자 행동

홍순복 외(2012)는 서비스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

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총체적 인상"으로 정의했으며,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에 공헌한다,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한다, 경영이 잘 되고 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의 5개 항목을 이용해 7점 척도로 측정했다. 구매 의도는 "구매하고 싶다", "구매할 의향이 있다",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로 물었다.

이한준·박종철(200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제품 및 기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모형 설계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했다. 신뢰는 White(2005)의 연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기술력, 역량, 능력 같은 '전문성에 기초한 신뢰(expert-based trust)'와 자기중심적 이익동기가 아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인 '호의에 기초한 신뢰(benevolence-based trust)'"로 구분했다.

Chaudhuri and Holbrook(2001)은 브랜드 신뢰와 브랜드 감정이 브랜드 충성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들은 신뢰를 "명시되어 있는 브랜드의 기능에 대해 믿으려 하는 평균적인 소비자의 의지"로 정의했다. 또한 "신뢰는 소비자가 특별히 취약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7점 척도로 "나는 이 브랜드를 신뢰한다(trust)", "나는 이 브랜드를 믿을 수 있다(rely on)", "이 브랜드는 정직하다(honest)", "이 브랜드는 안심할 수 있다(safe)"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브랜드 충성도는 구매 충성도(purchase loyalty)와 태도 충성도(attitudinal loyalty)로 구분했다. 구매 충성도는 "다음에 해당 제품군을 구매할 때 이 브랜드를 구매할 것이다"와 "이 브랜드를 지

속해서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했다. 태도 충성도는 "이 브랜드에 전념한다(I'm committed to this brand)"와 "나는 이 브랜드에 다른 브랜드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의 두 가지 문항을 활용했다.

Homer(1990)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를 9점 척도를 통해 확인했다. 브랜드 태도는 해당 브랜드를 좋아한다(like)와 좋아하지 않는다(dislike), 호의적이다(favorable)와 호의적이지 않다(unfavorable), 좋다(good)와 나쁘다(bad)로 구분했다. 구매의도는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것 같다(likely)와 구입하지 않을 것 같다(unlikely), 아마 거의 구입할 것이다(probable)와 아마 거의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not probable)로 질의했다.

소원근·김하균(2016)은 수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일반기업과 수산기업의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고객충성도를 재구매 의도와 추천 의도로 구분했다. 재구매 의도는 '제품 구매 후 계속해서 구매할 것 같다', '좋은 제품이라고 느낀다', '제품 사용 후 재구매 할 것이다'의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했다. 추천 의도는 '이 제품을 선호한다', '이 제품에 만족한다', '상품 구매를 결정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 제품을 추천할 것이다'를 활용했다.

서지연·이형주(2011)는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신뢰,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Machleit & Wilson과 김기진, 이보순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 친구, 친지에게 추천할 것이다"와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두 가지 문항을 도출했다.

부록 4. KMI-노르웨이 NOFIMA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결과

□ 회의개요

- ㅇ (회의명)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한-노르웨이 전문가 세미나
- ㅇ (목적)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
- ㅇ (일시) '19. 8. 6.(화) 14:00 ~ 17:30
- ㅇ (장소)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마이애미룸
- ㅇ (참석자) KMI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진, 노르웨이 Nofima Bjørg Helen Nøstvold 연구원, 노르웨이 대사관 Elin Sagbråten 참사관, WWF 박두현 차장 등 15명
- ㅇ (논의내용) 원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노르웨이 연구 결과 논의, 정책 및 사례 공유

□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인사말씀 및 회의개요 소개	정명화 실장
14:10~14:40	노르웨이 수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노르웨이 Nofima Bjørg Helen Nøstvold 연구원
14:40~15:10	우리나라의 원양산업 동향 및 CSR 연구 개요	정명화 실장
15:10~15:40	원양기업의 CSR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윤미경 연구원
15:40~16:00	휴 식	
16:00~17:30	종합 토론	

□ 주제 발표 1 - 노르웨이 수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Nofima

Nofima

Documenting Social Sustainability in the Norwegian Wild Catch fish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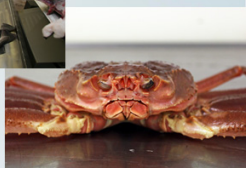

By: Bjørg Nøstvold
E-mail: bjorg.nostvold@nofima.no
Phone: +47 776 29041

Facts about Nofima

PROJECTS	CUSTOMERS FROM	EMPLOYEES	TURNOVER
606	32	390	623
in which Nofima is engaged in	different countries	60% women and 40% men **168 have a PhD.**	Million NOK in 2017

3

Nofima is owned by

The Norwegian government,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Fisheries.

[PROS 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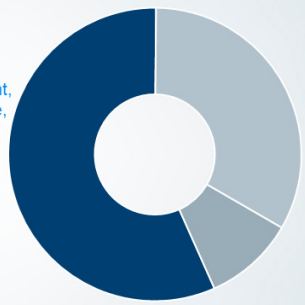

[KATEGORIN AVN]
[PROS ENT]

[KATEGORIN AVN]
[PROS ENT]

4

Sources of income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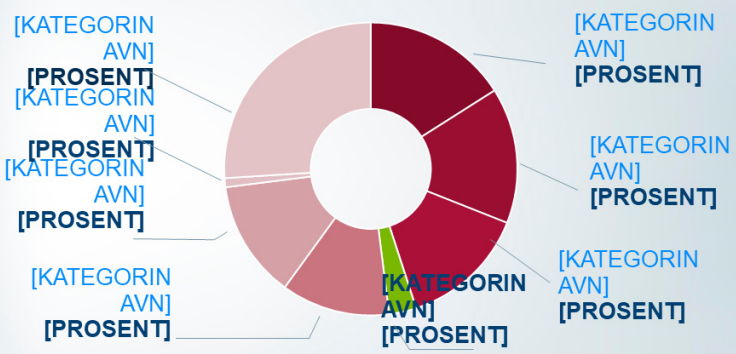

5

Off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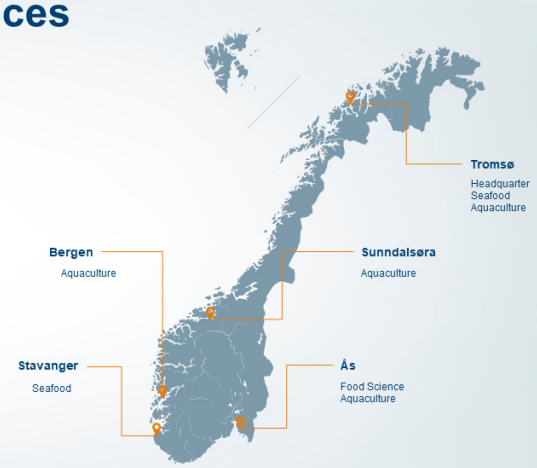

6

Organization

7

The project

- Financed by The Norwegian Seafood research fund
- On initiativ of Fiskebåt og Norges Fiskarlag (Vessels owners- and fishermen organisations)
- Reserach institutions:
  Nofima – Bjørg Nøstvold og Pirjo Honkanen
  FaFo – Anne Mette Ødegård
  University of Stirling – James A. Young
- Finished by May 2019

8

Nof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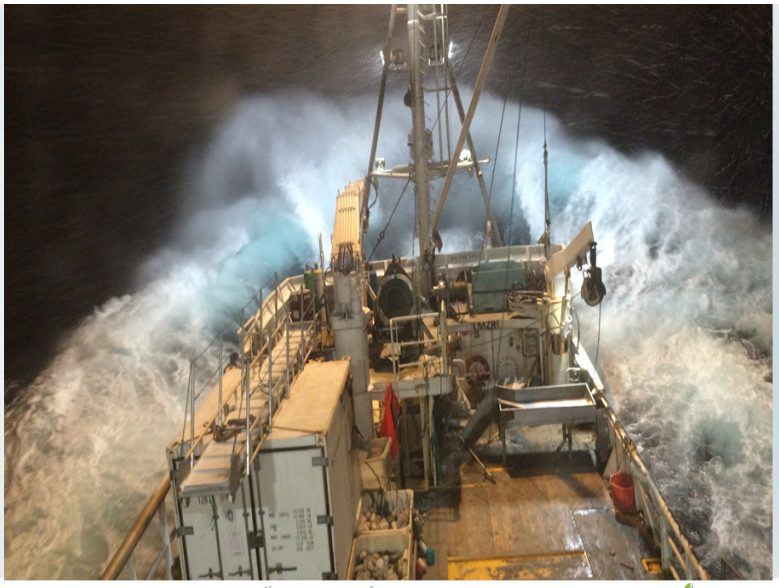

15 9

Nofima

How

1. Evaluate the status of social sustainability
2. Document how Norwegian authorities control, act and react when laws are infindged
3. Conduct a risk evaluation
4. Identify most improtant indicators for scial sustainability and validate these with Norwegian labour unions, fleet, industry and customers
5. Provide a document describing Norwegian social sustaianbility including enforcement and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

10

Nofima

ILO 188 implemented in Nov. 2018

12

Nofima

ILO 188 implemented in Nov. 2018

12

Nofima

Background:

1. History
2. The Nordic Model
3. Stock management

13

Nofima

1. History

- Råfiskloven
- Sales organisations
- Fees – securing pention, minimum wage, sick and injury insurance

14

Nofima

2. The Nordic Model

15

Nofima

Fleksibility and security

Photo: Nofima

18

Nofima

3. Sustainable stock management

- Predictability
- Total quota
- Individual quota
- Closed access

17

Nof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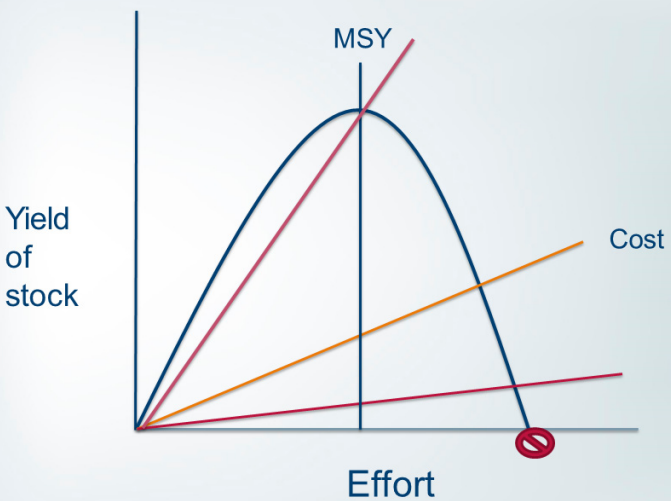

18

Nof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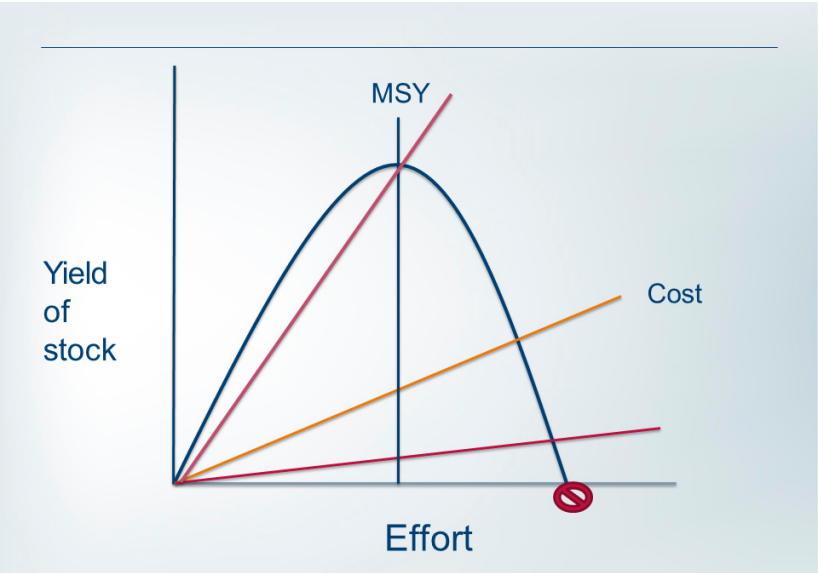
MSY
Yield
of
stock
Cost
Effort
18
Nofima

Photo: The Norwegian Coast Guard

What is social sustainability?

- Safety
- Security

Nofima

Changes have taken time

Nofima

Changes have taken time

Nofima

Changes have taken time

International Food Marketing Research Symposium 15.06.2017 22

Nofima

4. Status is improving

Nofima

Nofim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www.nofima.no

□ 주제 발표 2 - 우리나라의 원양산업 동향 및 CSR 연구 개요

KMI-NOFIMA 전문가 세미나 1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과 발전방향

정 명 화 국제수산연구실장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Part 1.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01 국내 원양어업 현황

» 원양어업 생산량(액) : 49만 톤(1조 1,613억 원), 국내 어업총생산의 13% 차지(2018년 기준)

- 생산량 : 491,823톤 (최근 5년간 연평균 2.2% ↓)
- 생산액 : 11,613억 원 (최근 5년간 연평균 3.8% ↓)

원양어업 생산량 추이 (단위: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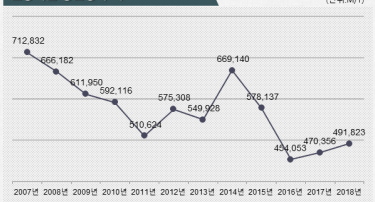

원양어업 생산 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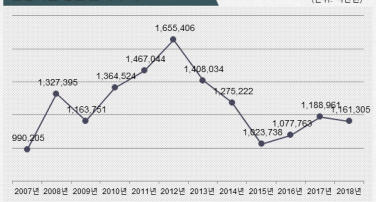

주: 2018년 생산량 및 생산 금액 추정치임 (미집계된 12월 생산량 및 생산 금액은 최근 3년간(2015~2017)등기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수산종합포털(https://portal.fips.go.kr)

01 국내 원양어업 현황

» (어장) 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등의 해외어장으로 조업범위 확대

- 14년 기준, 태평양 8개소, 대서양 12개소 등 23개국 주요 항구에 24개 해외생산기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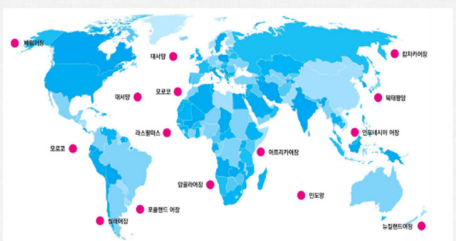

01 국내 원양어업 현황

5

» 대중 소비 어종 : 오징어 〉 새우 〉 멸치 〉 명태〉 고등어 〉 다랑어

» 다랑어, 명태, 꽁치 등 어종, 원양산이 95% 이상 차지

수산물 수급 안정화 및 단백질원 공급에 기여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 현황(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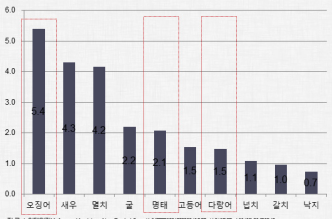

자료 1: 어업생산통계(www.mof.go.kr/statPortal/cmm/selectStatNewsReadyPage.do?menuSeq=678&bbsSeq=1&bbsId=1000&bbsDtSeq=20170122)
자료 2: 식품수급표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주요 어종의 원양어업 생산량 비중(201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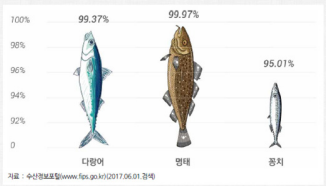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2017.06.01.검색)

01 국내 원양어업 현황

6

» 원양어업 수출량(액) : 22만 톤(4,897억 원), 수산물 총수출액의 20.6% 차지(2018년 기준)

- 수출량 : 224,573톤, 수산물 총수출의 37.4% 차지(최근 5년간 연평균 4.3%↓)
- 수출액 : 489,735백만원, 수산물 총수출액의 20.6% 차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9% ↓)

주요 품종별 수출량 추이 (단위: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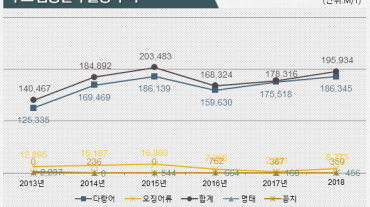

주요 품종별 수출 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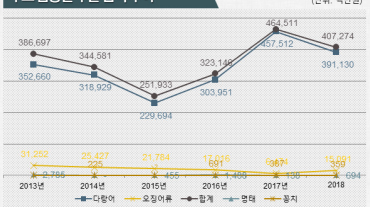

주: 2018년 수출량 및 수출금액은 추정치임(2018년 수출량 및 수출금액은 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지로 산출함 / 다랑어류는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남부다랑어, 참다랑어, 황다랑어 등 모든 다랑어류를 포함
자료: 해양수산통계시스템(https://www.mof.go.kr/statPortal/),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net/infor)

01 국내 원양어업 현황

7

꽁치 〉〉 다랑어류 〉 남극크릴 〉명태 생산량 증가, 오징어 생산량 감소

- 꽁　　치 : '18년　23,750톤, 전년대비 54.7% 증가
- 명　　태 : '18년 24,320톤, 전년대비　3.5% 증가
- 다랑어류 : '18년 333,782톤, 전년대비　4.5% 증가
- 오징어 : '18년 35,898톤, 전년대비 22.2% 감소
- 남극크릴 : '18년　36,007 톤, 전년대비　4.3% 증가
- 새치류 : '18년　3,397톤, 전년대비 13.1% 감소

주요 품종별 생산량

(단위: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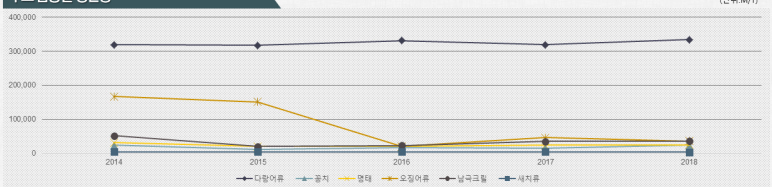

주: 2018년 생산량 및 생산 금액 추정치임(미 집계된 12월 생산량은 최근 3년간(2015~2017) 동기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 다랑어류는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남부다랑어, 참다랑어, 황다랑어 등 모든 다랑어류를 포함
자료: 수산종합포털(https://portal.fips.go.kr)

01 국내 원양어업 현황

8

원양어업 기업체 수 : 39개사(2017) '16년 대비 1개사(3%) 감소

- 중견기업 : '17년 8개사, 최근 5년간 평균 8개사 유지
- 중소기업 : '13년 60개사 → '17년 31개사로 감소, 최근 5년간 연평균 15% 감소

어선 척수 : 213척(2017)

- 참치연승 111척(53%), 오징어채낚기 30척(14%), 참치선망 29척(14%), 원양트롤 13척(6%), 원양봉수망 12척(6%), 저연승 12척(6%)

원양어업 기업체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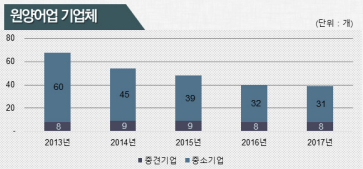

원양어선 척수

(단위 :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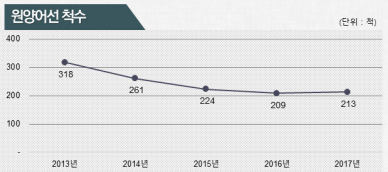

자료 : 해외수산협력센터, '2018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주: 기업체수는 조사대상기준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보유 기업체 현황임

01 국내 원양어업 현황

8

» 원양어업 기업체 수 : 39개사(2017) '16년 대비 1개사(3%) 감소
- 중견기업 : '17년 8개사, 최근 5년간 평균 8개사 유지
- 중소기업 : '13년 60개사 → '17년 31개사로 감소, 최근 5년간 연평균 15% 감소

» 어선 척수 : 213척(2017)
- 참치연승 111척(53%), 오징어채낚기 30척(14%), 참치선망 29척(14%), 원양트롤 13척(6%), 원양봉수망 12척(6%), 저연승 12척(6%)

원양어업 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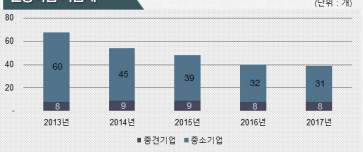

원양어선 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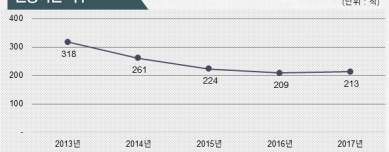

자료 : 해외수산협력센터, '2018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주 :기업체수는 조사대상기준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보유 기업체 현황임

Part 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0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1

원양어선 노후화

- 선령 40년 초과 초고령 어선 3개 업종/24척 → 연안국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으로 입어 제한 가능성 높음
  - 초고령 선박 업종 : 트롤(북양 2, 해외 9) 11척, 채낚기 7척, 봉수망 6척
  - 포클랜드 정부, 안전설비 규정 강화('16-'18 입어정책)

- 원양어선 대부분이 60~80년대 건조된 노후 어선 → 안전사고 우려, 선원의 승선기피, 낮은 생산성 문제 등 내재
  - '14.12월 오룡호(선령 36년) 침몰 /'18.7월 금양호(선령 28년) 침몰 등

0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2

원양어업 발전방향

- ISO 26000
- UN 글로벌 콤팩트
- ILO 어선원 노동협약
- IMO 케이프 타운 협정

□ 주제 발표 3 - 원양기업의 CSR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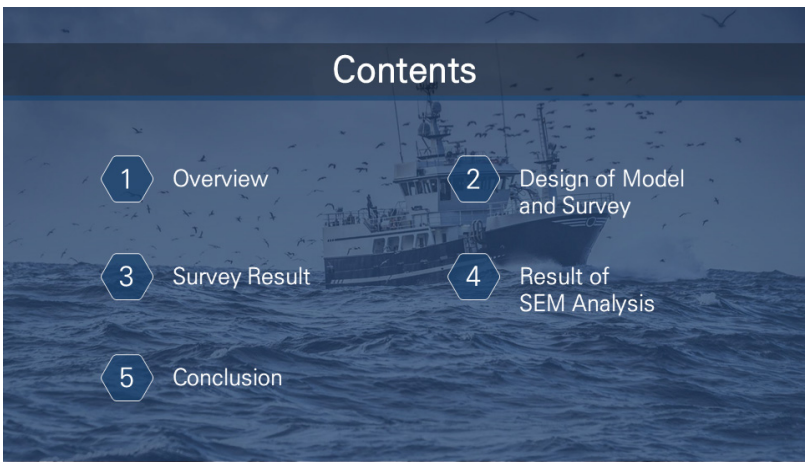

1 Overview

Background

- Diffusion of international norm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fisheries
- Global fisheries enterprises' voluntary participation on CSR
- Increase of consumer needs on CSR

Purpose

- Identify consumer awareness on social responsibility in major market, especially US and UK
- Comparative analysis of consumers and corporates on CSR awareness
-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 for CSR of overseas fisheries corporates

2 Design of Model and Survey

Definition

- Social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for the impacts of its decisions and activities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rough transparent and ethical behaviour that
  -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health and the welfare of society;
  - takes into account the expectations of stakeholders;
  - is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and
  - is integrated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practised in its relationships

*ISO 26000

2 Design of Model and Survey

〈Seminar on CSR in Fisheries〉

Classific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Basic Theory

- Economical Responsibility
- Legal Responsibility
- Ethical Responsibility
-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Carroll (1979)

ISO 26000

- Organizational Governance
- Human Rights
- Labor Practices
- Environment
- Fair Operating Practices
- Consumer Issues
-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UN Global compact

- Human Rights
- Labour
- Environment
- Anti-Corruption

in This Study

Community Involvement, Labor & Human Rights, Environment, Anti-Corruption, Consumer Issue

6

2 Design of Model and Survey

〈Seminar on CSR in Fisherie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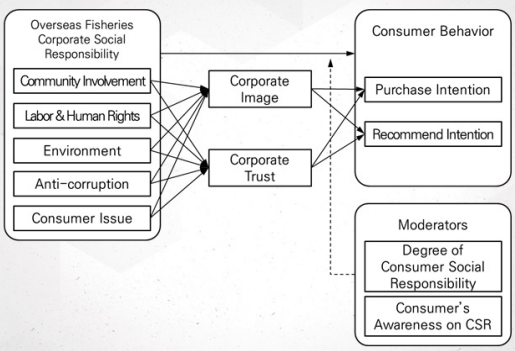

7

2 Design of Model and Survey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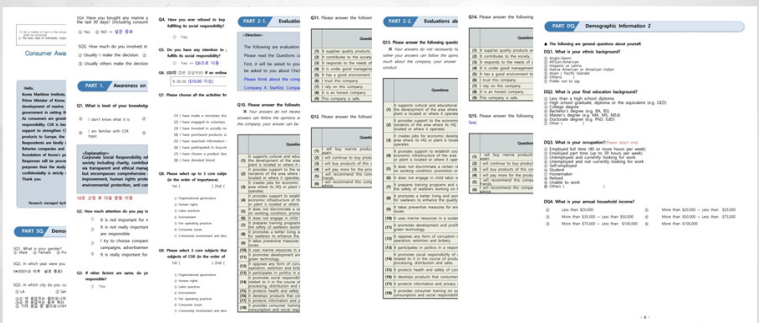

8

3 Survey Result– Demographic Information

Demographic Information

- Total 600 samples(US 300, UK 300)
- Sample: People who bought any marine product including tuna cans and frozen white fish meat fillet over the last 30 days, and involved in selecting products when buying marine products
- Sex: Male 41.7%, Female 58.3%
- Diploma: Many people are with a high-school diploma or bachelor's degree
- Occupation: The majority is employed full time
- Income: Percentage of people who earn less money than median income is 40.3% in US and 43.6% in UK

classification		sample	proportion(%)
Nationality	US	300	50.0
	UK	300	50.0
Sex	Male	250	41.7
	Female	350	58.3
Age	19-29	106	17.7
	30s	159	26.5
	40s	157	26.2
	50s	178	29.7
Education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11	1.8
	High school graduate	140	23.3
	College degree	104	17.3
	Bachelor's degree	228	38.0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117	19.5
Occupation	Employed full time	308	51.3
	Employed part time	89	14.8
	Unemployed	92	15.3
	Self-employed	47	7.8
	Student	28	4.7
	Homemaker	36	6.0
household income (US)	Less than USD 20,000	39	13.0
	USD 20,001 ~ USD 35,000	46	15.0
	USD 35,001 ~ USD 50,000	37	12.3
	USD 50,001 ~ USD 75,000	60	20.0
	USD 75,001 ~ USD 100,000	51	17.0
	More than USD 100,000	68	22.7
household income (UK)	Less than GBP 20,000	58	19.3
	GBP 20,001 ~ GBP 35,000	73	24.3
	GBP 35,001 ~ GBP 50,000	56	18.7
	GBP 50,001 ~ GBP 75,000	51	17.0
	GBP 75,001 ~ GBP 100,000	34	11.3
	More than GBP 100,000	28	9.3

10

3 Survey Result– Awareness on CSR

〈Seminar on CSR in Fisheries〉

Awareness on concept of CSR

- Awareness on basic concept of CSR,
- More than 70% of consumers understand about its basic concept
- 29.2% of people don't know it or heard the name of it
- People who have only basic understanding about CSR are 43.5%
- Only 27.4% of people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others
- People who have less than high school diploma or are homemakers have less understanding on CSR than others

11

3 Survey Result– Awareness on CSR

〈Seminar on CSR in Fisheries〉

Importance of CSR

- Result of the question on that 'How much attention do you pay to CSR policy of fisheries corporation,
- More than half of consumers think CSR policy of fisheries corporation it is important (57.6%)
- 11.5% of people think it is not important to them
- People, who think it is not really important, but prefer the company that are responsible when they have a choice, are 30.8%
- 40.8% of consumers try to choose the company's product
- 16.8% of people pay attention on fisheries company's CSR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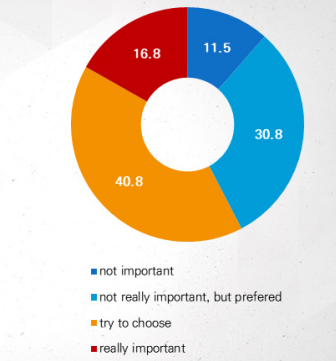

12

3 Survey Result– Awareness on CSR

Purchase Intention

- Purchase intention on products of fisheries companies which is responsible,
- Most of people answered positively (88%)
- Especially, 96.4% of students answered 'YES'
- People, who graduated only high school or are older than 49 or not hired, answer more negatively than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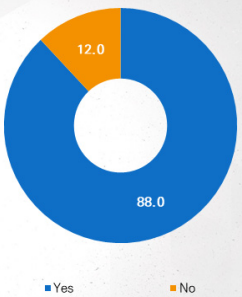

3 Survey Result– Awareness on CSR

Refusal to Buy Product of Poor Responsibility

- Result of the question, whether consumer have refused to buy a marine product from a company that has been negatively viewed in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 46.8% of people answered positively
- Big difference in their answer depending on the age
- Proportion of positive answer,
  19~29 54.7%, 30s 56%, 40s 46.5%,
  50s or more than 50s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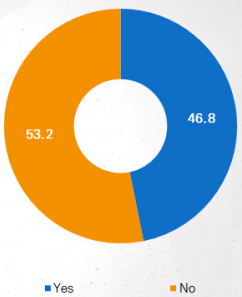

3 Survey Result– Awareness on CSR

〈Seminar on CSR in Fisheries〉

Level of consumer social responsibility

- Result of questions about consumer social responsibility,
- Consumers practise three of consumer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8 items averagely
- People who did 0~2 items are 49.2%,
- 3~5 items are 33.8%,
- and 6~8 items are 17.0%
- The lower the age, the more the practice 19~29 3.7 items, 30대 3.4 items, 40대 2.8 items, 50s or more than 50s 2.3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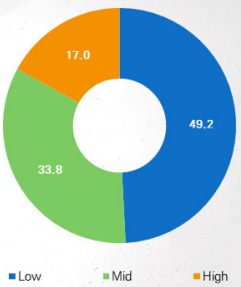

15

3 Survey Result– Awareness on CSR

〈Seminar on CSR in Fisheries〉

WTP on Marine Products of Corporation Which Have Involved in CSR

- Result of WTP on marine products of corporation which have involved in CSR
- Numerous people answered 'YES'(65.7%)
-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students' and 'homemaker' are higher than others
-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WTP 19~29 73.6%, 30s 71.1%, 40s 66.2%, 50s or more than 50s 55.6%
- Average WTP is $12.63 if market price is $10.00
- Consumers with lower age, higher awareness of CSR or higher levels of practice on CSR want to pay more than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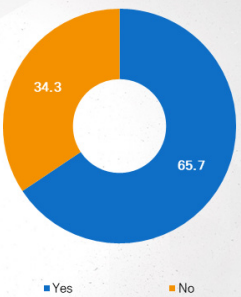

16

3 Survey Result– Awareness on CSR

Priorities on CSR of General Corporation

- Priorities on CSR of general corporation,
- The first: Human rights, labor practices, Environment…
- The second: Environment, labor practices, fair operating practices…
- The third: Labor Practices, fair operating practices, environment…
- Overall priorities,
- Human right, labor practices and environment were ranked in higher place

	First(%)	Second(%)	Third(%)	Total(%)
Organizational Governance	7.2	3.8	5.2	5.7
Human Rights	**38.3**	18.8	12.8	**27.6**
Labor Practices	**12.2**	**23.5**	**20.0**	**17.3**
Environment	**29.3**	**23.7**	**17.3**	**25.4**
Fair Operating Practices	7.5	**19.0**	**19.7**	13.4
Consumer Issues	3.2	6.2	15.3	6.2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2.3	5.0	9.7	4.4

note: calculate the overall ranking by giving 300% weight to the 1st, 200% to the 2nd, and 100% to the 3rd.

17

3 Survey Result– Awareness on CSR

Priorities on CSR of Fisheries Corporation

- Priorities on CSR of fisheries corporation,
- The first: Environment, human rights, labor practices, …
- The second: Labor practices, environment, fair operating practices…
- The third: Fair operating practices, Labor Practices, consumer issues…
- Overall priorities,
- Environment, labor practices and fair operating practices, human were ranked in higher place

	First(%)	Second(%)	Third(%)	Total(%)
Organizational Governance	4.5	4.8	8.3	5.3
Human Rights	**19.5**	13.3	13.0	16.4
Labor Practices	**16.2**	**23.8**	**20.8**	**19.5**
Environment	**44.3**	**23.7**	11.8	**32.0**
Fair Operating Practices	10.7	**23.7**	**21.3**	**16.8**
Consumer Issues	4.0	6.7	**15.2**	6.8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0.8	4.0	9.5	3.3

note: calculate the overall ranking by giving 300% weight to the 1st, 200% to the 2nd, and 100% to the 3rd.

18

4 Result of SEM Analysis

〈Seminar on CSR in Fisheries〉

Result of SEM Analysis

- The hypothesis that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directly affect consumer intention on purchase and recommendation was rejected
- The hypothesis that mediated effect of corporate image and trust was partly accepted
- Anti-corruption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image and trust or purchase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 Labor & Human Rights has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image only
- Corporate image and trust affect consumer behavior. Especially corporate image has bigger impact on purchase intention and corporate trust has it on recommendation in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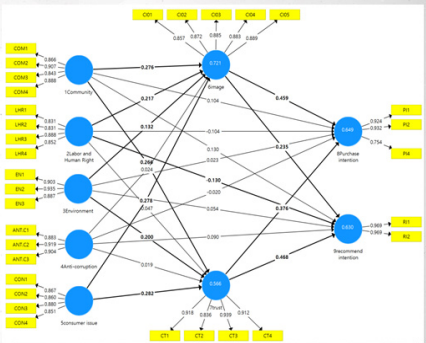

5 Conclusion

〈Seminar on CSR in Fisheries〉

Implication

- Numerous consumers are aware of fisher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have willingness to pay for CSR implementation of the company.
-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level of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more CSR practice is needed to respond to future major consumer who will lead the market
- To practise social responsibility does not make consumers purchase and recommend the marine product
- Fisheries corporations should strive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s well as promote their image and trust.

Further Research

- Survey on level of overseas fisheries corporate CSR practice and difficulties to fulfill responsibility
- Comparative analysis on companies and consumers' awareness of CSR
- Establishing policies to make overseas fisheries corporation implement their social responsibility

□ 종합 토론

ㅇ (Nofima Bjørg) KMI의 연구를 향후 해외 저널에 게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해외 저널에 게재된다면 노르웨이의 연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회가 된다면 해외 저널에 게재할 의향이 있다. 연구 계획상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 저널에 게재하지 않더라도, Nofima에서 필요로 한다면, 요약 번역본을 공유할 수 있다.

ㅇ (노르웨이 대사관 Elin) KMI의 연구는 영국과 미국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CSR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할 계획이 있는가?

☞ 영국과 미국은 설문 대상 국가로 선정한 데에는 업계의 자문이 있었다. 업계에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느 국가의 소비자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여러 후보 국가 가운데, 영국과 미국이 선정되었다. 한국의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이번 연구처럼 깊은 수준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다만 본 연구의 중간보고에서 한국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ㅇ (홍현표 박사) 향후 Nofima와 KMI 간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과 노르웨이 수산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를 보완한 뒤 공동연구로 저널에 기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Nofima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ㅇ (홍현표 박사) Nofima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수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 협의 모델인 노르딕 모델을 활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세계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보이지만, 사실상 비용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 노르웨이는 절대 단기간에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노르딕 모델은 수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노르웨이 정책 전반에 활용되는 거버넌스 모델이다. 세계 대전 이후 노르웨이는 국가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냈던 역사적 사실이 노르딕 모델의 시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각개계층의 협의 과정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80년대부터 30년 이상 노동자, 업계, 정부가 모여 노르웨이 수산업이 당면한 자원 고갈과 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했다. 업계와 노동자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강한 규제에 동의했고, 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강한 규제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업체를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어획량 개별 할당제를 통해 자원 회복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노동환경과 조건 역시 개선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인력이 모이게 만들고,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노르웨이

가 세계 수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ㅇ (안지은 연구원) KMI의 연구는 수산기업의 CSR 전반에 대해 다룬 반면, 노르웨이의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 SS)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초점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SS는 CSR의 한 부분이다. CSR에는 SS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자 보호, 인권 보장, 공정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사회기여와 소비자 권리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수산 업계와 유통업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의 연구는 노르웨이에서 중요도가 낮다. 소비자가 수산업에 관여하는 정도는 지속가능성보다는 내가 구매하는 수산물이 안전한 수산물인가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있어 소비자보다는 수산 업계와 유통업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ㅇ (윤미경 연구원) Nofima의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수산 구조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 어선원와 내국인 어선원 간의 임금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노르웨이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노르웨이에는 동유럽에서 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언급한 사례에서는 경영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경영자는 외국인 어선원에게 출신 국가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했고, 이는 노르웨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노르웨이 법원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편을 들어

주었다. 이는 우리 수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겼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모든 수산업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임금 차등을 줄 수 없게 되었다.

- (홍혜수 연구원) Nofima의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ILO 188을 받아들임에 있어 업계와의 마찰이 적었다. 계절성 어업의 경우, 일일 최대 노동 시간 등의 항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르웨이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 킹크랩과 같은 주요 수출어업은 노동 대비 부가가치가 크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안어업이므로, 1척당 1~2명만 승선해 조업해도 충분해 노동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절성 어업 중 소형 연안어업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조업하지 않는다. 대형 근해 및 원양 선박의 경우에는 24시간 조업하지만, 6시간 단위로 교대근무 하므로, 어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노동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 (WWF 박두현 차장) 노르웨이의 연구는 산업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WWF 입장에서 보자면, 수산업은 생물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업을 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양을 먼저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량은 어가의 상승이나 원자재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RFMO에서는 자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해역의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과

거에는 얼마나 많은 쿼터를 확보하느냐가 우리 원양산업의 주요 어젠다였다면, 이제는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중요해졌다.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최근 대두되는 바다거북, 바닷새, 해양포유류 혼획 및 사망, 해양 플라스틱 등의 이슈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 바이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먼저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업계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함을 물론,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Nofima Bjørg) KMI와 Nofima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공동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노르웨이 정부 및 EU에 펀딩하는 연구 과제가 많으니 향후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노르웨이 대사관 Elin) 노르웨이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수산물 소비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공동연구와 네트워크는 상호 호혜적인 어젠다로 생각하고 있다. KMI와 Nofima가 공동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노르웨이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 (홍현표 박사) 오늘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관한 공동연구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이헌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동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회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언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02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3	사업체 총조사 MD를 활용한 2016,2017 어촌지역 고용통계	한광석
04	외래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엄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02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03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정지호
04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황규환
05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6	한국산 수산물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한기욱
07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이윤정
08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안지은
09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영균
10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박상우
11	지역 해양수산 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황재희
12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박성준
13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차보관의무 도입방안 연구	임병호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02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윤희성
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최건우
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최상희
0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정지호
06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이경한
07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8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김지연
09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Ⅰ)	장정인
10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회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인　　쇄 ‖ 2019년 12월 29일 인쇄
발　　행 ‖ 2019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세븐스가든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